

# 장애인권리협약 해설집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국가인권위원회



EM019866



국가인권위원회

## 발 간 사

안 경 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2006년 12월 13일,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개최된 제61차 총회에서 회원국 192개국의 만장일치의 결의로 장애인권리협약이 통과되었습니다.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성을 재차 확인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밝힌 8번째의 국제인권조약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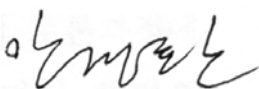
특히 장애인권단체와 운동가들은, UN이 2001년 제56차 총회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을 성안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결정한 이래, 수많은 공식, 비공식 모임을 통하여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각 당사국들의 약속을 이끌어 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장애인권운동가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이에 부응한 국제사회의 협력으로 탄생한 장애인권리협약에 무한한 기쁨과 애정을 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비롯한 국내외의 토론과정에 국가인권보장기구로서 계속 참여해 회의결과를 모니터링하면서 한편으로는 국내장애인단체의 의견과 정부의 의견을 조율하거나 상호이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본 장애인권리협약의 탄생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작은 노력이나마 보탬 수 있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제조약은 국제사회의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이 약속을 어떻게 우리 사회 안에서 잘 지켜낼 것인가 하는 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그 약속이 가지는 의미와 내용을 잘 아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막 탄생한 장애인권리협약의 제정 배경과 내용, 그 의미를 국민과 정부기관에 알리는 해설집을 발간하기로 하고, 짧은 기간 안에 부족한 내용이나 협약 전문의 번역과 설명을 담은 해설집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해설집은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향후 세계 각국이 가입, 비준해야 할 조약이기에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없으며,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장애인권리협약이 우리사회의 어떤 제도나 관행을 바꾸어야 할지에 대한 분석도 불충분합니다. 추상적인 문언에 살아 움직이는 사회의 힘과 내용을 채워 넣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이 해설집은 이러한 과제를 풀기 위한 하나의 작은 시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장애인의 인권을 다루는 관계부처, 장애인단체, 인권활동가들의 경험을 통해 수정, 보완되어 빠른 시일 내에 보다 정확하고 알찬 두 번째의 해설집을 발간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서 문

장애인권리협약은 지금까지의 주요한 국제인권조약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 장애인 인권의 보호와 신장에 충분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적 평가와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탄생하였다.

본 협약은 현재까지의 인권조약에서 규정하였던 인간의 존엄에 기반을 둔 보편적 규범을 다시 한번 확인함과 아울러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특수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고민과 약속이 담겨 있다.

본 협약은 여타의 국제인권법과 마찬가지로 구속력 있는 국제법이며 세계 각국의 비준 이후 협약당사국들은 본 협약을 실질적으로 이행의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각 조문에 대한 각 당사국 정부의 협약 이행 의무가 모두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협약에 나타난 각 당사국의 의무는 즉각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의무와 점진적으로 실현하여야 할 의무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결국 이러한 두 가지 종류, 즉 점진적 실현 및 즉각적 실현에 관한 각 조문의 내용을 어떻게 본 협약에서 개별 현실로 적용하여 구체화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그에 따라, 모든 국제협약이 그렇기는 하지만, 장애인 권리협약이 제대로 우리 사회에 뿌리박고 그 규범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협약 각 조문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기본 원칙을 확인함과 동시에 반성적이고 적극적으로 협약 각 조문을 적용하고자 하는 해석운동이 중요하다. 이러한 해석운동에 도움을 주고자 우리 위원회는 협약의 각 조항에 대한 성립배경 및 내용뿐만 아니라 국제조약과의 관계, 그리고 당사국의 의무에 대한 내용을 담은 본 해설집을 마련하게 되었다.

모든 인권의 문제는 적극적 해석의 문제이며 실천의 문제이다. 해설집의 부족한 점은 앞으로 시민단체 및 당사자, 정부기관이 합심하여 더 상세하고 풍부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믿으며, 그간 유엔특별위원회의 회의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협약 성안 후에 이 해설집의 집필을 도맡아 하느라 수고한 국제인권팀의 조형석 박사에게 특별히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07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본부장 정 연 순



# 목차

|                             |     |
|-----------------------------|-----|
| 발 간 사 .....                 | i   |
| 서 문 .....                   | iii |
| 제 1 장   서 론 .....           | 1   |
| 제1절 장애인권리협약의 제정배경과 경과 ..... | 3   |
| 제2절 해설집의 목적 및 구성 .....      | 5   |
| 1. 목적 .....                 | 5   |
| 2. 구성 .....                 | 6   |
| 제 2 장   장애인권리협약 .....       | 9   |
| 제1절 총 론 .....               | 11  |
| 전 문 .....                   | 11  |
| 제 1 조 목 적 .....             | 8   |
| 제 2 조 정 의 .....             | 2   |
| 제 3 조 일반원칙 .....            | 0   |
| 제 4 조 일반의무 .....            | 3   |
| 제 5 조 평등과 차별금지 .....        | 93  |
| 제 6 조 여성장애인 .....           | 34  |
| 제 7 조 장애아동 .....            | 84  |
| 제 8 조 인식제고 .....            | 3   |
| 제2절 실제적 조항 .....            | 75  |
| 제 9 조 접근성 .....             | 7   |
| 제10조 생명권 .....              | 36  |



|       |                                            |      |
|-------|--------------------------------------------|------|
| 제 11조 | 위험상황 및 인도적 긴급사태                            | 6· 6 |
| 제12조  | 법 앞의 평등                                    | 96   |
| 제13조  | 사법접근성                                      | 47   |
| 제14조  | 개인의 자유와 안전                                 | 7 7  |
| 제15조  | 고문이나 잔혹한 또는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취급 및<br>형벌로부터의 자유 | 18   |
| 제16조  |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 4· 8 |
| 제17조  | 개인의 고유성 보호                                 | 9 8  |
| 제18조  | 이주 및 국적의 자유                                | 3 9  |
| 제19조  |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통합                            | 6· 9 |
| 제20조  | 개인의 이동                                     | 0    |
| 제21조  | 의견· 표현 및 정보접근의 자유                          | 301  |
| 제22조  | 사생활 존중                                     | 7    |
| 제23조  |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 01   |
| 제24조  | 교 육                                        | 16   |
| 제25조  | 건 강                                        | 12   |
| 제26조  | 선천적 및 후천적 장애에 대한 재활                        | 081  |
| 제27조  | 근로 및 고용                                    | 1    |
| 제28조  |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 141  |
| 제29조  | 정치와 공적 생활 참여                               | 4    |
| 제30조  |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스포츠에 대한 참여              | 051  |
| 제31조  | 통계와 자료 수집                                  | 5    |
| 제32조  | 국제협력                                       | 19   |
| 제3절   | 장애인권리위원회와 모니터링                             | 261  |
| 제33조  | 국내이행과 모니터링                                 | 1    |
| 제34조  | 장애인권리위원회                                   | 5    |
| 제35조  | 당사국 보고                                     | 6    |
| 제36조  | 보고서 심사                                     | 10   |
| 제37조  | 당사국과 위원회간의 협력                              | 31   |
| 제38조  | 위원회와 기타 기구와의 관계                            | 41   |

|                                   |       |
|-----------------------------------|-------|
| 제39조 위원회 보고서 .....                | Ⅶ     |
| 제40조 당사국 회의 .....                 | Ⅶ     |
| 제4절 절차적 규정 .....                  | Ⅷ     |
| 제41조 기 탁 .....                    | Ⅷ     |
| 제42조 서 명 .....                    | Ⅷ     |
| 제43조 기속적 동의 .....                 | Ⅸ     |
| 제44조 지역통합기구 .....                 | Ⅸ     |
| 제45조 발 효 .....                    | Ⅹ     |
| 제46조 유 보 .....                    | Ⅹ     |
| 제47조 개 정 .....                    | Ⅹ     |
| 제48조 협약의 폐기 .....                 | Ⅹ     |
| 제49조 접근 가능한 형식 .....              | Ⅹ     |
| 제50조 정 본 .....                    | Ⅹ     |
| <br>  제 3 장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 | <br>Ⅸ |
| 제 1 조 .....                       | Ⅸ     |
| 제 2 조 .....                       | Ⅸ     |
| 제 3 조 .....                       | Ⅹ     |
| 제 4 조 .....                       | Ⅹ     |
| 제 5 조 .....                       | Ⅹ     |
| 제 6 조 .....                       | Ⅹ     |
| 제 7 조 .....                       | Ⅹ     |
| 제 8 조 .....                       | Ⅹ     |
| 제 9 조 .....                       | Ⅹ     |
| 제10조 .....                        | Ⅹ     |
| 제11조 .....                        | Ⅹ     |
| 제12조 .....                        | Ⅹ     |
| 제13조 .....                        | Ⅹ     |
| 제14조 .....                        | Ⅹ     |
| 제15조 .....                        | Ⅹ     |



|                                 |     |
|---------------------------------|-----|
| 제16조 .....                      | 209 |
| 제17조 .....                      | 210 |
| 제18조 .....                      | 210 |
| <br>  제 4 장   장애인권리협약의 의의 ..... | 12  |
| 제1절 8번째 국제인권조약의 탄생 .....        | 312 |
| 제2절 장애 인식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    | 412 |
| 제3절 제정 과정이 갖는 의의 .....          | 2   |
| 제4절 한국사회의 과제 .....              | 11  |
| <br>부 록 .....                   | 219 |
| 부록1. 장애인권리협약(국문) .....          | 422 |
| 부록2.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국문) .....    | 452 |
| 부록3. 장애인권리협약(영문) .....          | 752 |
| 부록4.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영문) .....    | 882 |



제 1 장

서 론



# 1장

## 서론

### 제 1 절 장애인권리협약의 제정배경과 경과

장애인은 오랜 기간 신체적·정신적 무능력자라는 편견 속에서 온전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부적합한 집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장애를 이유로 가정과 사회에서 격리되어 부당한 대우를 받아 왔으며 의료나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권리를 향유하거나 기회를 제공받는데 제약을 받아 왔다.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설 등에 구금되어 공공연한 차별과 폭력을 경험하면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위치에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 역시 많은 부분에서 제한당하는 차별을 경험하여 왔다.

장애인들과 인권활동가들은 열악한 상황에 있는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투쟁을 계속하여 왔고, 그 결과 UN은 1980년 1월 13일에 ‘세계장애인의 행동계획’을 채택하면서 사회생활 및 사회개발에 있어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목표로 삼고 이듬해인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언하였다. 이어서 1983년부터 1992년까지 10년 동안은 ‘세계장애인 10년’으로 선포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전환 및 개선을 위한 노력을 시도하였다.

한편, 제2차 세계 대전의 와중에서 인간존엄성 말살의 뼈아픈 경험을 겪은 국제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며 특히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국제조약들을 성안, 채택하여 왔다. 구체적으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아동



의 권리에 관한 협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 그와 같은 목적으로 마련된 인권조약들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인권은 위와 같은 조약의 내용에 충분히 반영되거나 규정되지 못하였고, 실제로 위 조약들이 장애인의 인권 신장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적인 평가가 잇따랐다. 예를 들어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는 장애여성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나 언급이 없으며, 아동권리협약에는 장애아동과 관련하여 별도의 조항을 마련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장애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에는 강제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국제인권조약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논의가 있게 되었는데, 본격적으로 그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87년에 개최된 UN총회에서 이탈리아 정부가 36개 조항으로 구성된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국제 협약을 제안하면서부터이다. 그러나 호주, 일본,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각 당사국에 돌아갈 재정적인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였고, 북유럽 등의 국가에서는 이와 유사한 기존의 국제인권조약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국제협약의 제정은 불필요하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등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그 후 1989년에 스웨덴, 2000년에는 중국 정부가 다시 장애인 인권 협약 제정을 제안하였으나 미국 등 일부 선진국들의 반대로 인해 무산되었다.

여러 당사국들의 반대에 맞서 세계 장애인 단체는 2000년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장애인의 참여 및 평등권을 위한 신세기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장애인 세계 비정부기구의 정상회담’에서 베이징 선언을 채택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을 제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2003년 11월에는 중국 북경에서 열렸던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ESCAP) 지역 회의에서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제조약 상세화에 대한 북경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선언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들은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인권협약의 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2001년 제56차 UN총회에서 멕시코의 빈센트팍스(Vincent Fox) 대통령은 기초연설을 통해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성안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하였



는데, 이 제안이 2001년 12월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동시에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국제협약에 관한 특별위원회’의 설립이 결정되었다. 그 결정에 따라 2002년 8월부터 8차례의 특별위원회가 개최되어 협약안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특별위원회는 협약의 형태, 성격, 구조, 비차별 및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 등 협약의 주요한 쟁점들을 집중적으로 토의하였다.

장애인권리협약은 각 조항별로 제출된 의장안에 대하여 각국 정부대표와 국가 인권기구 그리고 국제장애인연맹 및 장애시민단체들이 자신들의 입장과 견해를 개진하고 이를 각 조항별 조정자(Facilitator)가 취합하여 완성된 조문을 발표하면 동 조문에 대하여 국가들이 만장일치 또는 찬반투표를 통해 합의하는 방식으로 성안되었다.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회의장 안팎에서의 각 당사국과 장애인 단체들의 지속적인 논의와 토론 끝에 마침내 2006년 8월 제8차 특별위원회에서 장애인권리협약안이 완성되었으며, 이 안은 동년 12월에 개최된 UN총회에서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지난 4년간의 각 당사국 정부 및 장애인 당사자들의 공동노력의 결실로,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천명한 여덟 번째 국제인권협약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 제 2 절 해설집의 목적 및 구성

### 1. 목 적

본 해설집은 장애인권리협약에 규정된 조항별 조문 검토를 중심으로 하여 각 조항별로 제정배경, 조항에 규정된 용어의 해설과 다른 조항과의 관계 및 국제규범과 사용례, 그리고 각 조항의 내용 및 의의를 설명하고 향후 국내법 개정 시 관련 사항의 적용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각 조항별로 조항이 마련된 배경 및 논의 동향을 설명함으로써 각 조항의 설



립 취지를 제시하고, 조문의 의미 제시를 통해 각 조항이 어떤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며, 용어의 해석은 어떻게 적용되며 다른 조항과의 유기적인 연계성은 무엇인지 설명하고자 한다.

## 2. 구 성

본 해설집은 총 4개의 장으로, 제1장 서론, 제2장 장애인권리협약, 제3장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제4장 장애인권리협약의 의의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장애인권리협약이 성안되기까지의 국제적인 노력과 제정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제정 과정을 통해서 장애인 권리협약의 성안까지의 긴 여정과 필요성, 그리고 노력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해설집의 목적과 총괄적인 구성을 제시하여 그 사용 목적과 포함된 내용을 개괄적으로 밝히고 있다.

제2장 장애인권리협약은 제1절 총론, 제2절 실체적 조항, 제3절 장애인권리위원회와 모니터링, 제4절 절차적 규정으로 구분되어 있다. 제1절 총론은 제1조에서 제8조까지의 조항으로 장애인권리협약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며, 제2절 실체적 조항은 제9조부터 제32조까지 장애인의 실체적 권리에 관한 규정이다. 총론과 실체적 조항에 대한 설명은 각 조항별로 조문이 마련된 배경과 논의과정을 소개하여 이해를 돕고, 해당 조항 조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 중에서 그 개념에 대한 이해나 설명이 필요한 것들을 골라 열거하였다. 또한 조문 구성의 체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 조항이 나머지 다른 조항들과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 지를 설명하였으며, 8번째로 만들어진 국제인권조약인 점을 감안하여 해당조항의 내용들이 다른 국제인권조약에서 쓰고 있는 조문들의 예와 유사한 것이 있는 지, 공유하고 있는 취지와 이념이 있는 지 등을 살펴 그 용례를 제시하였다. 이는 각 조항의 내용과 의미하는 바를 기존의 국제조약들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용과 의의라는 제목 하에 협약 각 조문이 담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법적 의무를 좀 더 자세하게 풀어 씌으로써 협약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였다.



제3절 장애인권리협약과 모니터링에서는 장애인권리협약이 동 협약의 국내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도구(tools)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는 크게 국내적 차원과 국제적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내적 차원에서는 협약 제33조에 의한 전담부서(focal points) 설립 및 국내적 독립 기구의 설립이다. 국제적 차원으로는 협약 제34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사국의 정부보고서 제출 의무와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정부보고서 심의 등이다. 또한 제4절에 해당되는 제41조 이하는 동 협약의 발효, 서명, 비준, 유보, 개정 등 협약의 효력에 관한 모든 절차적 규정에 관한 조문이다.

제3장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서는 선택의정서상에 규정되어 있는 개인통보(Individual Communication)제도 및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조사권, 절차, 효과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장 장애인권리협약의 의의에서는 장애인권리협약이 갖는 의미와 향후 예상되는 서명, 비준 등의 절차 및 협약이 우리 사회에 줄 영향 등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 2 장

## 장애인권리협약



## 2 장

# 장애인권리협약

### 제 1 절 총 론

#### 전 문

이 협약의 당사국은,

- (a) 전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로서 모든 인류의 천부적 존엄성, 가치, 그리고 동등하고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국제연합헌장에 천명된 원칙들을 상기하며,
- (b) 국제연합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모든 사람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천명하고 동의해왔음을 인정하며,
- (c) 모든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및 상호관련성과, 차별 없이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 받아야 하는 장애인의 기본적 자유와 욕구를 재확인하며,
- (d)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상기하며,
- (e) 장애는 발전하는 개념이며,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과 손상을 지닌 개인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야기된다는 것을 인정하며,
- (f) 장애인을 위한 기회의 평등을 보다 고취시키기 위한 국내적·지역적·국제적 수준에서의 정책, 계획, 프로그램 및 활동의 증진, 수립 및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인에 관한 세계 행동계획과 장애인의 기회평등에 관한 표준규칙에 포함되어 있는 원칙 및 정책지침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 (h) 장애로 인한 사람에 대한 차별은 인간의 천부적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침해라는 것을 또한 인정하며,
- (i) 장애인의 다양성을 더욱 인정하며,
- (j) 보다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비롯하여 모든 장애인의 인권을 촉진하고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며,



- (k) 이러한 다양한 기제와 조치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동등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에 대한 장벽에 지속적으로 직면해 있고 세계도처에서 장애인의 인권이 계속해서 침해되고 있음을 우려하며,
- (l)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 (m)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안녕과 다양성에 대한 장애인들의 가치 있는 현재의 기여 및 잠재적 기여를 인식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향유와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의 증진이 장애인의 소속감을 강화시키고 사회의 인적, 사회적, 경제적 발전과 빈곤 퇴치에서 상당한 진보를 가져올 것임을 인정하며,
- (n)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포함하여, 장애인 개인의 자율 및 자립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 (o) 장애인은 당사자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이러한 정책 및 프로그램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것을 유념하며,
- (p)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및 기타 견해, 국적, 민족, 원주민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연령 혹은 기타 신분에 따라 복합적이거나 가중된 형태의 차별에 직면하는 장애인의 어려운 상황들을 우려하며,
- (q) 장애여성과 장애소년들이 가정내외에서 폭력, 상해 또는 학대, 유기 또는 유기적 대우, 학사 또는 착취의 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많음을 인정하며,
- (r) 장애아동은 다른 아동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히 향유해야 함을 인정하고, 이를 위해 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이 이행한 의무들을 상기하며,
- (s)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증진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성인지적 관점을 포함시킬 필요성을 강조하며,
- (t) 상당수의 장애인이 빈곤한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하여 빈곤이 장애인에게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다루어야 할 중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며,
- (u) 국제연합헌장에 포함된 목적과 원칙에 대한 완전한 존중과 적용 가능한 인권문서의 준수에 기초한 평화와 안전의 조건들은, 특히 무력분쟁과 외국군의 주둔상황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보호를 위하여 필수적임을 명심하며,
- (v)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 및 건강과 교육 그리고 정보와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성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 (w) 다른 사람들과 그가 속한 지역사회에 대한 의무를 가진 개인은 국제인권장전이 인정한 권리의 증진 및 준수를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 (x) 가족은 자연적이고 근본적인 사회의 구성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에 의해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고 장애인과 그 가족 구성원들은 가족이 장애인의 완전하고 동등한 권리의 향유를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확신하며,
- (y)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국제협약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장애인들의 뿌리 깊은 사회적 불이익을 시정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며,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부문에서 장애인이 동등한 기회를 갖고 참여하는 것을 촉진할 것임을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1. 배경 및 내용

전문, 즉 머릿글은 구체적인 개별 조항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협약의 당사국들이 본 협약을 제정하게 된 배경, 취지, 목적, 기본원칙 등을 선언적인 형식의 문구로 정리한 것이다. 전문 역시 협약의 주요 구성부분으로 독자적인 규범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협약 당사국의 정책, 제도, 관행의 수립이나 업무집행의 적절성과 인권보장성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조항과 함께 주요한 판단근거와 행위규범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본 협약의 전문은 총 25개의 각호로 구성되었으며, 그 구성이나 내용에 대해서 대다수 당사국들과 장애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다. 다만, 몇 개의 각호들은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새롭게 추가되거나 수정되었으며, (u)호로 들어간 ‘무력분쟁과 외국군의 주둔상황’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대립되어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그 추가가 결정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a)호~(d)호는 기존 국제인권조약의 전문에도 포함되는 사항으로 전 인류의 천부적 존엄성, 가치, 동등하고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UN헌장에 천명된 원칙들과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조약의 존중을 포함하고 있다.



(e)호는 장애를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개념으로 보고 개인의 손상 및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기인한 장애의 특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장애의 개념이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단언적으로 규정되기 어려운 장애의 특징을 규정한 것으로 제1조(목적)에 제시된 장애인의 정의를 보완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f)호는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목표로 하는 ‘장애인 세계행동계획’과 ‘장애인의 기회평등에 관한 표준규칙’의 원칙과 정책지침을 각 당사국의 장애인 정책에 반영하도록 선언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생활 및 개발에서 장애인들의 기회 평등을 증진하는 다각적 수준의 정책,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유사하게 (g)호에서는 장애이슈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에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o)호에서는 장애인이 장애와 관련된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하고 있다.

(h)호~(j)호에서는 본 협약의 기본원칙과 목적에 해당하는 장애로 인한 차별금지, 인간의 천부적 존엄성 및 가치 존중, 다양성 인정, 장애인 인권의 촉진 및 보호를 선언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j)호는 본 협약의 목적에 해당되는 장애인의 인권 촉진 및 보호에 대한 내용으로 추가, 보완하였다.

(k)호에서는 장애인이 여전히 직면하고 있는 사회참여의 제약과 인권침해를 언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m)~(p)호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들로 인한 차별금지,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의 참여, 자립과 자율을 강조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빈곤퇴치를 위한 노력들을 규정하고 있다. 본 협약에서는 장애인을 존엄성을 가진 독립적인 개인으로 인정하고 장애인 스스로 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을 복지의 수혜자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주체로 인정하여 자립적인 삶의 영위가 가능하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촉진하고 있음을 전문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q)호와 (s)호에서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폭력에 더욱 취약함을 인지하고 각국의 협약 이행 조치에 성별의 관점이 포함되도록 하여 취약계층인 여성장애인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p)호에서는 연령을 고려하도록 하며, (r)호에서는 장애아동이 자유와 인권을 동등하게 향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언급함으로써 장애아동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접근성은 특히 장애인권에서 강조되어야 할 일반원칙 중의 하나이며 본 협약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기본전제로서, 협약 당사국이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v)호에 명시되어 있다. 기본적인 사회구성요소인 가족에 대한 지원은 (x)호에 새로이 추가되었으며, 이와 함께 전쟁 또는 외국군의 주둔과 같은 위험 상황에서 장애인 보호 등 안전에 대한 언급은 생명권 존중 및 보호의 영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목적으로 (u)호에 규정되었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군의 주둔’이라는 용어의 삽입과 관련하여 일부 국가의 반대 의견이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투표를 진행하여 추가되었다. 전문에서는 또한 본 협약의 준수의무와 협약이 갖는 의의를 강조하며 국가간 국제협력 지원의 필요성도 명시하고 있다.

## 2. 조문의 설명

### 가. 용 어

- **주류화(mainstreaming):** 사전적인 의미로는 일반적으로 ‘다수의 생각의 공통된 흐름’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사회적·경제적·문화적·정치적인 분야에서의 법률,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발, 이행, 감시, 평가에 성별, 연령, 장애 등과 관련한 문제나 경험들을 총체적으로 포함시켜 적용하도록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주류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형식적인 평등이 아닌 실질적인 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
- **욕 구(needs):** 욕구는 인간의 생존과 성장, 발전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얻거나 행동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이러한 욕구는 생리적 욕구, 안전에 관한 욕구, 소속과 애정에 대한 욕구, 자존감의 욕구 그리고 자아실현의 욕구로 나누기도 한다.
-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년 12월 제3차 UN 총회에서 채택된 선언으로서 전문과 본문 30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동 선언은 보편적인 국제기구에 의해서 채택된 최초의 포괄적인 인권문제로서



기본적 인권 존중을 그 중요한 원칙으로 하는 UN헌장의 취지에 따라, 보호해야 할 인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장애인 세계행동계획(World Programme of Action concerning Disabled Persons): 장애인 역시 모든 사람들과 동등하게 권리와 기회를 부여받았으나, 물리적·사회적 장벽으로 인해 사회 참여의 제약과 차별을 경험해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장애인의 취약한 상황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자각하며 1982년 UN에서 채택되었다. 장애인 세계행동계획은 장애의 예방, 재활, 장애인의 사회생활 및 개발에서의 완전한 참여와 기회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의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장애인의 기회평등에 관한 표준규칙(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UN에서 1993년에 채택된 표준규칙으로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모든 장애인에 대해 비장애인과 차별 없는 동등한 권리와 의무의 행사 보장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각 당사국에 대하여 장애인들의 완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위하여 장벽을 제거하도록 책임을 부과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단체는 협력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장애인 중에서도 특히 여성, 아동, 노인, 경제적 취약자, 이주노동자, 중복 장애를 가진 사람, 토착민과 소수민족, 난민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명시하고 있다.

#### 나. 다른 조항과의 관계

전문은 협약의 제정취지와 목적, 기본원칙 등을 밝힌 것으로서 각 당사국이 협약의 제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드러내고 있다. 그 구체적인 실현이 개별조항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인 바, 결국 전문이라는 것은 협약을 이루고 있는 개별 조항들을 떠받치고 있는 밑받침인 것이다. 따라서 전문의 각호는 협약을 이루고 있는 모든 조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개별조항의 해석 및 적용의 근거가 된다.



#### 다. 관련된 규제규범과 사용례

UN헌장뿐만 아니라 주요 국제인권조약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등은 모두 전문을 채택하고 있다. 몇 가지 사용례를 살펴보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핵심적으로 ‘모든 인간의 존엄성 및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동일한 내용의 전문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는 여성의 기본적인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의 향유, 위험상황 발생 등의 모든 영역에서의 남녀평등권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각 조약의 성격에 따라 아동, 소수 민족, 이주 노동자 등의 기본적인 인권, 자유, 존엄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며 차별을 금지한다는 등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조약의 성격과 대상은 각기 다르나 기본적으로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인정하고 있는 UN헌장에 천명되어 있는 원칙들을 존중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제1조 목 적

이 협약의 목적은 모든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보호·보장하고, 장애인의 고유한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동등한 기초 위에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 1. 배 경

장애인권리협약을 제정하기 위해 구성된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국제협약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sup>1)</sup>의 제7차 회의까지 본 협약의 가제는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국제 협약(안)<sup>2)</sup>」이었다. 일부 국가들은 협약의 명칭에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 보호 및 증진’이라는 목적이 이미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목적 조항을 둘 필요가 없고 다른 국제 협약에서도 목적 조항이 없는 것이 관례라는 주장을 하며 동 조항을 삭제하자고 주장하였다. 반면 일부 국가 및 국제장애인연대회의기구(이하 ‘IDC’라 한다)<sup>3)</sup>는 목적 조항을 두고 대신 협약의 명칭을 줄이자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 주장이 많은 국가들의 지지를 받아 최종적으로 「장애인권리협약」<sup>4)</sup>으로 본 협약의 명칭이 확정되었다. 그 대신 협약 안에 별도의 조항으로 본 목적조항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본 조항에는 목적 이외에도 장애인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지막 제8차 회의에서 결정되어 추가된 것이다. 특히 제2조(정의)에서 논의되었던 ‘장애/장애인’ 정의는 장애의 대상 범위와 내용이 어떻게 규정되는가에 따라 국제법 및 국내법에서 그 법적 효력과 적용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차례 논의를 하

1) ‘Ad Hoc Committee on a Comprehensive and Integral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s and Dign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 ‘Draft Comprehensive and Integral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s and Dign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3) International Disability Caucus (IDC):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약 50여개의 장애인관련 비정부 단체들(NGOs)이 연대하여 장애인권리협약 제정을 위한 국제장애인연대회의기구를 창설하여 본 협약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4)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였음에도 합의가 쉽지 않았다. 많은 정부대표들은 장애의 정의를 규정함에 있어 그 대상을 크게 확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한다는 의견 혹은 아예 각국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의 정의를 각 나라마다 쓰고 본 협약에서는 별도로 장애를 정의하지 말자는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장애인을 협약에 정의할 경우 애초의 의도와는 달리 일부 장애인이 제외될 위험성에 대해서도 언급되었다. 반면 장애인권단체들은 최근의 장애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의료적 모델보다는 사회적 모델을 반영한 장애의 정의를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7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미주 장애인에 대한 모든 유형의 차별철폐 협약’의 장애 정의<sup>5)</sup>와 의장이 제시한 장애 정의(안)<sup>7)</sup>이 지지를 받기도 하였다.

최종적으로 마지막 제8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것으로서, 그동안 이루어진 장애와 장애인의 정의에 대한 논쟁을 최소화하여 합의로 이끌어 낸 것이다. 즉, ‘장애인을 이와 같이 정의한다’라는 형식이 아닌 ‘장애인은 다음을 포함한다’라는 개방적인 형식을 취함으로써 포괄적인 방식으로 장애인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참고로 위에서 언급한 ‘의장안’ 혹은 ‘미주 장애인에 대한 모든 유형의 차별철폐 협약’에서의 장애의 정의는 동 조항에서의 장애인 정의보다는 그 범주가 넓다.

## 2. 조문의 설명

### 가. 용 어<sup>8)</sup>

● 장애인(person with disability):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장애인에 대하여

5) ‘Inter American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6) 장애라는 용어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필수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할 능력에 제약이 있고 경제적·사회적 환경에 의해 야기되거나 악화된 영구적 또는 일시적 신체적, 정신적 또는 감각적 손상을 의미한다.

7) 장애는 손상, 이상 또는 질병이 있는 사람과 이들이 직면한 환경·태도적인 장벽 간의 교차점에서 기인한다. 그러한 손상, 이상 또는 질병은 영구적, 일시적, 간헐적 또는 귀속적일 수 있으며 신체적, 감각적, 정신사회적, 신경적, 의료적 또는 지적인 것을 포함한다.

8) 국제기능·장애·건강 분류(ICF). 세계보건기구, 보건복지부. 2001을 참조함.



‘disabled persons’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persons with disabilitie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disabled persons’이 ‘사람’보다는 ‘장애’를 강조한 것처럼 보여 한 인간으로서 개인의 능력에 장애가 있다는 의미로 오인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장애보다는 인격적인 존재인 개인을 강조하고, 하나 혹은 둘 이상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장애의 속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협약에서는 ‘persons with disabilities’를 사용하고 있다.

- ❖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본 문구는 장애인이 비차별의 원칙 아래 형식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인 평등을 기초로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참여하고 능력을 발휘하여 완전한 통합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장애인권리협약의 거의 모든 조항에 규정되어 있다.
- ❖ 손 상(impairment): 신체 구조상의 혹은 생리학 적 기능상(심리적 기능을 포함 하여)의 손실 혹은 기형을 의미한다. 여기서 기형(abnormality)은 설정된 통계적인 표준(즉, 집단의 평균에서 측정된 기준치만큼의 변이 내에 있는 것)에서 크게 벗어난 것만을 엄격하게 가리키는 것으로 반드시 이러한 의미로만 이용되어야 한다.
- ❖ 신체적 손상(physical impairment): 명백한 이상이나 손실로 인한 신체 기능이나 구조상의 문제를 의미한다.
- ❖ 정신적 손상(mental impairment): 의식, 에너지 및 욕동과 같은 일반적 정신 기능과 기억력, 언어력 및 계산력과 같은 특정 정신 기능의 문제를 의미한다.
- ❖ 지적 손상(intellectual impairment): 모든 인지(cognitive) 기능과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발달상태를 포함하는 다양한 정신 기능을 이해하고 구조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일반적 정신 기능의 손실을 의미한다.
- ❖ 감각적 손상(sensory impairment):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 온도 및 기타 자극과 관련된 감각 등 모든 감각에 관한 기능상의 손실 혹은 기형을 의미한다.



- 장벽(barriers): 개인 환경 속에서 특정 요소의 부재 혹은 존재로 기능을 제한하고 장애를 촉진하는 요인이다. 이에겐 접근 불가능한 물리적 환경, 관련 보조 기술의 부재, 장애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태도,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의 동등한 참여를 가로막는 서비스, 시스템 그리고 정책, 혹은 서비스, 시스템 그리고 정책의 부재 등이 포함된다.
- 참여(participation): 실질적인 생활 상황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능의 사회적 측면을 대변한다.

#### 나. 다른 조항과의 관계

동 조항은 제3조(일반원칙) 및 제4조(일반의무)를 비롯하여 장애인권리협약상의 모든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조항이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내림에 있어 의료적인 모델과 사회적인 모델을 모두 반영하여 다양한 범주의 장애개념이 해석 가능하도록 각 당사국에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개념을 해석할 경우 전문 (e)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 개념<sup>9)</sup>의 가변성과 의학적 및 사회·환경적 장애 정의를 동시에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다. 관련된 국제규범과 사용례

1982년 UN에서 채택된 ‘장애인 세계행동계획’은 목적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 목적은 ‘장애차별 방지, 재활과 장애인의 사회생활에 있어 완벽한 참여와 평등의 효과적인 실현, 장애방지의 효과적인 척도 증진’으로,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기회의 평등과 사회·경제적 발전이 가져온 개선된 생활 조건의 평등한 공유를 의미한다. 이들 개념은 각 나라의 발전 수준과는 관계없이 모든 나라에 같은 시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75년 UN은 ‘장애인 권리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sup>10)</sup>

9) 장애는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개념이며, 또한 장애는, 다른 사람과 동등한 기초위에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과 장애인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야기된다.

10) 1975년 12월 9일 UN총회 결의안 3447(XXX)



에서 장애인을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관계없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개인의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 데 자기 자신으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국제노동기구는 ‘신체 장애인의 직업복귀에 관한 권고’ 제99조에서 장애인을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의 결과로 적절한 직업을 확보, 유지해 나갈 전망이 없는 상당히 손상 받은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에서는 목적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1조11)에 본 협약의 목적상 아동을 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해당 협약의 대상자만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대표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sup>12)</sup>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항’<sup>13)</sup>에서 장애의 정의는 신체적·정신적이라는 의학적 원인이 존재하며, 이러한 의학적 원인에 의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혹은 직업생활에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두 가지 조건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 3. 내용 및 의의

동 조항은 장애인권리협약의 목적과 그 목적의 대상자이자 주체자인 장애인을 규정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장애인의 인권, 자유, 평등, 존엄성의 보장을 본 협약의 목적으로 규정하여 장애인을 더 이상 시혜적 보호의 대상이 아닌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동 조항의 중요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본 협약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범주를 명시하여 협약 상 보호되는 장애인에게는 당사국이 본 협약의 목적에 따라 관련 인권조항을 해석하고 보장해야 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장애인들은 의료적 장애개념에 따른 접근방식에 따라 치료의 대상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복지, 재활, 의료 중심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수혜자로

11) 아동이라 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12)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13)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만 인식되어져 왔다. 독립적이고 존엄한 인격체로 보지 않는 인식 위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억압 및 배척, 부정적인 인식 및 태도, 각종 형태의 폭력 및 학대 등 다양한 유형의 인권 침해가 공공연히 진행되어 왔다. 이에 본 협약은 무엇보다도 장애인을 인격을 가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장애인이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주체적으로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천부적인 존엄성을 존중받도록 보장함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를 목적조항으로 표현하였다. 즉, 궁극적으로는 인권의 관점에서 장애인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모든 노력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의 정의는 의학적 또는 사회적 장애 모델을 어떠한 관점으로 각 국의 법률, 정책 및 문화에 반영했는가에 따라 다르다. 또한 이러한 입장 차이는 당사국의 의무 이행을 위한 사회·경제적 비용부담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사회적 모델을 따르는 장애 개념이 채택될 경우 본 협약의 적용대상자가 확대되기 때문에 사회적 장벽을 제거해야 하는 각 정부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게 된다. 그러나 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애인의 권리의 보장 및 회복을 위해 당사국들의 적극적인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정부가 광의의 장애 개념을 수용하길 희망하게 되는 것이다.

장애의 개념과 관련하여, 세계보건기구(WHO)는 1980년 ‘손상, 장애, 사회적 불리에 대한 국제장애분류’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 1997년 ‘손상, 장애, 사회적 불리에 대한 국제장애분류-2’에 이어, 2001년 ‘기능, 장애 및 건강에 관한 국제 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이하 ‘ICF’라 한다)’를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장애를 분류할 것을 권장하였다. ICF는 과거의 분류와 달리 개인적인 장애나 질병과 상황적 맥락(환경적 요소와 개별적 요소)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기능과 장애를 설명하고 장애의 개념을 기본적으로 확대하였으며, 여기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적 맥락(context)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적인 문제는 없으나 의도적 따돌림이나 사회적 오명 등에 의해 적절한 사회적 관계를 제한받



는 경우에도 참여의 제한이라는 측면에서 장애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분류에 의한 장애의 정의를 수용한다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등에 포함되는 개별적인 장애의 종류와 범위도 지금보다는 늘어나게 되며, 장애인을 위한 정책도 환경적 요인을 포함한 보다 다양한 접근을 필요로 하게 된다. 즉 특정 영역에서의 개인의 기능 수준은 건강상태와 상황적 맥락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며, 여기서 개인의 기능은 신체의 기능과 구조, 활동, 참여 등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의 기능들은 건강조건과 상황적 맥락에 속하는 환경 요소(사회의 인식, 건축물의 장애요소 정도 등)와 개인적 요소(성, 연령, 인종, 습관, 대처양식 등)의 양 측면에서 영향을 받는다.

본 조항의 장애인에 대한 개념정의를 보면 ‘신체적, 정신적, 지적, 감각적 손상’이라는 의료적 모델과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완전하고 실질적인 사회 참여의 저해’라는 사회적 모델 개념이 모두 포함되어 ICF의 장애분류법 권고를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정의를 최근의 장애개념과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데 즉, 장애의 원인, 장애로 인한 문제, 문제의 해결책 등을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속성에서 찾는 ‘개별적 모델’에서 벗어나 장애인 개인과 사회 환경과의 부적절한 상호작용을 문제의 원인으로 보고 그 해결책으로 사회 환경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적 모델’ 중심으로의 인식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종전의 의료적 모델이 전혀 중요하지 않거나 배제 혹은 무시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의 의료적 재활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모델보다 의료적인 모델이 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전문 (e)호에서도 규정하고 있듯이 장애는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개념으로 이러한 포괄적인 개념정의에 상응하여 장애범주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그로 인해 기존 장애개념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장애인의 개념으로 들어오면서 장애인구 역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는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어 갈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라 할 수 있다. 장애개념이 더욱 복잡해지고 포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이 고려된다면, 장애의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 사회적, 환경적 문



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제2조 정 의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해:

“의사소통”은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기술을 포함한 서면·음성·평문·낭독자와 보완적이고 대안적인 의사소통의 방식, 수단 및 형식뿐만 아니라 언어, 문자의 표시, 점자, 촉각을 통한 의사소통, 대형 인쇄, 접근 가능한 대중매체를 포함한다.

“언어”는 구어와 수화 그리고 그 밖의 다른 형태의 비음성 언어들을 포함한다.

“장애로 인한 차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민간 및 기타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려는 목적이나 효과를 가지는, 장애를 이유로 한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이는 합리적 편의의 거부를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차별을 포함한다.

“합리적 편의”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 불균형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는 필수적이고 적절한 변형 및 조정을 의미한다.

“보편적 설계”는 개조 혹은 특별한 설계를 할 필요 없이 최대한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 환경,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설계를 의미한다. “보편적 설계”는 이러한 장비가 필요한 특정한 장애인 그룹을 위한 보장구를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 1. 배 경

통상적으로 법령이나 조약에서는 그 해당 법령 등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들에 대한 개념정의를 하게 된다. 이는 그 개념들이 협약 해석과 적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본 협약에 어떤 개념들을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의들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본 조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개의 주요 용어에 대한 개념정의를 합의되었다.

마지막 제8차 특별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삭제된 정의는 ‘장애/장애인’,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내법’, ‘통합적 설계’이다. ‘장애/장애인’은 다양한 유형의 장애를 정확히 규정할 수 없고, 정부 대표와 장애관련 비정부 단체 간의 이견차이로 인해 합의를 이루어내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장애/장애인’에 대



한 정의는 본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와 인권을 보호·보장받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마무리 되어 전문과 제1조에 규정되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내법’은 성 정체성, 가족계획이슈 등과 같은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가치관, 규칙, 관습이 장애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정의 조항에 삽입되었으나, 일부 국가에서 국가마다 가지고 있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잘못하면 이미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는 국가의 관습 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오역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또 다른 국가들은 각국의 서로 다른 관습 등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최종 합의를 보지 못하여 삭제되어 버렸다. ‘보편적 설계’는 본래 ‘보편적 설계와 통합적 설계’라는 명칭으로 정의되었으나 ‘통합적 설계’가 본 협약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아 삭제되었다.

## 2. 조문의 설명

### 가. 용 어

- **평 문(plain language):** 필수적인 최대한의 단어들을 사용하여 정확하고 직접적인 표현을 하는 의사소통으로서 상대방이 처음으로 듣거나 읽었을 경우 전달하려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의사전달방식
- **촉각을 통한 의사소통(tactile communication):** 시각 및 청각 장애를 모두 갖고 있는 장애인을 위해 손으로 만지는 것과 같이 촉각을 이용하는 의사전달방식
- **대형 인쇄(large print):** 약시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글자체를 크게 하여 읽을 수 있도록 한 의사전달방식
- **언 어(language):** 수화, 말 또는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유형의 언어
- **합리적 편의(Reasonable Accommodations):** 장애인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어려움 없이 공간을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합리적 편의의 제공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이나, 제공자에게 지나치게 불균



형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우에는 불합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 불균형하거나 과도한 부담(disproportionate or undue hardship)<sup>14)</sup>: 불균형하거나 과도한 부담에 대한 기준은 상대적인 것으로서, 장애인권리협약 내에서 그 기준이나 범위가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불균형하거나 과도한 부담은 민간 기업을 포함한 기업이나 기관의 전반적인 재정 자원, 편의 시설의 특성 및 비용 등 사업의 운영에 현저한 곤란을 야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장애로 인한 차별(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의 정의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동 조항은 기존의 유엔인권조약들이 규정하고 있는 차별의 정의를 이용하고 있다. 본 정의는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떠한 조치나 규정의 목적 혹은 결과가 차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장애인에게 합리적인 편의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차별로 인정하고 있다.
-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sup>15)</sup>: 변형이나 조정, 또는 특수 설계를 필요로 하지 않고 최대한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재화, 환경,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의미한다.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환경은 장애가 없거나, 젊거나, 병이 없는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편리하게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장애인 혹은 노약자들은 사회·문화적 활동에서 제약을 받거나 제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도 다양한 영역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체적·행동적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배려가 이루어진 장애인 혹은 노약자 전용이라는 이분법적인 특수 디자인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보편적 설계란 이러한 이분법적인 디자인을 반대하는 것으로 점차 통합지향, 자립으로 변화되어가는 장애의 개념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나. 다른 조항과의 관계

14) 미국 장애인법(ADA)을 참고함. <http://www.bu.edu/cpr/reasaccom/whatlaws-adaact.html#defs>

15)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의 보편적 디자인 센터의 자료를 참고함.  
[http://www.design.ncsu.edu/cud/about\\_ud/about\\_ud.htm](http://www.design.ncsu.edu/cud/about_ud/about_ud.htm)



본 조항에 정의된 용어들이 포함된 개별 조항들은 아래와 같으며, 각 조항에서 쓰이는 용어들은 본 조항의 정의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 의사소통: 제4조(일반의무), 제9조(접근성), 제21조(의견·표현 및 정보접근의 자유), 제22조(사생활 존중)
- 언어: 제9조(접근성), 제21조(의견·표현 및 정보접근의 자유), 제24조(교육), 제30조(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스포츠에 대한 참여)
- 장애로 인한 차별: 제5조(평등과 차별금지) 및 전 조항
- 합리적 편의: 제5조(평등과 차별금지), 제14조(개인의 자유와 안전), 제24조(교육), 제27조(근로와 고용)
- 보편적 설계: 제4조(일반의무)

#### 다. 관련된 국제규범과 사용례

본 협약은 여타 국제인권조약에서 규정된 차별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장애로 인한 차별’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를 차용한 국제인권조약을 살펴보면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이 있다.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조16)에서는 여성차별을 ‘인권과 자유의 향유를 저해하는 성을 이유로 한 구별, 배제, 제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조 제1항17)에서도 인종차별은 ‘인권과 자유의 향유를 저해하는 인종, 피부색, 종족 등을 근거로 한 구별, 배제, 제한 또는 우선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합리적 편의 제공의 거부’가 ‘장애로 인한 차별’에 포함되는 것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5호를 근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장애로 인한 차별’은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인

16) 여성에 대한 차별은 정치적,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17) 인종차별이라 함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정, 향유 또는 그 행사를 무효화하거나 저해하는 효과를 갖는 차별, 배제, 제약이나 장애로 인한 특정시설의 사용 금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장애인의 욕구에 따라 조정을 거부하는 것은 권리의 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명백한 차별로 인정되는 것이다. 다만, 재정 또는 환경에 무리한 부담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3. 내용 및 의의

본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의사소통’, ‘언어’, ‘장애로 인한 차별’, ‘합리적 편의’, ‘보편적 설계’는 그 범주가 넓고 다양하여 하나의 의미와 실례로 규정되거나 설명되기 어려운 용어들이다. 특히 ‘의사소통’과 ‘언어’는 그 뜻을 정확히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다양한 예들을 나열한 방식인 ‘...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상황에 따라 적용되고 해석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정의를 내린 것은 그만큼 다양한 장애의 유형과 정도, 그에 따른 의사소통방식의 차이, 차별의 형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1조(목적)에서의 ‘장애인’ 정의도 동일한 서술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합리적 편의’와 ‘보편적 설계’는 분명히 그 뜻을 규정하여 ‘...을 의미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장애로 인한 차별’의 경우 ‘...을 의미한다’와 ‘...을 포함한다’라는 두 가지의 기술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동 정의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당사국의 어떠한 규정이나 조치가 장애에 대한 차별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 효과가 차별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장애로 인한 차별을 구성한다고 하여 ‘목적과 결과’ 두 가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장애인에게 합리적 편의를 거부한 경우 차별로 보고 있으며 이는 본 협약 제5조 ‘평등과 차별금지’에서 다시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에서 정의된 구체적인 용어의 내용 및 설명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개념규정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것이므로 앞으로 우리 국내법의 제정과 개정과정에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 제3조 일반원칙

이 협약의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 (a) 개인의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자율, 자립에 대한 존중
- (b) 차별 금지
- (c)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및 통합
- (d) 인간의 다양성과 인류의 한 부분으로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이의 존중과 수용
- (e) 기회의 균등
- (f) 접근성
- (g) 남성과 여성의 평등
- (h) 장애아동의 발전적인 역량의 존중과 정체성 유지에 대한 권리의 존중

#### 1. 배경

본 협약 제1조의 목적조항은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협약이 제정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으나, 이러한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본 협약에 어떠한 원칙을 반영하였는지를 나타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보편성’과 아울러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를 수용하는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본 조항에서는 총 8개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a)호~(e)호의 원칙들은 초기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부터 본 협약 제정의 취지에 따라 지지를 받으며 존재했던 원칙들이다. 제6차 회의 이후 (f)호의 접근성과 (g)호의 남성과 여성의 평등이 많은 지지를 받아 추가되었으며, 제7차 회의 이후에는 (h)호의 장애아동의 발전적인 역량 존중 및 정체성 유지에 대한 권리의 존중이 최종적으로 추가되었다. 특히 성별과 아동을 주제로 하여 두가지 일반원칙이 추가되었는데, 장애인들 사이에서도 남녀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는 인식하에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일반원칙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암묵적으로 간과되어온 장애아동의 권리와 잠재적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장애아동의 역량에 대한 존중을 강조함으로써 본 협약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던 장애를 가진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대한 보장을 적절히 규정하고 있다.



## 2. 조문의 설명

### 가. 용어

- 사회 참여 및 통합(participation and inclusion in society):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구분 없이, 물리적·사회적 환경 속에서 권리와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참여하며,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즉, 장애인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차별 없이 동등한 삶의 모습을 갖게 되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 나. 다른 조항과의 관계

본 조항은 본 협약 수립의 원칙이자 해석적용의 기본원리이다. 따라서 다른 조항들의 해석 적용시 본 조항의 일반원칙이 함께 근거를 이루어야 한다. 일반원칙과 관련하여 장애인의 권리가 보다 특별히 언급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 (a)개인의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자율, 자립에 대한 존중: 전문 (n)호, 제14조(개인의 자유와 안전), 제17조(개인의 고유성 보호), 제19조(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통합)
- (b)차별금지와 (e)기회의 균등: 전문 (h)호, 제5조(평등과 차별금지)
- (c)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및 통합: 전문 (k)호, 제19조(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통합)
- (d)인간의 다양성과 인류의 한부분으로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이의 존중과 수용: 전문 (i)호, 전문 (m)호, 제8조(인식제고)
- (f)접근성: 전문 (v)호, 제9조(접근성)
- (g)남성과 여성의 평등: 전문 (s)호, 제6조(여성장애인)
- (h)장애아동의 발전적인 역량의 존중과 정체성 유지에 대한 권리의 존중: 전문 (r)호, 제7조(장애아동)

### 다. 관련된 국제규범과 사용례

다른 국제인권조약에서는 본 협약에서와 같이 별도의 조항을 마련하여 구체적



으로 일반원칙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일반원칙에 대한 분명한 규정은 장애인권리협약에만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성과 장애의 특수성이 반영된 강조의 결과물로 보인다.

### 3. 내용 및 의의

본 조항의 의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본 조항에 표현된 일반원칙은 장애인 권리의 증진 및 실현 방안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각 당사국 정부가 국내 법령이나 제도를 수립하고 해석을 적용하는데 이러한 원칙의 구현이 온전히 이루어졌는지 검토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다.

둘째, 본 조항은 협약의 전 조항에 걸쳐 해석 및 응용의 기본 원리가 되는 것으로 협약의 이행과 협약 목적의 실현을 위한 주된 요소라 할 수 있다. 동 조항의 원칙에 따라 장애인권리협약의 각 조항들이 구성 되어 있으며, 각 당사국 역시 본 협약의 이행에 있어 이러한 기본원칙들을 기반으로 본 협약에서 부과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제14조(개인의 자유와 안전)에서는 평등의 원칙에 준거하여 개인이 가진 불가침의 천부적인 존엄성과 그에 따른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제17조(개인의 고유성 보호)에서는 개인이 가진 신체적 및 정신적 상태에 대해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것은 동 조항의 (a), (b), (e)호와 모두 관련이 있다. 제19조(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통합)는 동등한 선택을 통해 장애인이 자율적, 자립적으로 지역사회에 통합되고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동 조항 (c)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6조(여성장애인)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존엄성, 자유에 대한 권리, 평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동 조항 (a), (b), (e), (g)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 제4조 일반의무

1. 당사국은 장애로 인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 없이 장애인의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하고 증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 (a)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이행을 위한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한다.
  - (b)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기존의 법률, 규정, 관습 및 관행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한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c) 모든 정책 및 프로그램에서 장애인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고려한다.
  - (d) 이 협약과 일치되지 않는 어떠한 행동이나 또는 실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공 당국 및 공공기관들이 본 협약에 따라 행동하도록 보장한다.
  - (e) 모든 개인, 기관 또는 민간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장애로 인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f) 장애인의 특별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설계된 재화, 서비스, 장비 및 시설의 이용가능성과 사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본 협약 제2조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가능한 최소한의 개조와 비용이 요구되는 보편적으로 설계된 재화, 서비스, 장비 및 시설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고 장려한다.
  - (g) 장애인에게 적합한 정보통신기술, 이동보조기구, 보장구, 보조기술을 포함한 신기술의 이용가능성 및 사용의 촉진과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촉진할 것과 적정가격의 이러한 기술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 (h) 그 밖의 다른 형태의 보조, 지원 서비스 및 시설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포함하여 이동보조수단, 보장구 및 보조 기술에 대한 접근 가능한 정보를 장애인들에게 제공한다.
  - (i) 이 협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에 대해 장애분야의 직원 및 전문가에 대한 훈련을 촉진함으로써 이러한 권리들에 의해 보장되는 보다 나은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각 당사국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와 관련하여, 국제법에 따라 즉각적으로 적용 가능한 본 협약에 포함된 의무들에 대하여, 편견 없이, 필요한 경우 국제협력의 틀 안에서, 이러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자국의 가용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3. 당사국은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 개발 및 이행, 그리고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타 의사결정 과정에서 장애인 대표 단체들을 통하여,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들과 밀접하게 협의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한다.



4. 이 협약의 조항은 장애인의 권리실현에 보다 공헌할 수 있는 당사국의 법률이나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에 포함되어 있는 어떠한 조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협약의 어느 당사국도 법률, 협약, 규칙 또는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또는 현존하고 있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이 협약에서 그러한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인정의 범위가 보다 협소하다는 것을 구실로 제한하거나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이 협약의 조항들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 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분야에 해당된다.

## 1. 배 경

본 조항은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당사국들이 취해야 할 일반적인 의무를 열거하고 그와 관련한 참여주체, 경제적·사회적 권리의 이행, 국내법과의 관계 등을 적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협약의 개별조항들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반복된 이슈 중 한 가지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점진적 실현과 관련된 표현을 협약에 포함시키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을 개별 조항들마다 거듭 사용하는 것은 중복성이라는 문제를 낳는데다가, 각 조항들의 많은 부분들이 차별금지를 포함한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혼합체이기 때문에 즉각적 및 점진적 이행이 모두 적용되는 것인데, 점진적 실현에 대한 내용만을 개별조항마다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점진적인 실현에 대한 내용을 본 조항의 제2항에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관련된 개별조항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문제를 피하게 되었다.

## 2. 조문의 설명

### 가. 용 어

- **가용자원(available resource):** ‘가용자원’이란 한 국가내의 자원과 국제협력과 원조를 통해 국제공동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모두 포함한다.



- 이러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to achieving progressively the full realization of these rights):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할’ 의무는 당사국이 가능한 신속히 권리의 실현으로 나아가기를 요구한다. 이러한 의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에게 완전한 실현을 위한 노력을 무제한적으로 연기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즉 당사국은 장애인권리협약하의 의무실현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에 착수할 의무가 있으며, 단지 그 결과의 달성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나. 다른 조항과의 관계

본 조항은 본 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조항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자유권에 해당되는 제10조(생명권)부터 제18조(이주 및 국적의 자유)까지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리라 예상된다. 특히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평등과 차별금지와 관련해서는 만일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지 않거나 고의로 거부하는 경우 이것은 차별로 간주되므로 즉각적인 이행의 대상이 되지만, 제2조(정의)에서 규정되었듯이 합리적인 배려를 이행해야 하는 사람 또는 기관에 불균형적이거나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점진적 실현의 적용은 사회적 보호,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적인 생활, 교육, 건강, 고용 등이다. 그러나 사회·경제적인 비용이 각 당사국 정부와 사회에 큰 부담이 되지 않거나 차별적 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즉각적인 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다.

#### 다. 관련된 국제규범과 사용례

동 조항은 아동권리협약 제4조18)에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해 가용자원을 최대한 이용하고, 필요한 경우 국제협력내에서 점진적인 조치를 취해

18) 당사국은 본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 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야 한다는 일부 내용을 차용하였다. 특히 제4항은 여성차별철폐협약 제23조<sup>19)</sup>와 아동권리협약 제41조<sup>20)</sup>의 내용을 차용하였는데, 이는 각 당사국의 법 또는 당사국에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에 속한 조항에 대해 본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또한 ‘장애인의 기회평등에 관한 표준규칙’의 규칙14(정책 개발 및 계획)<sup>21)</sup>에서는 모든 장애인 정책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촉진하고, 장애인의 욕구와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내용 및 의의

본 조항은 장애인이 그들의 권리와 자유를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각국의 입법적, 정책적, 행정적 의무사항들을 구체화하고 있다. 즉, 각 당사국은 모든 사회 영역에서 개인을 비롯한 기업과 기관들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 관습, 행정적 부문에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본 협약의 온전한 이행을 위한 정보 및 기술의 교환, 재정지원, 자원교류 등 각 국가간 국

19) 본 협약 상 어떠한 것도 아래에 포함될 수 있는 남녀평등의 달성에 더욱 이바지하는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 당사국의 법령 또는

(b) 동 국에 대하여 발효 중인 여하한 기타 국제협약, 조약 또는 협정

20) 본 협약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권리의 실현에 보다 공헌할 수 있는 어떠한 규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 당사국의 법;

(b)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

21) 당사국들은 모든 관련 있는 정책 마련 및 국가계획에 장애 관점이 포함되는 것을 보장한다.

1. 당사국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장애인을 위한 적합한 정책을 착수하고 계획해야 하며 지역 및 지방 차원에서의 행동을 고무하고 지원해야 한다.

2. 당사국들은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의사결정과 장애인 관련 계획 및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에 장애인단체를 참여시켜야 한다.

3. 장애인의 욕구와 우려는 일반적인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별도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4. 장애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당사국의 궁극적인 책임이 기타의 책임들을 무마해주는 것은 아니다. 서비스, 활동을 책임지는 사람 또는 사회에서의 정보 제공은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책임을 받아들이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5. 당사국들은 지역사회의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과 조치들을 개발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은 매뉴얼 또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 지역의 직원들에게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제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인 단위에서부터 국가 단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협력하여 각 사회 분야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그 의무들을 점진적으로 혹은 즉각적으로 이행하도록 분명히 명시하였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본 협약은 여타의 국제인권법과 마찬가지로 구속력 있는 국제법이며 각국의 비준 이후 당사국들은 실질적인 이행의 의무를 갖게 된다. 각 당사국 정부의 협약 이행 의무는 언급한 바와 같이 점진적 실현과 즉각적인 조치의 마련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중요한 점은 이러한 두 가지의 점진적 실현 및 즉각적 실현이 어떻게 본 협약에서 적용되어 이행되는가이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5호에 의하면, 가용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해당 권리의 점진적 실현을 촉진시켜야 할 당사국의 의무는 단순히 장애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삼가는 것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즉, 모든 장애인에게 평등과 완전한 사회참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사회적·구조적인 불이익을 감소시키고, 장애인에게 적절한 호혜적인 대우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사국의 의무이다.

그러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비록 장애인에게 시급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나 현실적으로 그 실현과정에서 절대적인 자원이 필요하고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필요한 경우가 문제된다. 본 조항은 제2항으로 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각 당사국 정부에게 조항별로 명시된 모든 내용들을 반드시 즉각적으로 이행할 의무가 부여된 것은 아니며, 특히 교육, 고용, 건강, 재활 등과 같이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부담이 발생하는 분야에서 점진적인 실현에 근거하여 본 협약의 준수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자원의 활용에 어려움이 없고 즉각적인 실현이 가능한 영역에서 당사국들이 점진적인 실현이라는 원칙을 적용할 경우, 본 협약의 실질적인 구속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점진적인 실현 원칙이 악용될 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항은 장애인의 사회권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경우 국제협력의



들 안에서 점진적인 원칙을 전제로 하되 최대한 이용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점진적 달성의 의무가 당사국에게 완전한 실현을 위한 노력을 무제한적으로 연기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되며, 국가가 이행하여야 할 최소한의 의무가 자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경감되지도 않는다. 즉, 당사국은 장애인권리협약하의 의무의 완전한 실현을 위하여 즉각적인 조치에 착수할 의무가 있으며, 그 결과의 달성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점진적으로 노력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점진적이라는 표현이 당사국의 본 협약에 대한 고의적인 불이행 또는 회피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

반면 생명권, 신체와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고문 등으로부터의 자유, 사생활 보장에 대한 권리, 정치 참여와 투표권 등과 같은 자유권 분야와 차별분야는 점진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국이 즉각적으로 실현해야 할 즉각적인 의무가 부여된다.



## 제5조 평등과 차별금지

1. 당사국은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그리고 법 아래에서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장애로 인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유형의 차별에 대하여 동등하고 효과적인 법적보호를 장애인들에게 보장 한다.
3. 당사국은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합리적 편의가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장애인의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시키거나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들은 이 협약의 조항 하에서 차별로 간주되지 않는다.

### 1. 배 경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기회박탈과 같은 명백한 차별에서부터 물리적, 사회적 장벽으로 인한 소외·배제·격리와 같은 암묵적인 형태의 차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어 왔으며 뿌리 깊은 편견과 오랜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 동 조항은 그러한 장애차별의 특수성에 기하여 본 협약의 일반원칙에도 언급되어 있는 평등과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독립된 조항으로 다시 정비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장애인이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평등권을 인정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를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마련되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여타의 국제인권조약에서도 차별 금지에 대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어 그러한 내용들을 차용하여 동 조항의 내용이 구성되었다.

### 2. 조문의 설명

#### 가. 용 어

- 장애인의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시키거나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들(specific measures which are necessary to accelerate or achieve de facto



equal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로서 합리적 편의의 제공이나 적극적 우대 조치와 같은 정책은 비장애인에 대한 역차별적인 요소가 아닌 장애인의 장애를 배려하여 비장애인과 유사하거나 동등한 환경을 형성해주는 사실상의 평등을 증진시키는 조치들이다.

#### 나. 다른 조항과의 관계

동 조항은 장애인의 평등과 차별금지를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조항으로 장애인에 대한 비차별 조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등원칙을 바탕으로 기존의 차별을 보정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부여되는 모든 조치들은 차별로 간주되어서는 안되며 본 협약의 모든 조항에 적용되어야 한다.

#### 다. 관련된 국제규범과 사용례

동 조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6조<sup>22)</sup>의 법 앞에서의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을 일부 차용하여 구성하였다.

또한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은 평등의 원칙은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동등하게 중요하며 사회적 계획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 모든 자원은 사회구성원이 동등한 사회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3. 내용 및 의의

동 조항에서는 당사국들로 하여금 장애인이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고, 차별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해 장애인이 법적으로 보호받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모든 장애인들이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22)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차별금지에는 평등을 추구하는 제한적인 수단으로 ‘기회의 평등’ 혹은 ‘절차의 평등’과 가깝다.

장애로 인한 차별은 배제, 차별, 분리뿐만 아니라 무시, 무지, 편견, 그릇된 가정을 통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장애인들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포함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5호는 비차별 조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장애를 근거로 하는 차별의 효과는 교육, 고용, 주택, 교통, 문화생활, 공공장소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등의 분야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법적 상황은 다소 진전을 보이기는 했으나 장애와 관련된 포괄적인 차별금지에 관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을 통해 장애인은 적절하고 포괄적인 사법적 구제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사회통합과 자율적이고 자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것이다.

제1항에서는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장애인 역시 이러한 동등한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차별의 다양한 형태를 열거하는 대신 ‘장애로 인한 모든 차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 해석의 범주를 확대하였다. 제1항과 제2항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법적 권한이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안에 있어 모든 사람들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며 법의 동등한 보호와 혜택을 보장할 것을 당사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 편의의 제공은 장애인에게만 특수하게 적용되는 조건으로서 평등과 차별금지를 구분할 수 있는 요소가 됨으로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통해 차별적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또한 제3항과 제4항을 통해 합리적 편의 제공 등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 제공 의무와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는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유사한 조건을 형성해 주고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차별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제3항 ‘합리적 편의’는 평등과 차별금지의 하나의 요인으로 즉각적인 실현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장애인에게 아무런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비장애인과 같이 경쟁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평등’을 위



한 합리적 편의 제공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합리적 편의의 제공은 거의 모든 일상 또는 사회생활 영역에서 적용되며 장애인을 위한 합리적인 조정이 제공되지 않거나 거부되는 경우는 차별로 간주되며, 이는 즉각적인 조치의무가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합리적 편의를 제공해야하는 사람 또는 기관에게 불균형적이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시키거나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들은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유사한 조건을 형성해 주고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가 포함될 수 있다. 적극적 우대조치는 실질적 평등을 위해 형식적 평등을 유예하는 조치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준을 부여할 경우 특정 집단에게 불이익이나 차별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그러한 소수집단에게 일정 부분 혜택을 제공하여 불평등한 구조를 개선시키려는 목적을 가진다.



## 제6조 여성장애인

1. 당사국은 장애여성과 장애소녀들이 다중적인 차별을 겪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여성과 장애소녀들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하고 동등한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규정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향유와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들의 완전한 개발, 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1. 배 경

여성장애인들이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인해 다른 장애인보다 더욱 불리하고 취약한 위치에 있으므로 여성장애인이 처한 상황과 문제들을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 협약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 이후 한국 정부와 장애인단체들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그에 따라 현재 제6조인 여성장애인 조항이 제15조 bis로 제안되었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이 모든 여성의 권리를 언급하고 있으나 협약 내에서 장애여성 이슈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는 한계가 있으므로 본 협약에서 성인지적 관점과 남녀평등의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는 데 각 정부대표들 및 장애시민단체들의 일반적인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동 조항의 성안과정에서 대다수의 당사국들은 여성장애인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차별 및 취약성, 그리고 여성장애인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그 해결을 위한 접근 중 별도조항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독립적인 여성장애인 조항을 지지하는 국가들은 무엇보다 여러 국제인권조약의 이행에 있어 여성에 관한 보편성 확보가 어려워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제정되었듯이 장애인권리협약 내에서도 여성장애인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여성장애인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아동권리협약 제23조에서는 장애아동에 대해,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4조에서는 농촌여성에 대해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협약에서 별도로 여성장애인을 특별히 언급하는 것은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장애여성에게는 성 폭력, 착취 및 학대, 임신 및 출산, 양육 등의



분야에서 특별한 요구가 있고 현존하는 성별 불평등을 고려할 때 교육, 고용 등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독립적인 여성장애인 조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성(性)은 모든 사회영역에 적용되는 포괄적 차원의 사회구성요건이므로 별도의 여성장애인 조항이 남성장애인을 차별하거나 여성에게 특별히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국가들은 별도의 조항이 만들어질 경우 여성, 아동뿐만이 아닌 노인, 원주민 등 다양한 소수그룹들도 나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일반원칙(제3조) 조항에서 장애여성을 언급하고 모니터링 조항(제33조 이후)에서 이를 추가하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여성장애인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해당 조항에서 언급된 사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해석될 위험성이 있어 오히려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기존의 여성차별철폐협약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본 협약에서 여성에 대한 언급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찬반의견에 따라 여성장애인 조항 규정에 대한 세 가지 안이 제시되었는데, 그 첫 번째는 제6조와 같이 별도의 여성장애인 조항을 마련하여 여성장애인 관련 내용을 하나의 조항에 모두 포함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 안은 소위 병렬 접근방식(Twin Track Approach)으로 불리는 방법으로 별도의 여성장애인 조항에는 간략한 핵심원칙만을 언급하고, 장애여성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특수욕구가 필요시 되는 영역과 성별을 고려하지 않아 장애여성이 장애남성보다 더 큰 피해를 입거나 권리를 찾을 수 없는 영역이라고 간주되는 일부 조항에는 성별을 고려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최종적으로 제8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병렬 접근방식(Twin Track Approach)이 채택되어 본 조항을 존치하고, 장애여성 이슈가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하는 일부 조항에 성별의 관점이 포함시키는 것으로 국가간 의견이 일치 되었다.

## 2. 조문의 설명

### 가. 용 어

- 다중적인 차별(multiple discrimination): 두 가지 요인 이상이 중첩적 혹은 상



호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 **역량강화(empowerment):** Empowerment라는 용어는 사전적인 의미로 역량강화, 능력고취, 세력화, 힘, 권위, 권한의 부여 또는 위임 등으로 해석되나, 정확하게 우리말로 규정된 용어는 없다. Gutierrez<sup>23)</sup>는 Empowerment를 ‘개인이 스스로 살아가는 환경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행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개인적, 조직적, 정치적인 힘을 강화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여기서 힘이란 것은 원하는 것을 얻는 능력, 타인의 생각·행동·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가족·집단·지역사회 등의 사회체계내의 자원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것, 법적이고 공적인 권위, 능력이나 권리, 자원, 기회에 일정한 통제력을 발휘하는 것 등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Empowerment란 대체로 힘이 없는 사람들이 힘을 갖도록 하는 것이며, 구체화하면 개인적 이유든, 사회구조적 이유든, 또는 이들의 복합적인 이유이든 사람들이 환경과의 상호작용관계에서 박탈하거나 상실한 권리, 기회, 자원, 서비스를 획득하여 자신과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는 것이며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이다.

#### 나. 다른 조항과의 관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병렬접근방식(Twin Track Approach)에 따라 본 조항 외에 장애여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조항으로, 전문 (n), (o), (q), 제3조(일반원칙), 제16조(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제25조(건강), 제28조(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가 있으며 동 조항들을 통해 본 협약에서 특별히 장애여성과 소녀에 대한 권리보장 및 성별의 특수성에 대한 반영이 강조되었다. 장애여성이 포함된 관련 조항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문 (q)호:** (q)호에서는 장애여성과 소녀들의 폭력 노출의 취약성과 위험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으며, (s)호에서는 장애인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위해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

23) Gutierrez, L. & Nurius, P. (1994). Education and Research for Empowerment Practice. Center for Social Policy and Practice,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WA.;



다.

- 제3조(일반원칙)의 (g)호의 남성과 여성의 평등: 성별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 제16조(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제2항: 장애인과 그 가족들 그리고 개호인을 위하여 성별, 연령, 장애를 고려한 보조 및 지원, 보호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제16조(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제4항: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의 희생자가 된 장애인들의 신체적, 인지적, 심리적 회복 및 재활과 사회재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한 성별과 연령에 따른 구체적인 욕구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제16조(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제5항: 여성과 아동에 초점을 맞춘 법률 및 정책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25조(건강): 당사국은 성별을 고려한 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 제28조(적절한 생활수준 및 사회적 보호) 제2항 (b)호: 특히 장애여성, 장애소녀, 장애노인을 위한 사회보호 프로그램과 빈곤감소 프로그램에 대한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다. 관련된 국제규범과 사용례

동 조항은 여성장애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조정자(Facilitator)와 일부 당사국 대표자들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국제인권법에서 유사한 사용례를 찾아 볼 수 없다.

### 3. 내용 및 의의

동 조항은 두 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항에서는 장애를 가진 여성들이 다중적인 차별의 대상임을 각 당사국이 인정한다는 선언적인 의미의 규정이 담겨있으며, 본 협약의 목적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동



등하고 완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와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여성들이 장애로 인해 차별을 받는 경우도 많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애남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을 더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 당사국들은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성별을 고려한 조치들이 시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된다고 볼 수 있다.

제2항에서는 제1항에 언급된 장애여성 및 소녀들의 역량강화, 개발, 향상을 위한 각국의 구체적인 조치 마련 및 이행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장애를 가진 여성들과 소녀들은 모든 유형의 폭력, 착취 등의 영역에서 위협에 노출되기 쉽고, 기타 사회생활 및 일상생활 영역에서 차별적인 처우를 받거나 배제되기 쉽다. 특히 임신·출산을 포함한 건강 분야에서 장애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한 방안의 마련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성별을 고려한 다양한 장애인 정책 및 프로그램, 법률 등을 마련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 요구된다.

본 협약의 전문 (d)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현재 7개의 국제인권조약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약들은 여성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보장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실제로 장애여성이 차별 대우를 받을 경우, 그 대우가 성별 때문인지 혹은 장애 때문인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가 많으며 현실적으로도 장애여성은 비장애여성, 장애남성으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 이러한 장애여성의 다중적인 차별요소에 관한 구체적인 차별금지 는 명시하지 않고 있어 장애여성의 문제가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비록 본 협약의 모든 내용이 남성과 여성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구체적인 현실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지 못하고 주류남성적 시각으로 법령제도가 행해지는 경우 장애여성이 가진 특수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5호에서도 여성장애인에 대한 이중적인 차별이 간과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이에 대한 해결노력은 거의 없었다고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장애인권리협약을 통해 별도 여성장애인 조항과 관련 조항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고 여성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문이 마련된 것은 그동안 간과되어왔던 여성장애인의 인권 보호 및 신장에 기여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 제7조 장애인 아동

1.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장애아동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장애아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 당사국은 장애아동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와 그러한 견해에 대하여 다른 아동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그들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적절한 비중을 둘 것을 보장하며 그러한 권리를 실현하도록 장애와 연령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한다.

### 1. 배 경

장애아동에 관한 별도조항의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역시 제6조(여성장애인)의 존치여부에 관한 것과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제6조(여성장애인)와 마찬가지로 장애아동에 관한 규정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는 일반적인 동의가 있었으나 별도 조항으로의 구성을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에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장은 여성장애인 조항과 장애아동 조항을 유사한 이슈로 구분하여 함께 논의하였다.

본 조항의 존치 필요성과 관련하여, 일부 국가 및 장애시민단체는 장애아동에 대한 접근이 건강과 복지 영역에만 집중되어 왔고 보다 포괄적인 아동권리의 실현에 한계가 노출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장애아동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통합교육의 추세와 같이 비장애아동과 동등하게 장애아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주류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또한 아동권리협약과 장애인권리협약에 동일하게 장애아동의 문제가 포함되어야 효과적으로 장애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으며 두 협약이 추구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EU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여성장애인 조항과 동일한 이유로 장애아동에 관한 독립조항의 존치를 반대하였다.

그 구성에 있어서도 제6조(여성장애인)와 동일하게 세 가지 접근방식이 제시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독립적인 조항을 존치하고 장애아동의 권리가 더욱 강조



되어야 하는 관련 조항에 장애아동의 인권보장과 관련한 문구를 포함하는 방식인 병렬접근방식(Twin Track Approach)이 채택되었으며, 아동권리협약 제23조를 차용한 조정안(Facilitator's Text)에 모든 당사국이 최종적으로 합의하여 별도의 조항으로 성안되었다.

## 2. 조문의 설명

### 가. 용어

- 아동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child):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결정할 때 아동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는 아동의 부모나 관련자가 아닌 아동 본인에게 최고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아동 중심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아동이 입양될 경우 양부모나 친부모의 개인적인 선호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가장 양육되기 적합한 부모에게 입양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할 때 가능한 경우 아동의 의견이 최대한 존중되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성숙도(maturity): 사전적으로는 육체적·정신적으로 발달한 정도를 의미한다.

### 나. 다른 조항과의 관계

병렬접근방식(Twin track Approach)에 따라 본 조항 외에도 전문 (r)호, 제3조(일반원칙), 제18조(이주 및 국적의 자유), 제23조(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제24조(교육), 제25조(건강), 제30조(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스포츠에 대한 참여)에 장애아동의 권리 및 이들을 고려하는 문구가 규정되어 있다.

- 전문 (r)호: (r)호에서는 장애아동이 비장애아동과 동등하게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각국의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준수에 대해서도 다시 강조하고 있다.



- 제3조(일반원칙) (h)호: 장애아동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인정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며 한 개인으로서 장애아동이 갖는 정체성에 대해 존중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 제18조(이주 및 국적의 자유) 제2항: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출생등록이 거부되지 않도록 아동의 기본적인 출생등록권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이름과 국적을 갖고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제23조(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제1항 (c)호: 장애아동의 임신과 출산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 제23조(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제2항: 장애아동에 관한 모든 유형의 양육 시스템에 있어 장애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양육의 책임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제23조(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제3항: 가족 내에서 그리고 가정생활에 있어 장애아동도 다른 가족구성원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 제23조(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제4항: 합법적으로 장애아동이 부모와 격리되어야 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아동의 의지에 반하여 부모와 격리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 또는 부모의 장애로 인하여 서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23조(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제5항: 장애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집단을 직계가족뿐만 아니라 확대가족과 지역사회까지 확대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를 반드시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 제24조(교육): 장애아동의 교육받을 권리의 인정 및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마련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제25조(건강) (b)호: 특히 장애아동에게 발생할 확률이 높은 장애에 대한 예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명시하고 있다.
- 제30조(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스포츠에 대한 참여) 제5항 (d)호:



장애아동의 교내활동, 놀이, 레크리에이션 등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 다. 국제규범과 사용례

아동권리협약 제23조<sup>24)</sup>에서는 네 개의 항으로 별도의 장애아동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장애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존엄성이 보장되고 사회참여 및 자립이 가능한 여건에서 충분히 수준 있는 생활을 향유하도록 인정하며, 장애아동이 다양한 유형의 보호자로부터 양육 받을 권리와 그에 따른 지원 및 조치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아동의 재활 및 교육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을 통해 장애아동을 지원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 3. 내용 및 의의

장애아동은 부모 또는 사회로부터 기본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는 계층으로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권한행사에 제한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미성숙한 주체라는 이유로 인간으로서 아동의 존엄성은 계속 무시되어 왔으며, 국가에 따라서는 이를 당연히 여기는 문화적 분위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여 장애

- 24) 1. 당사국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아동이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 사회 참여가 조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위 있는 생활을 누려야 함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며, 신청에 의하여 그리고 아동의 여건과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사정에 적합한 지원이, 활용 가능한 재원의 범위 안에서, 이를 받을 만한 아동과 그의 양육 책임자에게 제공될 것을 장려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3. 장애아동의 특별한 어려움을 인식하며,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지원은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재산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장애아동의 가능한 한 전면적인 사회참여와 문화적·정신적 발전을 포함한 개인적 발전의 달성에 이바지하는 방법으로 그 아동이 교육, 훈련, 건강관리지원, 재활지원, 취업준비 및 오락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4. 당사국은 국제협력의 정신에 입각하여, 그리고 당해 분야에서의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경험을 확대하기 위하여 재활, 교육 및 직업보도 방법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이용을 포함하여, 예방의학 분야 및 장애아동에 대한 의학적·심리적·기능적 처치 분야에 있어서의 적절한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배풀어져야 한다.



아동의 개인적인 의사나 존엄성은 더욱 많은 침해를 받아왔고, 아동의 인권보다는 경제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 보호하는 가족의 편의가 우선되어 왔다. 본 조항은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가족구성원이나 집단에 의한 대리의사결정보다는 장애아동이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고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데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즉, 본 협약이 추구하는 원칙은 장애를 가진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동 조항은 모두 세 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항에서는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간의 동등한 권리 보장 및 실현을 위한 적절한 조치의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장애를 근거로 하여 아동을 달리 처우하거나 권리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장애아동과 관련된 조치들이 아동의 부모, 보호자, 관련인을 위주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모든 정책, 프로그램, 법률,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아동과 관련한 권리의 실현 주체는 장애아동 본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 제3항에서는 장애아동의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하여 아동이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그러한 결정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표현이 가능하도록 보장한다는 자기결정권의 보장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아동의 최대 이익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타 조항들과 마찬가지로 세 개의 조항들은 궁극적으로 아동의 권리와 자유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조항 역시 여성장애인 조항과 마찬가지로 장애아동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만들어진 조항으로 기본적으로는 아동권리협약에 포함된 장애아동에 대한 언급과 비슷하여 중복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아동권리협약과 장애인권리협약을 통해 아동이라는 보편성과 장애라는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제8조 인식 제고

1. 당사국은 다음 사항에 대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a) 가족 단위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의 고양
  - (b) 성별과 연령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선입견, 그리고 유해한 관습의 근절
  - (c) 장애인의 능력과 공헌에 대한 인식의 증진
2.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포함한다.
  - (a) 다음을 목적으로 효과적인 대중인식사업의 추진 및 지속
    - (i)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감수성 증진
    - (ii)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사회적 인식개선 증진
    - (iii) 직장과 고용시장에서 장애인의 기술, 실적, 능력과 기여에 대한 인식 장려
  - (b) 유아기부터의 모든 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단계의 교육제도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의 양성
  - (c) 본 협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장애인을 묘사하도록 모든 대중매체에게 권장
  - (d) 장애인과 이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 훈련 프로그램의 장려

### 1. 배경

장애차별의 주된 양상과 원인중의 하나로,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이 있다. 이는 매우 오랜 역사와 문화 속에서 나온 것이므로, 장애차별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인식 개선 및 사회적 편견의 제거를 위해 특별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필요성으로 인하여 인식 제고에 관한 본 조항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동 조항의 명칭과 관련하여, 제8차 특별위원회 회의까지는 ‘장애에 관한 인식 제고(Raising Awareness Regarding Disability)’였으나 IDC는 객체에 해당하는 ‘장애’ 대신 본 협약의 주체인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므로 제목을 ‘장애인에 관한 인식 제고’로 수정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그러나 제8차 특별위원회에서의 논의 결과 단순히 장애뿐만이 아닌 전반적인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인식제고 그리고 이를 위한 조치들이 명시되어야 하므로 포괄적으로 인식



의 수준을 높이는 의미가 함의되도록 조항의 명칭을 ‘인식제고(Awareness-raising)’로 수정하였다. ‘장애인의 기회평등에 관한 표준규칙’에서도 ‘인식제고(Awareness-Raising)’라는 용어로 표기하고 있다.

여러 차례의 특별위원회의 논의 결과 제1항 (a)호에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본 협약의 취지에 부합하여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었으며, (b)호에서는 ‘삶의 모든 영역에’ 존재하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추가적으로 보완되었다. 이로써 특정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삶의 전 분야에서의 장애인과 관련한 총체적인 인식개선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동 조항의 제2항에서는 구체적으로 인식개선과 관련된 일부 조치에 대한 사례를 열거하고 있다.

## 2. 조문의 의미

### 가. 용 어

- **인식제고 조치(measures to raise awareness):** 당사국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인식 개선 프로그램과 방송매체, 신문, 인쇄매체 등을 통한 인식제고 홍보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영·유아 시기부터 초·중·고등 단계까지의 교육과정, 일반 대중 및 장애 관련 종사자 및 전문가를 위한 인식 훈련 등도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 나. 다른 조항과의 관계

- **제24조(교육):** 교육은 가장 중요한 인식제고수단이다. 따라서 본 조항은 제24조와 아울러 해석 적용되어야 한다. 제24조는 모든 교육과정에 있어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장애인의 권리 존중 및 존엄성 존중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긍정적이고 올바른 장애관련 교육커리큘럼, 프로그램 마련 및 전문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다. 관련된 국제규범과 사용례

‘장애인의 기회평등에 관한 표준규칙’에서 규칙 125)은 ‘인식제고’로 사회에서의 장애인,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의 욕구, 장애인의 잠재력 및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당사국들은 장애인이 모든 사람들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으며 이들의 완전한 참여를 저해하는 모든 장벽들은 제거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인식 홍보 캠페인을 미디어, 학교 교육 등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촉진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3. 내용 및 의의

동 조항은 당사국의 인식제고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는 제1항과 그러한 조치의 예들을 제시한 제2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포괄적으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인식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계 보장, 교육 및 의료재활은 복지제도를 통해 지원할 수 있지만 사회적 인식의 개선은 법이나 제도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장애인을 비롯하여 모든 구성원

- 
- 25) 당사국은 사회 내에서 장애인, 장애인의 권리·욕구·잠재력·기여도에 관해 인식제고를 위한 행동을 취한다.
1. 당사국은 해당 기관이 장애인, 장애인의 가족, 장애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일반 시민에게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배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접근 가능한 형식이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 역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으므로 완전한 참여를 저해하는 모든 장벽들을 제거하는 조치들은 정당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장애인과 장애정책에 대한 정보 캠페인을 착수하고 지원한다.
  3. 당사국은 긍정적인 방식으로 미디어에서 장애인들을 묘사하도록 권장한다; 장애인단체와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상의하도록 한다.
  4. 당사국은 공공교육프로그램이 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모든 양상을 반영하도록 보장한다.
  5. 당사국은 장애와 관련된 장애인, 장애인가족, 장애인단체가 공공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다.
  6. 당사국은 민간부문사업에서 장애 이슈가 포함되도록 권장한다.
  7. 당사국은 장애인의 권리와 잠재력에 대한 장애인의 인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착수하고 촉진한다.
  8. 인식제고는 장애아동의 교육과 재활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부분이어야 한다. 장애인 역시 장애인 단체 활동을 통해 인식제고를 하는데 상호지원이 가능하다.
  9. 인식제고는 모든 아동 교육에서 하나의 영역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사훈련과정과 모든 전문가 훈련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장벽과 그릇된 편견이 불식되어야 하고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즉,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에 있어 올바른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 확립이 필요하며, 그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의 개선은 가정 및 사회에서의 초기 교육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장애 개념,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 개선, 장애인의 역량에 대한 인식개선, 각종 사회제도 및 관습에 대한 인식 개선, 그리고 이를 위한 제반의 인식 개선 홍보와 프로그램 등 확장적인 방식의 인식제고와 개선방안들이 마련되도록 각 당사국 정부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장애인의 인권은 사회의 인식(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인식의 전환은 순간적으로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방면에서 다양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당사국의 의무 또한 즉각적인 면과 점진적인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제 2 절 실제적 조항

## 제9조 접근성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 및 농촌지역에서 장애인의 물리적 환경, 대중교통, 정보통신기술 및 체제를 포함한 정보통신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되는 기타 시설이나 서비스에,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접근하도록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접근성에 대한 장애와 장벽의 식별 및 철폐를 포함하는 이러한 조치들은 특히 다음의 사항에 적용된다.
  - (a) 학교, 주거, 의료시설과 근무지를 포함한 건물, 도로, 대중교통 및 기타 실내외 시설
  - (b) 전자서비스와 응급서비스를 포함한 정보, 통신 및 기타 서비스
2. 당사국은 또한 다음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a)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의 접근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 및 지침의 이행을 위한 개발 공표 및 점검
  - (b)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주체들이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하여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보장
  - (c) 모든 당사자들에게 장애인이 직면한 접근성의 문제에 대한 훈련제공
  - (d) 대중에게 개방되는 건물과 기타 시설에 점자 및 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표지판 설치
  - (e) 대중에게 개방되는 건물과 기타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안내인, 낭독인, 전문수화통역사를 포함한 현장지원과 매개체의 제공
  - (f)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타 적절한 형태의 지원과 보조를 장려
  - (g) 장애인이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및 체제에 대해 접근하도록 장려
  - (h) 최소한의 비용으로 기술 및 체제에 접근 가능하도록 초기단계에서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기술과 체제의 설계, 개발, 생산 및 유통을 장려

## 1. 배 경

접근성은 본 협약의 일반원칙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으며, 합리적 편의의 제공과 함께 장애인의 고유한 특수성을 반영한 조항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장애인들은 장애 때문에 비장애인들보다 삶에 있어 필요한 기술, 수단, 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장애인이 삶의 환경에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이 접근하게 될 수록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게 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본 조항이 신설되었다.

## 2. 조문의 설명

### 가. 용 어

- 접근성(accessibility): 장애인을 포함하여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신체적·시각적·청각적·인식적 수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물과 서비스의 수단 혹은 상황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물리적 혹은 이미 만들어진 환경 혹은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과 정보,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성이 포함된다.
- 현장지원(live assistance):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곳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보조인, 낭독인 등 인적 지원과 안내견 등 동물적 지원을 포함하는 용어이다.
- 매개체(intermediaries): 보조하는 사람이라기보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사와 같이 특별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중간단계의 역할을 하는 사람 또는 수단을 의미한다.

### 나. 다른 조항과의 관계

- 전문 (v)호: 물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환경 및 건강과 교육 그리고 정보와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의 중요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위한 접근성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제19조(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통합): 제9조 두문(chapeau)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제9조에서 명시된 접근성에 대한 보장은 각 정부가 취해야 할 조



치의 하나로서 요구된다.

- 제20조(개인의 이동): 접근성의 하나로서 개개인의 이동성에 대한 보장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 제21조(의견·표현 및 정보접근의 자유):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 등에 대해 장애인도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 관련된 국제규범과 사용례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은 공공기관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야 하고, 일상적인 의사전달수단으로 쉽게 의사를 전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특수자료(점자, 수화 등)의 마련을 권고하고 있다. ‘장애인의 기회평등에 관한 표준규칙’에서 규칙 526)는 ‘접근성(Accessibility)’에

- 26) 당사국들은 모든 사회 영역의 기회평등의 과정에서 접근성의 총체적인 중요성을 인정해야 한다. 모든 장애인들에게 당사국들은 (a) 접근 가능한 물리적 환경을 만들기 위한 행동 프로그램을 소개해야 하고; (b) 정보 및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 (a)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
1. 당사국들은 물리적 환경에서의 참여를 저해하는 장벽들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착수해야 한다. 그러한 조치들은 기준 및 지침들이 개발되어야 하고 주택, 건물, 대중교통서비스 및 기타 교통수단, 거리 그리고 기타 야외 환경 등 다양한 사회의 분야에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제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2. 당사국들은 건축, 건설 기술자와 기타 물리적 환경 건설 및 설계 전문가들이 접근성을 달성하기 위해 장애 정책 및 조치들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3. 접근성 보장 요건은 설계 과정 초기부터 물리적 환경 설계 및 건축에 포함되어야 한다.
  4. 접근성 기준 및 표준이 개발될 때 장애인단체와 논의가 있어야 한다. 장애인단체는 또한 공공 건설 작업이 설계되는 초기 계획단계부터 부분적으로 참여하여 접근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 (b) 정보 및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
5. 장애인, 그리고 적절하다면 장애인 가족 및 옹호자들은 모든 단계에서 진단, 권리, 이용 가능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정보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정보는 장애인들에게 접근 가능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6. 당사국들은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에게 접근 가능한 정보서비스 및 문서화를 위한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점자, 테이프 서비스, 대형인쇄 및 기타 적합 기술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면 정보 및 문서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유사하게, 적합 기술은 청각 장애인 또는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한 구술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7. 청각장애아동의 교육, 가족 및 지역사회 내에서 수화의 사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수화통역 서비스는 또한 청각장애인 간의 그리고 청각장애인과 비청각장애인 간의 의사소통을 용이



대한 내용으로 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접근성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물, 대중서비스와 같은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성과 정보 및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성을 구분하여 접근성 제공을 보장하도록 각 당사국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3. 내용 및 의의

본 조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완전히 향유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물리적·인식적·문화적 장벽을 확인하여 제거하고, 의사소통 및 대중교통 수단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보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장애의 특성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보장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조항에서 의미하는 접근성 증진의 대상은 장애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인들인 대중교통, 정보통신기술(관련 기술 및 시스템 포함)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것이다. 즉, 물리적 대상인 건물에 대한 접근성뿐만이 아니라 인식적이고 기술적인 범주에까지 접근성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먼저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은 장애인이 자율적으로 건물을 출입할 수 있고, 어떤 장소에 접근가능하고,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성 보장이다.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성에서 나아가 정보를 얻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자유의 보장까지 그 범위는 확장된다. 결국 모든 지역에서의 장애인의 자립적인 생활과 참여를 저해하는 모든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지하철, 버스, 정보 혹은

---

하게 하기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8. 기타 의사소통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욕구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9. 당사국들은 미디어—특히 TV, 라디오, 그리고 신문—의 서비스가 접근 가능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10. 당사국들은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는 새로운 컴퓨터 정보 및 서비스 시스템이 처음부터 접근가능하거나 아니면 장애인들에게 접근 가능하게 변형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11. 정보서비스가 접근가능하게 만드는 조치를 개발할 때 장애인단체와 논의해야 한다.



의사소통 이용과 같은 모든 형태의 환경 및 조건들에 대한 구조적인 차별을 근절하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조치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게 되는 것이다. 즉 장애인에게는 교육, 의료, 정보이용, 근로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적절한 조정과 변형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구조적 변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또한, 특징적으로 의사소통이나 감각기능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조치 마련을 규정하여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기본적인 접근성 향유권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정보접근성은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인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각 당사국이 장애인이 인터넷을 비롯한 새로운 정보습득 및 공유수단,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을 이용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및 정보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의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장애인 정보화의 증진은 사회통합의 한 방편으로서 장애인이 스스로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사회 환경에 적응하게 하고,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 역시 장애인을 이용자로서 배려하도록 돕게 될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정보통신기기와 서비스를 장애인도 접근·이용할 수 있고, 장애인에게 정보통신기기와 특수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개발, 보급, 교육하며 비용을 보조해 주는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안내서나 음성서비스, 청각장애인에게 수화통역이나 자막방송을 제공해야 하므로 정부기관이나 공공성이 있는 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장애인용 사용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지기 전까지 최소한 대인적인 서비스를 통해 편의를 보장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중요한 점은 동 조항의 성격이 점진적 실현의 대상이 되는 사회권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즉각적인 실현의무를 부여하는가의 여부이다. 장애의 특성 때문에 비장애인과 달리 접근성은 장애인 인권증진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국가가



과도한 예산과 비용을 수반하지 않는 한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시킬 의무는 즉각적인 의무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즉, 합리적인 편의제공의 문제와 유사하게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접근성을 높이거나 장벽을 철폐하는 사업이 비용을 수반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는 그 사회의 가용자원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서비스와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마련되어있지 못하며 사회·경제적인 비용의 부담이 크고, 가용자원 및 기술 등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많기 때문에 국가의 점진적인 실천의무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규정될 수 있는 성격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그 해당국가의 즉각적인 의무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될 것인가는 그 국가의 가용자원과 장애인권의 현실 등 구체적인 비교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보인다.



## 제10조 생명권

당사국은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부여받았음을 재확인하고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1. 배 경

생명권은 비단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라면 어느 상황에서도, 예를 들어 국가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공공의 비상사태 시에도 그 적용을 제한할 수 없는 최고의 권리<sup>27)</sup>로서 어떠한 경우라도 협소한 의미로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권리이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로 인하여 비장애인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생명권의 위협을 경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은 출생 후 장애가 발견되어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자연재해 또는 전쟁 등의 위급 상황 시에도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거나 위협으로부터 피하는데 비장애인보다 어려움이 있으며, 그 때문에 구제조치에서 밀리거나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장애인도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천부적인 생명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장애인의 생명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동 조항이 규정되었다. 타의에 의한 생명의 박탈은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문제로서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하고 금지되어야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장애인의 생명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다.

27)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조: 1.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공의 비상사태의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비상사태의 존재가 공식으로 선포되어 있을 때에는 이 조약의 당사국은 당해 사태의 긴급성에 의하여 엄격히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 이 조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당해국의 국제법상의 여타 의무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며, 또한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또는 사회적 출신만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전항의 규정은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에 대한 위반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동 조항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생명권의 범주를 더욱 확장하여 자연재해, 무력 충돌 대치 상황, 외국군 주둔과 같은 위험 상황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에 대하여 동 조항이 아닌 별도의 조항에서 간결한 접근방식을 이용하여 긴급 및 위험 상황에서의 장애인 보호가 명시되어야 한다는데 합의가 이루어져 그 내용은 제외되고 제11조(위험상황 및 인도적 긴급사태)에 별도로 구성되었다.

## 2. 조문의 설명

### 가. 다른 조항과의 관계

- 제11조(위험상황 및 인도적 긴급사태): 특히 위험한 상황에서 생명이 위급하거나 구조가 필요할 경우 장애인들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위험에 방치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관련된 국제규범과 사용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 제1항<sup>28)</sup>에서는 생명권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예가 허용될 수 없는 최고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1948년 12월 10일의 UN총회에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제3조<sup>29)</sup>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권리협약 제6조 제1항<sup>30)</sup>은 아동의 생명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3. 내용 및 의의

배경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장애인도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생명을

28)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9)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30)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지키고 영위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장애인의 생존권 보장 및 이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만일 특정 국가가 장애인의 생명이 비장애인의 생명에 비해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간주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금지시킬 의무도 동 조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각국의 필요한 제반조치’에 포함됨으로 기존의 잘못된 법률이나 제도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생명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천부적인 권리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따라서 당사국은 장애인의 생명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생명권을 차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는 법률로써 유보될 수 없는 권리이다.



## 제11조 위험상황 및 인도적 긴급사태

당사국은 무력분쟁, 인도적 긴급사태 및 자연재해의 발생과 같은 위험상황에서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국제법상의 의무에 따라 장애인의 보호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1. 배 경

제10조(생명권)의 논의과정에서 다양한 위험상황에서 장애인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세부적인 규정이 존재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무력분쟁 및 인도적 긴급사태와 같은 위험상황에서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 본 조항이 별도로 마련되었다.

초기의 논의과정에서는 단지 ‘위험상황’이라는 명칭으로 규정되었으나 이후 인도적 긴급사태에 대한 위험 요소가 추가되어 현재의 조문 내용으로 수정되었다. 이는 자연재해나 각종 인명재해 등 보다 다양한 위험상황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안전보장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중동쪽 국가들은 동 조항과 전문에 ‘외국군의 주둔, 무력분쟁의 위험’을 추가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이에 대해 미국,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에서 반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제8차 회의에서 그 추가여부를 두고 찬반 투표가 실시되어 그 결과,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이스라엘, 일본, 호주 5개국의 반대와 일부 국가의 기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국가가 찬성하여, 최종적으로 동 조항에서는 열거되지 않는 대신 전문(u)호에 ‘무력분쟁과 외국군의 주둔 상황’으로 표현되어 협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정, 채택되었다.

### 2. 조문의 의미

#### 가. 용 어

- 인도적 긴급사태(humanitarian emergencies): 무력분쟁, 전염병, 기근, 자연재해 또는 기타 주요 위급상황 등 사람들의 건강, 안전, 안보 또는 복지를 위



협하는 일련의 사고를 의미한다.

#### 나. 다른 조항과의 관계

- 제10조(생명권): 동 조항의 모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제10조에서는 장애인의 생명권은 천부적 권리로 보장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전제로 특히 위험 상황 및 인도적 긴급사태에서 장애인의 생명 및 안전을 보호할 것을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다.

#### 다. 관련된 국제규범과 사용례

동 조항은 아동권리협약 제38조 제4항을 차용하였는데, 이는 무력분쟁 시 영향을 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배려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는 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무력분쟁에 있어서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인도법상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의 보호 및 배려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 내용 및 의의

전쟁이나 자연재해 발생과 같은 위험상황에서 장애인은 스스로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신체적·정신적·감각적 장애로 인해 방치될 위험성이 높은 장애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인권법에 따른 조치 마련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조항은 장애인이 동 조항에서 열거된 위험 또는 위급상황에서 장애를 이유로 치료 또는 구조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장애인에 대한 생명보호와 안전보장을 규정하고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각 당사국 정부는 동 조항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구체적으로 위험상황에서는 안전보장과 생명구조라는 즉각적인 의무를 발동시키고 평상시에서는 각 당사국 정부로 하여금 위험상황에서 장애인의 존재가 잊혀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나 시스템을 마련할 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제10조의 생명권이 ‘위험상황’이라는 환경에서 구체적으로 보장되는 방안이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본 조항에서 열거되고 있는 무력분쟁과 인도적 긴급사태 및 자연재해의 발생은 예시에 불과한 것으로서, 본 조항은 각종 위험상황을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위험하고 위급한 상황은 동 조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동 조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항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다른 위험상황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방적 개념이다.



## 제12조 법 앞의 평등

1. 당사국은 장애인이 모든 영역에서 법 앞에서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 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동등한 기초 위에서 법적 능력을 향유한다는 것을 인정 한다.
3. 당사국은 장애인이 그들의 법적능력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당사국은 법적능력의 행사와 관련한 모든 조치들이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 인권법에 따라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제도를 제공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보호 제도는, 법적 능력 행사와 관련된 조치들이 개인의 권리, 의지, 선호도를 존중하고, 이해관계의 상충과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개인의 상황에 비례하고 적합해야 하며, 가능한 최단기간 동안 적용되어야 하며, 권한을 지닌 독립적이고 공정한 국가기관이나 사법기구에 의해 정기적으로 검토 되도록 보장한다. 보호제도는 그러한 조치들이 개인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비례한다.
5.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국은 장애인의 재산 소유 또는 상속에 있어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의 재정적 사항들을 관리하고, 은행대출, 담보 및 기타 재무신용에 있어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장애인의 재산이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 1. 배 경

장애인의 법적권한은 본 협약에서 규정되어 있는 여러 권한 중에서도 핵심적인 권리로서 가장 논쟁이 많았던 조항이다. 동 조항은 법적인 의무 준수와 권리 향유의 주체인 한 사람으로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법 앞에서의 권리를 인정받고 보장받아야 함을 전제로 하여 마련되었다. 법적능력(legal capacity)은 본 협약에서도 조항별로 명시되어있는 개인의 존엄성, 개인의 자유와 안전, 착취·폭력·학대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결혼, 노동, 정치참여, 투표 등과 같은 장애인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법적인 권리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누려야 하는 법적권한의 범위



를 두고 법적권한을 제한적으로 보장하자는 의견과 비장애인과 평등한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되어 나타났다. 일부 국가에서는 금치산자 또는 정신장애인의 경우 법적권한이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적용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다. 만일 법적권한이 평등한 수준에서 보장될 경우 정신장애인의 법적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즉각적인 국내법의 개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동 조항을 수용하고 이행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예상되며 당사국들의 비준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능력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논란과는 별도로 법적능력에 대한 의미 해석을 일부국가에서 다르게 적용한다는 주석을 달자는 추가 제안도 있었다. 즉, 아랍, 중국, 러시아에서는 ‘법적능력’이라는 용어를 ‘법적능력의 행사’보다 ‘권리에 대한 법적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석추가제안에 대해 IDC와 같은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인의 법적권한을 제한하는 명목적인 보장에 그치는 표현으로서 본 협약의 목적과 정신에 위배된다고 비난하였다.

최종적으로 2006년 11월 29일자 의장 서안에 의하면, 초안검토위원회(Drafting Committee)에서의 논의 끝에 주석을 삭제하는 것에 대하여 대다수의 동의를 얻어 권리능력에 대한 주석은 달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법적능력에 대한 정확한 의미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장애인의 법적능력의 해석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권리능력에 대한 해석은 애매한 상태로 각 국가의 법률에 따라 규정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법적능력의 성격과 범주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듯이 장애인들의 법적능력의 행사를 위한 지원의 범위와 성격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 장애인들은 법적인 권리를 온전한 누리지 못하고 제약을 받거나 침해를 받는 사례들이 종종 있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 권한을 보장받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완전하고 동등한 법적 권리를 누리기 위하여 각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라 특별한 보조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점에 많은 국가들의 일반적인 동의가 있었다. 이러한 보조 지원은 다른 사람이 대신 법적 권한을 행사하거나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돕는 대리인(personal representative) 제도에 관하여, 대리인이 장애인의 의지에 상관없이 혹은 그에 반하여 법적 권한행사를 남용하거나 오용할 수 있는 위험의 소지가 있고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에 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 결국 제8차 회의에서의 논의 끝에 대리인 제도는 삭제되고 보호제도(safeguard)만 규정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 2. 조문의 설명

### 가. 용 어

- ‘법적능력(legal capacity)’: ‘법적 권리의 보유 능력’으로 볼 것인가 혹은 ‘행위능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언어적인 차이로 인한 해석상 논란이 있다.
  - 권리능력: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으로서 모든 사람은 천부적으로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가지고 이를 향유할 수 있다.
  - 행위능력: 단독적으로 완전·유효한 법률 행위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의미함. 그러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행위능력이 없다.
- 보호제도(safeguard): 동 조항 제4항에 규정된 보호제도는 장애인의 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 가족이나 타인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권리가 침해되거나 그 권한이 악용되는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 나. 다른 조항과의 관계

- 제13조(사법접근성): 장애인의 법적 권한이 보장되어야 사법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과 관련된 모든 법적절차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참여가 가능하다.



- 제17조(개인의 고유성 보호):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법 앞에서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장애인에 대한 권리침해 시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존엄성 보호가 보장될 수 있다.

#### 다. 관련된 국제규범과 사용례

동 조항에서 언급되는 ‘법적 권한’은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5조 제2항<sup>31)</sup>에서 차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의장은 여성차별철폐협약은 ‘법적능력(legal capacity)’이라는 용어를 이용하고 있으며 같은 항에서 ‘그 능력을 행사한다(exercise that capacity)’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의장은 ‘능력의 행사’가 ‘법적 권한의 행사(capacity to act)’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아 법적인 권리에 대한 행사보다는 법적 보유 능력의 의미로 해석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 3. 내용 및 의의

위 배경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장애인의 법적 능력을 인정하여 주는 것은 장애인 인권보장에서 지나쳐 갈 수 없는 기본적인고도 중대한 과제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적 능력을 인정해주는 문제는 그동안 각 국가마다 개별적으로 수립하고 유지해 왔던 거래와 공법적 행위를 비롯한 모든 법률관계의 기본 틀을 바꾸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나아가 관계 법률에서 그 법적능력을 선언한다 치더라도, 구체적인 문제로 자신의 참된 의사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정신지체 장애인이 어떻게 법적 능력을 제대로 행사하게 할 것이며, 그로 인한 부작용을 최대한 방지하고 그 의사를 존중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모색 또한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항에 표현된 추상적인 ‘법적능력(legal capacity)’이라는 조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가 가장 큰 논란이 된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의장은 본 협약은 가능한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며 ‘legal capacity’의 해석여부에

31) 당사국은 민사문제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법적 능력 및 동 능력을 행사할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국은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관리할 동등권을 여성에게 부여하여야 하며 법원과 법정의 절차상 모든 단계에서 여성을 동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있어 법적능력 또는 법적능력의 행사에 대한 개념정의는 개별국가의 법제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의장은 각국의 다양한 법체계를 본 협약에 표현된 내용 안에서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앞으로도 법적능력의 해석에 관해서는 많은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는 국제적으로, 개별 당사국마다 그 내부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조항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본 조항의 취지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법 앞에서의 평등은 법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행사하는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므로 즉각적인 실현 원칙이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법적능력이 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법적인 권한을 보유하는 것으로만 인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불분명한 면이 있다. 특히 법적능력에 대한 표기에 있어 본 협약에서도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용어와 동일하게 ‘법적능력’(legal capacity), ‘그 능력을 행사한다(exercise that capacity)’의 두 문구를 모두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법적 능력을 법적 권한의 행사가 아닌 법적 권한의 보유로 그 의미를 해석할지 아니면 법적 권리 행사까지 그 법적 능력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이 계속해서 제기될 것이다. 만일 법적 권리의 행사로 해석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과 같이 일부 국내법과 상치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동 조항에 대해 유보를 하거나 아니면 관련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법적 권리의 보유로 해석할 경우 정신장애인의 법적능력은 현재와 같이 제한적인 성격을 갖게 될 것이다.

동 조항에서는 위에서 잠시 언급되었듯이 법적능력 행사와 관련이 있는 입법 또는 조치들이 오용되지 않도록 보호제도(safeguard)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호제도가 장애인의 권리나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중립적이며, 장애인의 상황을 반영하며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 장애인의 법적권한 행사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동시에 보장하고 있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의 재산 소유 또는 상속에 관한 평등권이 보장되어 있어 동 조항에 언급되어있는 권리의 실현을 위한 노력들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 제13조 사법접근성

1. 당사국은 수사와 기타 예심단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장애인이 증인을 포함한 직·간접적인 참가자로서 효과적인 역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절차와 연령에 적합한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효과적으로 사법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의 효과적인 사법접근권의 보장을 돕기 위하여 경찰과 교도관을 포함한 사법행정에 종사하는 이들을 위한 적절한 훈련을 장려한다.

#### 1. 배 경

법 앞에서 장애인의 동등한 권리와 법적능력을 인정하면서 한편으로는 장애인에게 사법접근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상호모순이다. 사법 체계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요 장벽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단 물리적인 장벽뿐만이 아니라 모든 법적 절차상에서의 불충분한 편의의 제공도 그 하나이다. 이러한 사법절차상 장애를 제거해야 한다는 장애인계의 요구에 다수 당사국들이 동의하였고, 이를 위하여 당사국들은 모든 법적 절차에서 장애인의 실질적인 법적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특히 사법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담당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동 조항이 마련되었다. 특히 연령을 고려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장애아동에게도 사법 절차에 있어 동등한 기회의 제공과 권한이 부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조문의 설명

##### 가. 용 어

- 절차와 연령에 적합한 편의(procedural and age appropriate accommodations):  
절차와 연령에 적합한 편의란 구체적인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적합한 편의의 예를 들면 보조안내인,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 점자 문서, 큰활자체, 음성안내서비스와 청각장애인을 위



한 수화통역사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성인 장애인에 비해 혼자서 법적 절차를 밟기 어려운 장애아동과 장애노인을 위해서는 활동보조인이나 안내원을 지원하거나 여러 사법절차 및 각종 문서를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된 사법절차 안내문이나 안내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조치의 하나가 될 수 있다.

#### 나. 다른 조항과의 관계

- 제12조(법 앞의 평등): 사법접근권은 장애인의 법 앞에서 평등한 권리의 하나로서, 제13조는 모든 법적절차 및 해당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장애인의 접근권 및 지원서비스의 보장을 제12조보다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 제14조(개인의 자유와 안전): 제14조에서는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에 대하여 불법적이거나 정당하지 않은 침해가 있을 경우에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보장의 구체적 실현조치로서 제13조가 의미를 갖는다.

#### 다. 관련된 국제규범과 사용례

사법접근권의 보장에 대해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국제규범 또는 사용례는 아직 없다. 이는 장애인이 사법절차에 있어서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정도로 접근하기 어려웠음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 3. 내용 및 의의

동 조항은 법적능력과 보호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12조(법 앞의 평등)를 보충해 주는 조항이다. 제12조에서는 장애인이 법체계 속에서 자신을 대변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는 반면, 제13조에서는 법적 체계(법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구조적이고 개별적인 조치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당사국 정부가 법적 절차의 모든 과정 및 법률서비스의 이용에서 적극적으로 편의제공을 해주었을 때에만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참여가 보



장될 수 있으므로 제12조의 구체적인 실현에 대한 법적 보장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사법절차는 개인의 신체, 생명, 재산의 문제와 불가결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사법절차에서의 접근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한, 장애인의 법적 권리는 보장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당사국의 의무는 즉각적인 것이며 다만 구체적인 편의 제공의 규모, 교육 훈련의 정도 및 내용에 있어서는 각 당사국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유형 및 연령에 따라 장애인의 사법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편의시설에는 물리적인 시설 외에도 접근성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 정보 등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당사국은 장애인이 사법당국의 건물과 시설을 사용할 수 있고 접근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장애인들의 효과적인 사법접근권 보장에 대한 법무 관련 종사자 교육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 제14조 개인의 자유와 안전

1. 당사국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장애인에게 다음을 보장한다.
  - (a)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를 향유한다.
  - (b) 장애인의 자유가 불법적으로 또는 자의적으로 박탈당해서는 아니 되며, 모든 자유의 박탈은 법률에 따라야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의 존재로 자유가 박탈되어서는 아니 된다.
2. 당사국은, 일정한 절차를 통해 장애인의 자유가 박탈되는 경우,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국제인권법에 따라 보호 받으며, 합리적 편의제공을 포함한 이 협약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하는 대우를 받도록 보장한다.

## 1. 배 경

본 조항은 장애인 역시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가 있으며, 장애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적구속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절차에 있어 국제인권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국내법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구금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기존에 제안되었던 제1항 (b)호의 ‘각국의 국내법을 준수하여 장애인의 자유를 박탈한다’라는 문구는 장애시민단체의 요구에 의해 삭제되었다. 만일 동 문구가 삭제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 등에서와 같이 관계 당국이 심리적,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감금하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 이러한 자유의 박탈이 동 조항의 내용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비록 장애를 이유로 한 자유의 박탈이 정당화되지 않더라도 일부 장애인에게는 그러한 자유의 박탈이 정당한 것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 2. 조문의 설명

## 가. 용 어

- 자유(liberty)의 박탈: 동 조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자유의 박탈은 범죄 등으로 인한 법률적인 구금 등 법적으로 승인되고 인정된 유형의 박탈뿐만 아



나라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인 구금,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장애, 정신질환 혹은 지적장애, 부랑, 약물 중독, 교육적 목적 혹은 이민 통제 등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 자의적(arbitrary): ‘자의적’이라 함은 법률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본 협약의 규정, 의도 및 목적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모든 경우에 특정한 상황에서 타당한 것이어야 한다. 즉, ‘자의적’이라는 개념은 어떠한 조치가 법에 의하여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법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경우에는 시행된 조치는 자의적 조치로 간주된다.

#### 나. 다른 조항과의 관계

- 제12조(법 앞의 평등):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국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모든 법적 절차상에서 권리를 보장받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3조(사법접근성): 장애인의 연행 및 모든 구금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편의의 제공 및 사법 접근성의 보장은 장애인에 대한 당사국의 의무이며 장애인의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 제15조(고문이나 잔혹한 또는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취급 및 형벌로부터의 자유): 장애인이 고문을 받거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인 취급이나 처벌을 받아 자유와 안전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 당사국은 합리적 편의를 제공해야 하고, 그와 관련된 모든 절차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처우 받도록 해야 한다.

#### 다. 관련된 국제규범과 사용례

세계인권선언 제3조<sup>32)</sup>와 제9조<sup>33)</sup> 그리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sup>34)</sup>는 모든 사람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와 이러한 권리의 침

32)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33) 어느 누구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아니 한다

34) 1.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조치로서 체포된 사람에게 체포 시, 체포이유와 피의 사실을 통보하고 모든 체포, 재판 및 판결과정에서 합법적으로 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불법적인 체포 또는 억류의 희생자에게는 보상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3. 내용 및 의의

본 조항은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 보장에 관한 것으로서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자유로우며, 장애인에게 법적인 구속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제인권법에 의거하여 그 절차상 안전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즉,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를 방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발생한 차별적인 처우를 금지하는 것은 국가가 즉각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의무에 해당한다. 법적 구속이 이루어질 경우 장애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적절하고 합리적인 편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안전 조치 의무가 포함된 것은 법적 구속 절차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장애인을 처우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형식을 막론하고 연행 및 억류, 구금 하에 있는 장애인의 사법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장애인이 자신 의사에 반하여 체포되거나 구금된 경우 동 조항을 통해 장애인은 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사법접근권을 행사할 권한을 확인받게 된다. 또한 사법절차상에서 장애인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합리적인 편의의 제공은 최대한 가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체포된 사람은 누구든지 체포시에 체포이유를 통고받으며, 또한 그에 대한 피의 사실을 신속히 통고받는다.
3. 형사상의 죄를 범한 혐의로 체포되거나 억류된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거나 또는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 재판에 회부되는 사람을 억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석방은 재판 기타 사법적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출두 및 필요한 경우 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출두할 것이라는 보증을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4. 체포 또는 억류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이 그의 억류의 합법성을 지체 없이 결정하고, 그의 억류가 합법적이 아닌 경우에는 그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5. 불법적인 체포 또는 억류의 희생이 된 사람은 누구든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용자원을 활용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협약 문구의 성안과정에서 동 조항과 관련하여 특히 정신장애인의 강제시설수용에 관한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었는데, 최종적으로 비자발적 혹은 강제 수용시설 입소에 대한 명시나 언급은 모두 삭제되었다. 따라서 동 조항의 표현이 다소 애매하여 그 해석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나 본질적으로 동 조항에서는 법에 의한 구속이라 할지라도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닌 장애인의 의사 또는 의지에 반하는 자유-예를 들면, 이른바 공공안전을 이유로 하는 예방적 차원의 구금-의 박탈은 불법적이며, 법에 의한 구속이라 할지라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등의 적절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15조** 고문이나 잔혹한 또는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취급 및 형벌로부터의 자유

1.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한 또는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취급 및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의료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한다.
2. 당사국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장애인이 고문이나 잔혹한 또는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취급 및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효과적인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배 경**

장애여부와 관계없이 고문 등 비인도적인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인권이다. 장애인이 오랜 기간 경험해 온 비인도적인 처우 개선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동 조항이 마련되었고, 논의과정 중 동 조항의 내용이 여타 인권 조약에서 다루고 있는 고문 행위 금지보다 그 언급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를 반영하는 것으로 합의되어 현재와 같은 두 개의 항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장애인의 자발적인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의료적 또는 과학적 실험이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처우’에 포함되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는 실험 행위를 예방하고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7호에서도 당사자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과 관련하여 본인이 직접 동의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본 협약에 있어서는 특히 정신장애인이 본인이 직접 자발적인 선택과 의지에 따라 동의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해당된다.

**2. 조문의 설명****가. 용 어**

- 의료적 또는 과학적 실험(medical or scientific experimentation): 적절한 의료



적·물리적 치료가 아닌 의약품 개발, 특수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 나. 다른 조항과의 관계

- 제12조(법 앞의 평등):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권의 관점에서 법 앞에서의 권리가 보장되고 고문 등을 통해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 제13조(사법접근성): 제15조에서 언급된 고문 등을 통해 자유 침해 시 이를 시정하고 구제하기 위한 사법 절차상에서 사법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접근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 제14조(개인의 자유와 안전):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인 권리 침해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도록 한다.
- 제16조(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고문과 같은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로부터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7조(개인의 고유성 보호): 비자발적인 실험 등을 금지함으로써 장애인 고유의 신체적, 정신적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다. 관련된 국제규범과 사용례

동 조항의 제1항은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를 그대로 이용하였다.

제2항은 고문방지협약의 제2조 제1항 “당사국은 자기 나라 관할하의 영토 내에서 고문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효적인 입법·행정·사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에서 차용하였다.



### 3. 내용 및 의의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그리고 장애로 인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제약을 이유로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처우를 받으며 인권이 심하게 침해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또한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의료적인 손상과 질병으로 인해 비자발적인 의료실험 혹은 과학실험의 대상이 될 위험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분명한 인권침해이며 인권의 본성과 존엄성에 대한 위배이다. 따라서 동 조항을 통해 이러한 존엄성의 침해를 막고 어떠한 비인도적이고 고문이나 처우, 비자발적인 실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입법, 행정 등의 조치를 통해 보호하고 보장하는 것은 장애인의 존엄에 대한 존중 및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고문 등의 처우나 형벌에 대한 규정은 개인의 완전성과 존엄성의 보호를 목적을 하고 있으며 공공의 비상사태에서도 유예가 허용되지 않는다.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의 일반논평 7에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고문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 가능한 형법 규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고문 등을 통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므로 각 당사국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2조35)와 제7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동 조항은 자유권에 해당되는 권리로서, 장애를 이유로 하여 장애인에게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굴욕적인 처우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형벌에 있어 다

- 
- 35) 1. 본 조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조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2. 본 조약의 각 당사국은 현행의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에 의하여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 조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자국의 헌법상의 절차 및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3. 본 조약의 각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 (a) 이 조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에 대하여, 그러한 침해가 공무원 집행 중인 자에 의하여 자행된 것이라 할지라도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도록 확보할 것.
  - (b) 그러한 구제조치를 청구하는 개인에 대하여, 권한 있는 사법, 행정 또는 입법 당국 또는 당해 국가의 법률제도가 정하는 기타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그 권리가 결정될 것을 확보하고, 또한 사법적 구제조치의 가능성을 발전시킬 것.
  - (c) 그러한 구제조치가 허용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이 이를 집행할 것을 확보할 것.



른 사람들과 차별적이거나,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처우, 형벌이 있게 될 경우 이에 대한 구제조치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제16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1. 당사국은 성별에 기초한 요소를 포함하여, 가정 내외에서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특히 장애인과 그 가족들 그리고 개호인을 위하여 착취, 폭력 및 학대의 방지, 인식 그리고 사례보고에 대한 정보와 교육의 제공을 포함한 적절한 형태의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지원 및 보조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당사국은 연령, 성별 그리고 장애를 고려한 보호 서비스를 보장한다.
3.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기관이 장애인을 위해 고안된 모든 시설과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점검할 것을 보장한다.
4. 당사국은 보호 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의 피해자가 된 장애인의 신체적, 인지적 및 심리적 회복, 재활 그리고 사회 재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회복과 재통합은 인간의 건강, 복지, 자아존중, 존엄성 그리고 자율성을 증진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성별과 연령에 따른 특별한 욕구를 고려한다.
5.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한 착취, 폭력 및 학대의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하며 필요한 경우, 기소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여성과 아동에 중점을 둔 입법 및 정책을 포함하여 효과적인 입법과 정책을 마련한다.

#### 1. 배 경

장애인은 가정, 학교, 직장, 장애인 시설 등에서 여러 유형의 폭력을 경험해 왔으며, 특히 여성장애인과 장애아동이 폭력의 위협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장애인에게는 특별히 다양한 영역에서 더 심하게 일어나는 폭력문제를 해결해야 할 중요성에 대하여 공감대가 형성되어 동 조항이 마련되었다. 구성에 관하여는 아동권리협약 제19조 제1항에 나와 있는 다양한 폭력과 착취의 형태를 열거하는 방식을 따르자는 의견이 지지를 받아 애초에는 열거적 성



격의 조항을 만드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보다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내용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위하여 바람직하다는 제안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폭력에 대한 예시들을 삭제하고 ‘모든 유형의 착취, 폭력, 학대’로 명시하여 착취 및 폭력 등의 범위를 보다 넓게 규정하는 방식이 채택되었다. 또한 여성과 아동을 고려하여 모든 유형의 착취 등에서 ‘성별에 기초한 요소를 포함하여’라는 문구와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이라는 문구가 추가됨으로써 장애를 가진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게 되었다.

## 2. 조문의 설명

### 가. 용 어

- **개호인(caregiver):** 개호인은 각 국가의 문화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자신을 스스로 완전히 돌보는데 제약이 따르는 장애인 혹은 아동의 배우자, 부모, 자녀, 친척, 친구 또는 이웃으로서 무상으로 이러한 제약이 있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반면 일부국가에서는 보조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고용된 유료의 전문적인 보호서비스 제공자를 의미하기도 한다.
- **착 취(exploitation):** 사전적인 의미로는 생산수단의 소유자가 노동자를 생활 유지에 필요한 노동시간 이상으로 지나치게 일을 시켜서 노동생산물 또는 성과를 취득하는 일을 의미한다.
- **폭 력(violence):** 폭력은 신체적, 정신적 혹은 성적 위해나 고통, 그러한 행위를 하겠다는 위협, 강요 및 기타 자유의 박탈을 가하는 행위들을 포함한다.
- **학 대(abuse):** 지속적으로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성적 학대가 포함된다.

### 나. 다른 조항과의 관계



- 전문 (q)호: 장애를 가진 여성과 소녀들이 가정 내외에서의 폭력, 상해 또는 학대, 유기 또는 유기적 대우, 폭사 또는 착취 등에 더 많이 노출될 위험이 있음을 상기하고 있다.
- 제6조(여성장애인)와 제7조(장애아동)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에 관련하여서는 병렬접근방식(Twin Track Approach)을 사용하고 있다. 동 조항은 그 방식에 따라 폭력, 착취 및 학대가 여성과 아동에게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로 선정되어 별도의 독립된 조항으로 수립되게 되었다.

#### 다. 관련된 국제규범과 사용례

아동권리협약 제19조<sup>36)</sup>에서 동 조항과 유사한 규정을 하고 있다. 제1항에서는 아동 양육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보호자로부터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학대, 유기, 성적 학대 등 구체적인 폭력의 사례를 열거하면서 이러한 폭력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제도와 사법적 개입, 그리고 아동 및 아동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 계획의 수립을 명시하고 있다.

### 3. 내용 및 의의

장애인의 성별이나 장애를 이유로 한 폭력은 일반 국제법 또는 국제인권조약들에 명시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향유를 방해하거나 무효화시키는 것으로서 이것은 엄연한 차별에 해당된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일반권고 제19호에서는 이러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a)생명권, (b)고문당하지 않을 권리, 잔혹한 비인도적

36)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폭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제도는 아동 및 아동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은 물론,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 사례를 다른 형태로 방지하거나 확인·보고·조회·조사·처리 및 추적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혹은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 (c)국제적 또는 국내적 무력 충돌 시 인도적 규범에 따라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d)인간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 받을 권리, (e)법률에 따라 동등한 보로를 받을 권리, (f)가족 내에서 평등할 권리, (g)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있어서 획득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보장받을 권리, (h)정당하고 우호적인 노동 조건을 보장받을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다양한 영역에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폭력 등에 대해 각 당사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폭력, 착취 및 학대 발생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폭력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보호서비스, 시설 및 프로그램 감시, 피해자 재활 및 사회재통합 프로그램, 관련 입법 및 정책 마련 등 다양한 조치들의 사례를 규정하고 있어 국가의 의무가 한층 더 강화되었다.

특히, 이와 같은 대책 마련에 있어 장애여성과 장애소녀를 포함한 장애아동은 성적, 물리적 폭력과 학대의 위험에 더 많이 그리고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이들이 접근가능한 적절한 형태의 보호서비스를 개발하고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별도로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각 당사국이 대책마련을 하도록 명시했다는 것 역시 중요한 의의라 할 수 있다.

제2항에서는 폭력과 착취 등을 예방하는데 있어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가족과 개호인에게도 폭력과 학대의 사례를 인식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데 상당한 지지가 있어 가족과 개호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특히 연령, 성별, 장애유형 및 정도에 민감한 보호서비스를 각국이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을 통해 취약계층에 있는 장애인들의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더욱 강조하여 보장하게 되었다.

제3항에서는 폭력예방을 위해 어떠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대신 일반적이고 폭넓은 용어를 사용하는데 동의가 있어 ‘all facilities and programmes’로 확정되었다. 또한 제4항과 제5항에서도 모든 폭력에 대한 재활 또는 관련 정책에 있어서 성별과 연령별 욕구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특히 아동과 여성에 대한 배려가 많은 부분 이루어졌다.

장애아동과 관련하여, IDC는 장애아동이 성적, 신체적 폭력으로부터 상당히



취약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현재 극소수의 정부만이 장애아동이 접근 가능한 적절한 형태의 아동보호서비스 개발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전화서비스 및 안전 프로그램 등은 대다수가 장애아동과는 무관하며, 이러한 서비스들은 자신의 권리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장애아동은 학대나 폭력 등의 상황에 대해 대응할 권리가 있다는 점과 이에 대한 관련 지식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반박하였다. 이와 함께 동 조항에서 장애인이 경험하는 폭력 문제 해결의 중요성은 언급하고 있지만 아동에 대한 부분은 거론하고 있지 않아 장애아동에게 접근 가능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서비스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청소년 및 아동에게 적용되어야 하고 모든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결론적으로 동 조항은 모든 유형의 폭력, 착취 및 학대로부터 법을 통해 장애인이 적절하게 보호받고 장애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유보되거나 유예되기 어려운 조항으로서, 본 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각 당사국들은 피해자들을 위한 적절한 보호와 지원책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된다.



## 제17조 개인의 고유성 보호

모든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고유성에 대해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 1. 배 경

제12조(법 앞의 평등)에서 장애인의 법적능력에 대한 개념 정의, 용어선택 그리고 용어의 포함여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는 삭제된 동 조항의 제2항에서 제4항에 이르기까지 정신장애인에 대한 비자발적인 치료의 제한과 보호의 문제에 대해 당사국간 그리고 일부 당사국과 장애시민단체 간에 많은 논쟁이 있었다. 제7차 회의 이후 의장은 네 개의 항으로 구성된 안을 제시하였으나 반복된 논란이 지속되자 제8차 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일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조문을 제시하였다. 비록 일부 국가와 장애인 관련 시민단체의 반발이 있었으나 본 조항은 모든 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최종적으로 채택되었다.

현재의 조문으로 확정되기 이전에 일부 정부 대표자들과 IDC는 장애인에게 비자발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고문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동 조항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 제15조(고문이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및 형벌로부터의 자유)에 포함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기존에 제시되었던 안<sup>37)</sup>에 대한 제7차 회의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37) 1. 당사국들은 만민평등에 기초를 두고 장애인의 고유성을 보호해야 한다.
2. 당사국들은 실질적 또는 인지되는 손상을 교정, 개선 또는 완화하는 목적으로 장애인이 강제적으로 개입 당하거나 시설수용 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해야만 한다.
3. 원치 않는 개입을 포함하여 의료적 응급상황이나 공중보건에 위험을 끼치는 상황의 경우,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4. 당사국들은 장애인이 강제적 치료를 받는 경우 다음을 보장한다.
  - (a)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강제적 치료를 최소화한다.
  - (b) 법에 의해 만들어진 절차와 적합한 법적 보호 적용에 의해서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시행되어야 한다.
  - (c) 가능한 최소한의 제한적인 상황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관련된 개인의 입장이 가장 잘 반영 되도록 완전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1항에서는 각 당사국 정부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고유성을 보호하는 긍정적인 의무사항을 분명히 규정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신체적, 정신적 고유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자는 주장과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고유성’으로 규정하자는 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제2항과 관련하여 일부 정부 대표자들은 본 항에 불임, 생식기관 제거 및 낙태와 같은 특정한 형태의 의료행위들을 목록화하여 열거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이미 다른 조항에서 언급되어 있으므로 본 항에 포함시킬 필요성은 없다는 이의제기가 있어 반영되지 못하였다.

제3, 4항은 비자발적인 치료의 포함여부를 두고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이러한 규정이 장애인에 대한 강제적인 개입을 정 당화하고 고유성을 침해하며 이미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상황에서 장애인의 의사에 따른 동의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다. 특히 IDC는 본 항을 통해 비자발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규범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를 들면, 동의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응급상황에서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방식 및 절차를 통한 의료행위를 실시해야 한다는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 2. 조문의 설명

### 가. 용 어

-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고유성(his or her physical and mental integrity):** 개인이 인격의 주체로서 자신이 갖고 있는 신체적 및 정신적 능력과 상태를 변형하거나,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개인 고유의 모습으로서 인정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신 본연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대한 존중은 개인의 고유성(integrity)이라 할 수 있다.
- **고유성(integrity):**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타인이 이를

---

(d) 개인에게 적절하여야 하고, 치료는 받는 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재정적인 비용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존중해야 함을 의미한다.

#### 나. 다른 조항과의 관계

- 제12조(법 앞의 평등):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대한 존엄성을 보장받기 때문에 법 앞에서도 동일하게 평등권이 인정되고 보장된다.
- 제14조(개인의 자유와 안전): 장애인 본연의 존엄성을 존중함으로써 함부로 개인의 자유와 안전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 제15조(고문이나 잔혹한 또는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취급 및 형벌로부터의 자유): 교정, 실질적 혹은 인지적 손상 및 장애의 증상 개선 및 경감을 위한 강제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은 동 조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제16조(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개개인의 신체, 정신적 상태에 대한 존엄성이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되지 못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 다. 관련된 국제규범과 사용례

미주인권협약(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제5조(인도적 처우에 대한 권리) 제1항은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야 할 고유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인간은 존중받을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고유성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sup>38)</sup>

### 3. 내용 및 의의

개인의 고유성은 인권의 근본적인 가치이며, 본 조항은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

38) 1. Every person has the right to have his physical, mental, and moral integrity respected.



간적이고 모욕적인 대우와 차별의 예방에 대한 필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다만 본 조항의 수립배경에서 설명되어진 바와 같이 여러 차례의 논의끝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장애인 본연의 신체적, 정신적 고유성에 대해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선언적 문구는 포괄적으로 장애인의 고유성을 규정하여 논란의 여지는 제거되었으나 일면 애매하게 적용 및 해석이 되는 조항으로 남게 되었다. 결국 동 조항은 개인의 고유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이 되었으며, 고유성이 침해될 시에 각 당사국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 제18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

당사국은 장애인에게 다음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이주의 자유와 거주 및 국적 선택의 자유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한다.

- (a) 국적을 취득하거나 변경할 권리를 가지며, 장애를 이유로 또는 자의적으로 국적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 (b) 장애를 이유로 하여 국적 관련 서류 또는 기타 신원증명 서류를 획득·소유·이용하고 또는 이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는 이민 절차와 같은 관련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 (c)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라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
  - (d) 자의적으로 또는 장애를 이유로 자국에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는다.
2. 장애아동은 출생 후 곧 등록이 되어야 하고 출생 후 이름을 가질 권리, 국적을 취득할 권리, 그리고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그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1. 배 경

본 조항은, 장애인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다거나 현재 국적을 소유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서 정착하는 것에 대해 기존의 거주지나 국가 또는 이주한 지역이나 국가에서 장애를 이유로 그 입국을 불허하거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일반적인 합의를 토대로 마련되었다. 동 조항의 내용 중 개인 거주지에 대한 선택의 권리는 거주지와 동거인의 결정에 대한 기회를 보장하는 제19조(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통합) (a)호와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일면 있어 조항간 통합이 제안되기도 하였으나 궁극적으로 제18조는 장애인의 거주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되었다.

## 2. 조문의 설명

## 가. 용 어

이주 및 국적의 자유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은 제2조(정의)에 제시된 다양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그 적용범위를 규정할 수 있다.

#### 나. 다른 조항과의 관계

본 조항에서의 개인의 거주지 선택권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인 거주지 및 동거인 결정권을 보장하는 다음의 제19조(a)호와 관련이 있다.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거주, 거주지 및 동거인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형태에서 살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 다. 관련된 국제규범과 사용례

본 조항과 관련하여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sup>39)</sup>는 한 국가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 거주 및 이주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등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이주의 권리를 박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권리협약 제7조<sup>40)</sup>는 아동의 출생신고, 성명획득, 국적취득에 대한 권리, 부모로부터 양육 받을 권리,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 3. 내용 및 의의

본 조항은 거주 이전의 자유와 거주지 선택의 권리를 국적 소지 및 변경의 권

- 
- 39) 1. 합법적으로 한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영역 내에서 이동의 자유 및 거주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  
 3. 상기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공보건 또는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또한 이 조약에서 인정되는 기타 권리와 양립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4. 어느 누구도 자국에 돌아올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40)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이 분야의 국내법 및 관련 국제문서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실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권리가 실행되지 아니하여 아동이 무국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리, 아동의 출생 후 즉각적인 출생신고 의무와 결합시키고 있다. 이러한 권리의 보장과 결합은 거주지역과 국적에 대한 장애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자신이 거주하고자 하는 곳에서 자유로이 살 수 있는 선택의 자유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또는 자국 내에서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보장하고 사회통합의 근간을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거주 이전의 권리행사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동등한 접근성, 즉, 이민 절차와 같은 문서 작성 및 절차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어 거주 이전의 자유가 해외여행 및 이민의 경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출생과 더불어 누구나 가지는 이름과 국적을 장애를 이유로 갖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임을 분명히 하면서 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각국 정부가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한 것은 장애인을 하나의 중요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그러한 권리를 온전히 인정해야 하는 당위성을 입증한 것이다.

장애아동의 이주 및 국적의 자유와 관련하여,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영·유아들의 출생등록, 이름, 국적 취득 등에 대한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장애아동의 이주 및 국적의 자유 보장이 명시되었다. 아동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의 장애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거주지 이전, 국적 취득 및 변경의 자유가 있으므로 장애를 근거로 한 장애인에 대한 국적 및 이주의 권리 박탈 또는 권리행사의 침해는 명백히 위법으로 간주된다.

장애인의 이주 및 국적에 대한 권리는 자유권의 한 분야로서 당사국은 이를 보장하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해야 한다. 그 예로 장애아동의 출생신고, 이민 절차, 거주지 선택에 대한 자격 부여 등에 대해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비장애인과의 동등하게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19조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 통합

이 협약의 당사국은 다음에 대한 보장을 포함하여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선택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고, 장애인의 이러한 권리와 지역사회의 완전한 통합 및 참여의 완전한 향유를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a)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거주, 거주지 및 동거인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형태에서 살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 (b) 장애인은 지역사회 내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 또는 격리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개인적인 지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정 내, 거주지, 그리고 기타 지역사회 지원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 (c) 대중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설은 동등한 기초 위에서 이용 가능해야 하며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해야 한다.

### 1. 배 경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자립적인 삶은 탈시설화<sup>41)</sup>, 정상화<sup>42)</sup> 등과 함께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하는 장애인 복지 모형의 하나이며 장애인 인권회복의 중요한 이념이다. 자립생활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모든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장애인 스스로의 선택과 판단에 의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활동을 포함한 모든 생활이 가능한 경우 진정한 자립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논쟁이 되었던 것은 자립생활이 주로 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보편화할 경우 다양한 장애유형의 특성과 중증 정도를 간과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IDC는 두문(*chapeau*)<sup>43)</sup>에서 자립이란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부정

41) 탈시설화란 사회복지시설 내 장애인의 재활, 사회복귀, 자립생활을 위하여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시설과 지역사회에서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두된 이념을 말한다.

42) 정상화란 시설보호에 반대하면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생활환경, 생활패턴, 생활형태와 리듬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이념이다. 즉, 장애를 가진 사람도 개인의 성장이나 발달과정에서의 경험이 존중되어야 하며, 인생주기에서 누려야 하는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3) 국제조약에서는 개별조항들 앞에 항이나 호 등의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도입문 또는 서문(introductory clause or paragraph)을 흔히 프랑스어로 ‘모자’(cap 또는 hat)를 의미하는 *chapeau*라고 부른다. 본 해설집에서는 前文(preamble)과 구별하기 위하여 頭文으로 표기하였다.



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자립적으로 생활을 한다는 것으로 활동보조서비스 등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증 정신장애인, 시·청각장애인에겐 완전한 자립생활이 불가능하다. 이는 그동안의 자립생활 이론 및 정책이 장애인의 보편성을 반영하는데 무리가 있음을 보여준 실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대신 ‘자립적인 생활(living independently)’이라는 용어로 동 조항의 명칭이 수정되었다.

## 2. 조문의 설명

### 가. 용어

- 자립적인 생활(living independently): independent living이라는 문구와 관련하여 본 용어가 각 국가의 문화적 규범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가족과 분리되고 지원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식의 의미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립생활이라는 용어의 영어표기는 ‘living independently’로 동의를 얻었다. 장애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때 그 의미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 나. 다른 조항과의 관계

- 전문 (n)호: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 장애인 개인의 자율과 자립의 중요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자립, 자율, 사회참여, 사회통합은 일반원칙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 제18조(이주 및 국적의 자유): 장애인의 거주지 선택에 관한 권리와 마찬가지로 거주지 이전 및 국적의 변경에 대한 자유도 인정된다.

### 다. 관련된 국제규범과 사용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제1항은 “합법적으로 어느 국가



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영역 내에서 이동의 자유 및 거주지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이주의 자유와 함께 거주지 선택의 자유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기회평등에 관한 표준규칙’ 규칙4(지원 서비스)<sup>44)</sup>에서는 장애인들의 자립적인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보조서비스 제공과 지원서비스 개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보장구와 활동보조 및 수화통역서비스가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보조서비스, 장비, 장비의 개발 등에 대한 접근성도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을 하고 있다. 이는 본 협약의 제9조(접근성), 제20조(개인의 이동)와도 관련이 있는 사용례이다.

### 3. 내용 및 의의

자신이 살 곳을 정하고, 그곳이 속한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실현 방안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자신의 거주지에 대한 통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여 왔다. 그러나 장애인도 자신이 살고자 하는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제18조(이주 및 국적

- 
- 44) 당사국들은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자립정도를 높이고 장애인들의 권리행사를 돕기 위해 장애인을 위한 보장구를 포함한 지원서비스 개발 및 제공을 보장해야 한다.
1. 기회평등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서 장애인의 욕구에 따라 당사국은 보장구, 장비, 활동보조 및 통역 서비스의 제공을 보장해야 한다.
  2. 당사국들은 보장구 및 장비의 개발, 생산, 분배와 이러한 보장구 및 장비에 관한 지식의 보급을 지원해야 한다.
  3.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기술적인 노하우가 이용되어야만 한다. 고도의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보장구 및 장비의 기준 및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 그러한 첨단기술이 모두 사용되어야 한다. 가능한 지역사회의 자원과 제조설비를 사용하면서 간단하고 저렴한 장치의 개발과 생산을 유도하는 것은 중요하다. 장애인들도 그러한 장치 생산에 참여할 수 있다.
  4. 당사국들은 보장구가 필요한 모든 장애인들이 적절하게 접근성-재정적인 접근성을 포함한 -이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즉, 보장구 및 장비는 무료 혹은 저가로 장애인 또는 그 가족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5. 보장구 및 장비의 제공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에 있어 당사국들은 보장구 및 장비의 디자인, 내구성, 연령적합성과 관련하여 장애를 가진 여자아이와 남자아이들의 특수한 필요조건들을 고려해야 한다.
  6. 당사국들은 특히 중증 그리고 다중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활동보조프로그램 및 통역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한 프로그램들은 집, 직장, 학교, 레저활동시간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의 참여수준을 증가시킬 것이다.
  7. 활동보조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의 제공방식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의 자유)에서 언급된 것처럼 자신이 살고자 하는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장애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삶의 조건과 생활양식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향유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동 조항의 취지이다. 따라서 자율성과 자기결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동 조항의 목적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본 조항 두문(chapeau)에서 ‘통합(inclusion)’과 ‘참여(participation)’의 단어를 모두 포함하는 것에 대해 일반적인 지지가 있었으며, 또한 세부 각호를 통하여 당사국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들을 열거하였는데 장애인이 ‘특별한 주거시설’에 살지 않아도 된다는 표현을 통해 장애인은 여러 가지 시설입소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며 자신이 원하는 주거형태에서 원하는 사람과 살 권리가 있다는 것과 국가가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의 시설입소로 이어지는 장애인 정책으로부터 장애인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에 통합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장애인 정책을 변화시킬 것을 요구한다. 우리사회의 현실을 보면, 많은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에 대해 적합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해 많은 장애인들이 여전히 수용시설에서 살아가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같은 지역에 장애인이 거주하는 것을 반대하고 장애인과의 교류를 거부하는 상황들을 감안할 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선택권을 가진 상태에서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지역주민들과 통합할 수 있도록 각 당사국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동 조항의 취지는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장애인이 거주자 및 동거인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살 권리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그러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와 관련하여 장애인의 자율적인 생활과 지역사회로의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격리 또는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별지원 서비스 제공, 예를 들어 활동보조인 서비스제도와 같은 프로그램은 그 사회의 최대가용자원의 한계를 고려한 점진적 실현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며, 본 조항은 장애인의 각기 다른 욕구를 고려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반영했었는데 그 의의가 있다.



## 제20조 개인의 이동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최대한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개인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 (a) 장애인이 선택한 방식과 시기에, 그리고 적정한 비용으로 장애인의 이동을 촉진
- (b) 양질의 이동보조기구, 보장구, 보조기술 그리고 여러 형태의 현장지원과 매개체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및 이를 적정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촉진
- (c) 장애인 및 이들과 같이 일하는 전문 담당자들을 위한 이동 기술에 대한 훈련을 제공
- (d) 이동보조기구, 보장구 및 보조기술을 생산하는 주체들이 모든 측면에서 장애인의 이동성을 고려하도록 장려

### 1. 배 경

이동권은 제6조(여성장애인), 제19조(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통합)에 이어 한국이 제안한 조항으로서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동성은 접근성의 한 분야로 인식되기 때문에 제9조(접근성)와 동 조항을 통합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환경에 접근 가능하다는 접근성과 장애인 개인이 움직여서 이동가능하다는 이동성은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조항으로 유지 하자는 방향으로 많은 지지가 있었다. 또한 두 조항 내용에 중복이 없어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동 조항을 간략하게 유지하여 제9조에 없는 요소인 이동성에 대하여 동 조항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일부 국가에서는 제18조(이주 및 국적의 자유)와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통합 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이주의 자유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로서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다수의 국가들이 합의하였다. 또한 동 조항에서의 이동(mobility)은 본 협약의 제18조(이주 및 국적의 자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movement)과 그 의미가 다르며, ‘movement’는 ‘이동’보다는 ‘이주’의 의미가 더 강하다. 따라서 동 조항은 여타의 관련 조항과 통합되지 않고 장애인의 개인적 이동을 다루는 조치들을 규정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 2. 조문의 설명

### 가. 용어

- **현장지원(live assistance):** 장애인의 곁에서 바로 보조지원서비스가 제공되는 활동보조인, 낭독인 등의 인적지원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 등 동물지원을 포함하는 용어이다.
- **매개체(intermediaries):** 보조하는 사람이라기보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사와 같이 특별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중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 또는 수단을 의미한다.
- **이동보조기구(mobility aids):** 휠체어, 목발 등과 같이 장애인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도록 보조해주는 기구를 말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더욱 포괄적인 개념인 ‘재활보조기구’는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과 보완 및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 **보조기술(assistive technology):** 장애인의 모든 생활영역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사용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이다. 예를 들어, 보조공학에 의한 특수한 기계 및 장치를 통해 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작업 등을 최대한 자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을 의미한다.

### 나. 다른 조항과의 관계

- **제9조(접근성):** 이동성은 접근성의 하나로 동 조항에서는 이동성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에서는 이동성을 제외한 물리적 환경, 교통수단, 정보 및 의사소통 등에 대한 접근성을 명시하고 있다.
- **제18조(이주 및 국적의 자유):** 이주는 거주지 선택과 이동에 관한 개념이며, 이동은 개개인의 움직임에 관한 것이므로 이주와 이동은 그 의미의 해석과 관련 조치가 다르게 규정된다.



### 다. 관련된 국제규범과 사용례

동 조항의 (b)호와 관련하여 ‘장애인의 기회평등에 관한 표준규칙’ 규칙4(지원 서비스)에서는 보장구와 활동보조서비스를 포함한 장애인들의 자립적인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보조서비스 제공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칙4는 제9조(접근성), 제19조(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통합)와도 관련이 있다. 구체적인 장애인 기회평등 표준규칙 규칙4(지원 서비스) 조문의 내용은 제19조(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통합)에 제시되어 있다.

### 3. 내용 및 의의

본 협약 제9조의 접근성과 동 조항의 이동성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접근성은 환경적인 상태를 의미하여, 이동성은 개인적인 이동을 의미한다. 즉 이동성은 광범위한 의미의 접근성에서 분리된 개인의 물리적 이동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 구성에 있어서는 최대한 독립적으로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도록 각 당사국들이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동 조항은 예시적 규정으로서 단순히 그 규정에 언급되어 있는 조치뿐만 아니라 여타의 이동성 보장을 위한 조치들도 취해야 한다.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은 그 옆에서 즉시 현장지원이 가능한 인적지원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 등 각종 동물의 지원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본 조항은 당사국에게 장애인의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들을 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이행 의무를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조치’라는 부분이 각 당사국 정부의 이행의무는 인정하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당사국들은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장애인들의 이동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되 부족한 사회적·경제적 자원, 기술 등의 제약이 있는 경우, 동 조항의 이행을 위한 점진적이며, 지속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21조 의견·표현 및 정보접근의 자유

당사국은 이 협약 제2조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장애인,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자신이 선택한 모든 의사소통의 방법을 통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 의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a) 대중을 위한 정보를 다양한 장애유형에 적합하게 접근 가능한 형태 및 기술을 통해 적절한 방법으로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장애인에게 제공할 것
- (b) 공식적인 교류에 있어 수화, 점자, 보완적이고 대안적인 의사소통 그리고 장애인의 선택에 의한 기타 모든 접근 가능한 수단, 방법, 형태를 사용하도록 수용하고 촉진할 것
- (c) 인터넷을 포함해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주체가 장애인을 위한 접근 및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촉구할 것
- (d)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하여 대중매체에게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만들도록 권장할 것
- (e) 수화사용을 인정하고 증진할 것

### 1. 배 경

자신의 견해와 느낌을 표현하는 것은 중요한 의사소통 방법의 하나이다. 특히 시각, 청각, 언어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은 의사표현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합의에 따라 동 조항이 마련되었다. 장애인은 다양한 의사표현 방법 중 자신이 선택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의사와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의사소통 수단의 다양성이 먼저 인정되어야 한다.

세부 각호별 논의를 살펴보면, 정부에 불합리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일반 대중들에게 제공되어 가장 널리 이용되는 공식적인 자료를 장애인들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a)호에 반영하였다. (b)호는 다양한 형태의 의사소통 수단의 사용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었다. (c), (d)호에서는 민간부문이나 공공방송 등에서 장애인이 의사 및 표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인터넷과 같은 정보접근성 이슈와 관련하여 장애시민단체에서는 (c), (d)호가 제9조(접근성)에서 다루어져야하고, 동 조항은 표현과 의사의 자유 이슈에 초점



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e)호는 수화가 청각 장애인들의 정보, 의사소통, 서비스, 참여, 교육 등에의 접근성을 위한 언어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도록 포함되었다. IDC는 동 호에서 점자를 시각장애인용 공식 인쇄 매체로 인정할 것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수화의 사용에 대해서만 규정 되었다.

## 2. 조문의 설명

### 가. 용 어

- 장애인 선택한 의사소통(communications of own choice):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맞게 자율적으로 의사소통 방식을 선택하여 자유로이 의견이나 표현을 전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장애인의 자기 선택권과 자율성, 다양성을 존중하고 있는 개념이라 볼 수 있다.

### 나. 다른 조항과의 관계

- 제2조(정의): 정의 조항에서 규정된 의사소통의 정의<sup>45)</sup>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제21조에서는 다양한 의사소통방식에 대한 나열을 하지 않고 있다.
- 제9조(접근성): 2항의 (f)~(h)호<sup>46)</sup>에서 정보접근성과 정보 및 의사소통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 다. 관련된 국제규범과 사용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sup>47)</sup>에서는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

45) “의사소통”은 언어, 텍스트의 표시, 점자, 촉각을 통한 의사소통, 대형 인쇄, 접근 가능한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을 포함한 서면·음성·쉬운 언어·낭독인·확장적이고 대안적 방식, 수단 및 형식의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접근 가능한 멀티미디어를 포함한다.

46) (f)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을 위한 기타 적절한 형태의 지원과 보조를 촉진

(g) 장애인에게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및 체계로의 접근성을 촉진

(h) 초기단계에서 접근 가능한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및 체계를 고안, 개발, 생산 및 보급하는 것을 촉진하여 이러한 기술 및 체계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함.

47)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고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권리와 다양한 형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예외적 규정으로 타인의 권리나 국가 안보 혹은 공공질서를 보호할 경우에는 의견 및 표현의 자유에 제약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이 중에서 일부 유사한 표현을 차용하였다.

### 3. 내용 및 의의

본 조항에서는 장애인의 표현의 자유 및 본인이 선택한 의사소통 수단을 통한 정보검색, 정보 수집 및 배포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의사소통의 수단에 관해서는 본 협약에서는 제2조(정의)에서 이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여 수화, 점자, 대안적인 의사소통, 그리고 기타 형태의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 열거하고 있다. 이때 장애인은 자신의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모든 접근 가능한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정보와 의견을 공유, 전달, 습득할 수 있다.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밝히거나 의사를 전달하고 표현하는 것은 주체적인 의견 제시 및 정보의 입수와 전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일부 장애인들은 그들만의 언어로 의사소통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동 조항에서 장애인들의 다양한 의사소통의 형태를 인정한 것은 다양한 방식의 의사표현의 권리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필요한 정보를 얻고 공유하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촉진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당사국의 의무 역시 즉각적이면서도 점진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

-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3.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 (b)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다. 예를 들어,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통일적인 시스템과 형식을 도입한다면 정부는 대부분의 정보를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제공할 수 있으며, 접근 가능한 정보 제작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어느 부문에서 정부의 조치의무가 즉각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인지를 보려면 그 사회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에 장애를 겪는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의사소통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당사국 정부의 즉각적 의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 제22조 사생활 존중

1. 어떠한 장애인도 거주지나 주거형태와 상관없이 개인의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 및 기타 형태의 의사소통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또는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그들의 명예와 신용에 대해 불법적인 비난을 당하지 않는다. 장애인은 그러한 간섭이나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장애인의 사생활, 건강 및 재화에 대한 정보를 보호한다.

## 1. 배 경

사생활 역시 기본적 인권의 문제로 확립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를 보장받지 못한 역사적 경험에 기초하여 동 조항이 마련되었다. 동 협약의 초안에는 동 조항 내에 개인, 가정, 가족, 건강 및 재화정보에 관한 사생활 존중이 모두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세부적 논의과정에서 사생활 보호 영역 중 가족 등의 이슈에 대한 사생활은 별도의 조항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제22조(사생활 존중), 제23조(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로 분리되었다. 따라서 일반적인 개인의 사생활 및 의료 정보 보장은 동 조항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동의가 이루어졌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가족이나 가정에 대한 사생활은 제23조에서 독립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장애인의 의료적 정보에 대한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는 제25조(건강)에서 제2항의 내용을 삭제하고 동 조항에서 추가적으로 언급하였다. 각 당사국과 장애인 관련 시민단체 모두 동 조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 없이 동의하였다.

## 2. 조문의 설명

## 가. 용 어

- 거주지나 주거형태(place of residence or living arrangements): 거주지는 장애인의 경제적 소득 등에 따른 주거 지역의 수준을 고려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주거형태는 독거인지, 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의 가족과 살고



있는지, 친척과 살고 있는지,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에 살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자의적인 간섭(arbitrary interference): ‘자의적인 간섭’이라 함은 법률에 의한 간섭이라도 본 협약의 규정, 의도 및 목적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모든 경우에 그 특정한 상황에서 타당한 것이어야 한다. 즉, ‘자의적인 간섭’이라는 개념은 간섭이 법에 근거하여 행하여 졌다고 하더라도 그 법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경우에는 자의적인 간섭으로 간주된다.

#### 나. 다른 조항과의 관계

- 제23조(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결혼, 가족계획, 가족관계 등 가정과 가족에 관한 세부적인 개인생활에 대한 존중은 가정과 가족 이슈를 다루는 별도 조항에서 다루고 있다.
- 제25조(건강) 및 제26조(재활): 장애인의 건강 및 재활과 관련한 정보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 다. 관련된 국제규범과 사용례

동 조항의 제1항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sup>48)</sup>와 아동권리협약 제16조<sup>49)</sup>에서 차용하였는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는 개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해 함부로 간섭을 받거나 명예훼손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간섭이나 비난에 대해서는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부여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아동권리협약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장애아동에게 규정되어 있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협약 제14조<sup>50)</sup> 역시 동일한 내용을 규정

48) 1.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2.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49) 1.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2.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50) 어떠한 이주 노동자 및 그 가족 구성원도 사생활, 가족, 가정, 서신, 또는 기타 의사소통, 혹은 명예와 명성에 대한 불법적인 훼손에 대해 임의적 혹은 불법적인 침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그러한 침해 또는 훼손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하고 있으며 동 조항에서 사용된 문구인 ‘통신 또는 기타 유형의 의사소통 (correspondence or other types of communication)’을 차용하고 있다.

### 3. 내용 및 의의

동 조항은 두 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항에서는 장애인이 자신의 사생활, 가정, 서신 등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침해를 받거나 또는 개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사생활 및 건강에 대한 정보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며, 사회 속에서 살기 위하여 사생활의 보호는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권리는 국가 당국에 의한 것이건 가족이나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에 의한 것이건, 모든 간섭 및 비난으로부터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를 이유로, 치료 또는 보호의 명분으로 사생활의 침해와 경시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에 대한 각성이 요구되며 특히 정신장애인과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사생활 비밀유지에 대한 권리 보장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서신의 보존 및 비밀 유지는 법적으로 그리고 사실상 보장되어야 하며, 서신은 중간에 차단 또는 공개되지 않고 수취인에게 전달되도록 보장되어야 하고 컴퓨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개인 정보의 수집 및 보관은 반드시 법률로써 규제되어야 한다. 장애인이 자신의 사생활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개인적인 정보가 어떻게 저장되고 보관되며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권리도 이에 포함된다. 또한 동 조항은 당사국으로 하여금 개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며 이를 목적으로 하는 적절한 법률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발생하게 될 모든 불법적인 비난이나 공격에 대해서도 당사국은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당사국이 사생활에 대한 부당한 간섭 및 비난을 금지하고 개인의 사생활 또는 통신 등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할 의무는 즉각적인 의무로 이해되어야 한다.



### 제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1. 당사국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다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결혼, 가족, 부모의 신분 및 관계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a) 결혼 적령기에 있는 모든 장애인은 장래 배우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 아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 (b) 장애인이 자신의 자녀수와 출산계획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할 권리, 연령에 적합한 정보와 출산 및 가족계획에 대한 교육에 접할 권리를 인정하고 이러한 권리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조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 (c) 장애아동을 포함하여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그들의 출산능력을 유지한다.
2.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보호, 후견, 재산관리 및 자녀입양 또는 국내법제상 존재하는 개념 중에 유사한 제도와 관련하여, 장애인의 권리와 책임을 보장한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은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된다. 당사국은 양육의 책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한다.
3.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가정생활과 관련하여 동등한 권리가 있음을 보장한다. 당사국은 이러한 권리의 실현과 장애아동에 대한 은폐, 유기, 방임, 격리를 막기 위하여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초기에 종합적인 정보, 서비스 그리고 지원을 제공한다.
4. 당사국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권한 있는 기관이 적용 가능한 법과 절차에 따라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부모와 격리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의 의지에 반하여 부모와 격리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은 아동 또는 부모의 장애로 인하여 분리되지 않는다.
5. 당사국은 직계가족이 장애아동을 돌볼 수 없는 경우 포괄적인 가족 내에서 대안적인 보호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지역사회에서 가정의 형태로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한다.

#### 1. 배 경

본 조항의 내용은 다른 조항에서도 중복되어 나오는 장애인 개인과 가족 이슈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에 그 수립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의장은 제23조는 단순히 가정 및 가족 이슈에 대한 차별방지 조항이며, 그 취지는 가족계획과 같은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 그리고 관련 법, 관행들에



대해 장애인이 다른 국민들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을 확인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즉, 그러한 이슈들에 관하여 장애인 역시 전체 국민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가치관, 규칙, 관행을 따라야 하며, 장애를 이유로 다른 기준을 적용받아서 안 된다는 것이다.

가족에 대한 개념은 국가별로 그 문화와 전통 등에 따라 차이가 나고, 한 국가 내에서도 각 지역적 특색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으므로 가족의 개념에 대한 표준적이고 고정적인 정의를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당사국들은 각 사회와 법 체제 내에서 가족 또는 가정의 개념과 범위가 어떻게 해석되고 정의되는가를 반영하여 동 조항에서 언급되는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족 및 결혼 문제들을 보는 관점에 있어 역사적으로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달리 대우해온 점이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국내법, 관습 및 관행에 따라’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미 장애인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는 기존의 법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라는 표현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지지를 받아 채택되었다.

또한 ‘성 경험’, ‘성적인 관계’ 등의 용어들을 넣을 것인지에 대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종교·문화적인 측면에서 용인되기 어렵고, 반드시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문장이므로 삭제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하여 장애인의 성 경험과 성적인 관계는 장애인의 성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장애인이 무성적인 존재라는 통념적인 편견을 근절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립되었다. 결국 논의 과정 내내 이에 대한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 되었다.

## 2. 조문의 설명

### 가. 용 어

- ◆ **대안적 보호(alternative care):** 대안적 보호에는 그룹홈, 친족가정, 위탁가정 등이 있다. 그룹홈(group home)은 장애인이나 아동 등을 각각의 소수그룹으



로 묶어 가족적인 보호를 통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소규모 시설에서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나 제도를 의미한다. 그룹홈의 최종 목표는 자립과 사회통합이다.

- 친족보호(kinship care)는 부모의 질병·가출·이혼·수감·학대·사망 등으로 위탁양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직계가족 또는 확대가족이 양육하는 제도이다. 가정위탁보호(foster care)는 부모의 질병·가출·이혼·수감·학대·사망 등으로 위탁양육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위탁부모를 발굴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 가 족(family):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의 일반논평 16에 의하면 동 용어는 관련 당사국의 사회에서 이해되는 모든 형태의 가정을 포함하도록 광범위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 가 정(home):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의 일반논평 16에 의하면 인간이 거주하거나 일상적인 생활을 꾸려나가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 나. 다른 조항과의 관계

- 전문 (x)호: 가족은 자연스럽고 기본적인 사회의 구성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에 의해 보호를 받는 집단이라는 것과 장애인의 완전하고 동등한 권리 향유에 가족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구성원들은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 제7조(장애아동): 장애아동 조항에서는 선언적으로 장애아동의 기본적 자유와 인권의 향유에 대한 보장 및 조치 마련,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최우선적 고려, 의사표현의 자유와 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들은 동 조항에서 가족 및 가정의 영역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 제22조(사생활 존중): 장애인의 가족, 가정문제와 관련된 개인적인 사생활들은 존중되어야 하며, 관련 정보에 대해서도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 다. 관련된 국제규범과 사용례

동 조항 제1항 (a)호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3조 제2항의 “혼인적령기의 남녀가 혼인을 하고, 가정을 구성할 권리가 인정된다.”는 조항을 참고하여 구성되었으며, 제1항 (b)호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제1항 (e)호에서 “자녀의 수 및 출산 간격을 자유롭게 책임감 있게 결정할 권리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정보, 교육 및 제 수단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차용하였다. 그리고 제2항은 “아동에 대한 보호, 후견, 재산관리 및 자녀입양 또는 국내법제상 존재하는 개념 중에 유사한 제도와 관련하여 동일한 권리와 책임: 모든 경우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의 최우선적 고려”라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제1항 (f)호를 차용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기회평등에 관한 표준규칙’의 규칙9(가족생활 및 개인의 존엄성)<sup>51)</sup>에서도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족생활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를 촉진해야 하며,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권리를 증진하고 성적인 관계, 결혼 등에 있어 법이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어야 하며, 장애아동을 입양하길 희망하는 사람들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성적

51) 당사국들은 가족생활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장애인들은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권리를 증진하고 법이 성적인 관계, 결혼, 부모 신분과 관련하여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1.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어야 한다. 당사국들은 가족 상담 내에 장애와 장애가 가족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적절한 기준을 포함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위탁 보호와 수발인 보호서비스는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당사국들은 장애가 있는 아동 또는 성인을 위탁양육하거나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모든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2. 장애인은 자신의 성적인 경험에 대한 기회가 거부되어서는 안 되며, 성적인 관계를 갖고 부모가 될 수 있다. 장애인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국들은 적절한 상담을 장려해야 한다. 장애인들도 신체 성적기능에 대한 접근 가능한 형태의 정보뿐만이 아니라 가족계획방법에 대한 접근성도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가져야 한다.
3. 당사국들은 장애인—특히 아직도 사회에서 만연한 나타나고 있는 장애소녀와 여성—의 결혼, 성, 부모 신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바꾸기 위한 조치들을 촉진해야 한다. 미디어는 그러한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제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4. 장애인과 장애인의 가족들은 성적 및 기타 유형의 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장애인들은 가족, 지역사회 또는 시설 내에서의 학대에 특히 취약하며, 학대를 피하는 방법, 학대 발생의 인지, 그리고 그러한 학대행동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교육받을 필요가 있다.



인 경험 및 접근성과 관련하여 성경험의 기회가 거부되어서는 안 되고 성관계를 갖고 부모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에 대한 접근성 보장도 명시되어 있다. 또한 장애인, 특히 장애여성의 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성적 및 기타 유형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3. 내용 및 의의

동 조항은 총 다섯 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항에서는 모든 가족 및 가정문제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근절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을 막기 위한 각 당사국 정부의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 조치들로는 혼인적령기 남녀의 자율적인 배우자 선택과 결혼, 결혼 후 자녀계획, 출산 및 가족 계획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임신능력의 보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 간접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비자발적인 불임수술 등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가정을 이루는 장애인의 권리를 비합법적으로 침해하거나 간섭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의 혼인적령기라 함은 각 국가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식이나 조건 하에서 자신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를 배우자가 될 상대방에게 표현할 수 있는 나이를 의미한다.

가족 구성원 중에서 가장 취약한 장애아동들의 권리 보장과 각 당사국의 조치들은 제2항에서 제5항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제2항에서는 장애아동이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 또는 제도를 통해 양육될 경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3항에서는 장애아동의 가정생활에서의 동등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동시에 장애아동에게 가해지는 격리, 방임 등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 서비스, 지원의 제공 보장을 의무화하고 있다. 제4항에서는 장애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의 의지에 따라 반드시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5항에서는 장애아동에 대한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 대안적인 방법으로



확대가족 보호와 지역사회 보호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에서는 아동의 가정 내에서의 권리 보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 협약의 목적, 원칙 그리고 제7조(장애아동)에서도 언급되어 있듯이 장애아동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동등한 향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또한 장애아동의 부모나 관계자들의 이익에 앞서 장애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규정은 아동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기본적인 원칙임을 확인하고 있다.

가족은 사회의 기초적인 단위로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가족 구성원들은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가정을 구성할 권리는 자녀를 출산하고 함께 사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당사국이 가족계획과 관련한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정책은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부합해야 하고 차별적이거나 강제적이어서는 안 된다. 함께 살아가는 것과 관련하여 정치, 경제 등의 기타 사유들로 인해 가족 구성원들이 떨어져 살 경우 당사국은 국내 차원에서 혹은 국제협력의 차원에서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러한 권리들을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해 각 당사국 정부는 사법적, 행정적, 또는 기타 여러 관련 조치들을 활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법률, 관행 등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개정 및 개선 등의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제24조 교 육

1. 당사국은 교육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차별 없이 그리고 동등한 기회에서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단계에서의 통합교육체제와 평생교육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보장한다.
  - (a) 인간의 잠재성, 존엄성 및 자아 가치에 대한 개발과 기본적 자유와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 강화
  - (b) 가능한 최대한도로 장애인의 정신적·신체적 능력뿐 아니라 그들의 인성, 재능 및 창의성의 개발
  - (c) 장애인이 자유 사회에 효과적으로 참여토록 할 것
2.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 (a)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일반교육체제에서 배제되지 않으며, 장애 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무상의 의무 초등 교육 및 중등 교육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 (b) 장애인은 그들이 사는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위에서, 통합적이고 양질의 무상 초등 교육 및 중등 교육에 접근할 수 있다.
  - (c) 개별적인 요구조건에 따른 합리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 (d) 장애인은 일반 교육체제 내에서 효과적인 교육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는다.
  - (e) 효과적인 개별화된 지원들은 완전한 통합이라는 목표에 부합하여 학문 및 사회 개발을 최대화 시키는 환경 내에서 제공된다.
3. 당사국은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완전하고 평등한 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생활 및 사회 개발 기술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a) 점자, 대체 문자, 보완적이고 대안적인 방식, 의사소통 수단 및 형식, 적응 및 이동 기술에 대한 학습의 장려와 동료집단의 지원 및 멘토링을 장려
  - (b) 수화 학습과 청각장애인 공동체의 언어 정체성의 증진을 장려
  - (c) 시각, 청각, 또는 시청각 장애를 가진 장애인, 그 중에서도 특히 아동에 대한 교육은 개인에게 가장 적절한 언어형태와 의사소통의 방식 및 수단을 통해 그리고 학문 및 사회 개발을 최대화 시키는 환경에서 제공되도록 보장
4. 당사국은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돕기 위하여 장애가 있는 교사를 포함하여 수화 그리고/또는 점자를 사용할 수 있는 교사의 채용과 각 교육단계별 전문가 및 직원의 훈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훈련은 장애에 대한 인식과 적절하고 보완적이며 대안적인 의사소통의 방식, 수단, 그리고 형식과 교육기술 및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교재의 사용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 당사국은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위에 제3차 교육, 직업훈련, 성인교육 및 평생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를 위해 당사국은 장애인에게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보장한다.



## 1. 배 경

교육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인권이자 다른 인권들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3호에서도 주지하듯이 교육에 대한 권리는 개인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권리로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소외된 성인 및 아동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그들이 공동체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획득할 수 있는 주요수단이다. 마찬가지로 장애인에게도 교육은 기본적 인권이자 장애인의 삶의 전반에 걸쳐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기반이나, 그동안 장애인들은 장애를 이유로 교육에서 더욱 소외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본 조항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핵심 주제를 장애인의 사회통합으로 규정하면서 이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당사국의 의무를 열거하였다. 특히 통합교육과 함께 장애인의 기타 교육방식 선택에 대한 권리와 균형을 맞출 필요성이 있음이 제기되어 동 조항에 통합교육과 함께 특정 장애인을 위한 교육방식도 반영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시·청각장애인이 별도의 그룹으로 교육을 받되 교과과정이 비장애인의 수업교과과정과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동 조항은 통합교육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 2. 조문의 설명

### 가. 용 어

- 통합교육체제(inclusive education system): 장애를 가진 학생과 비장애 학생들이 일반교육시스템 내에서 함께 생활하고 배움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편견 없이 상호 협조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교육환경을 의미한다.

### 나. 동 조항과 다른 조항과의 관계

- 제2조(정의): 장애인의 ‘의사소통’에 대한 정의가 예시적 규정으로 나열되어 있다. 따라서 제24조에 명시되어 있는 시·청각장애인들의 다양한 의사소



통 양식은 제2조를 통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제5조(평등과 차별금지): 제5조 제3항에서는 평등을 증진하고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당사국의 점진적인 합리적인 편의 제공 마련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장애인의 교육에서의 합리적인 편의 제공이 마련되어야 한다.
- 제9조(접근성): 접근성은 그 범위가 포괄적이다. 교육의 권리에 있어 접근성은 교육 그 자체, 학교와 도서관과 같은 건물, 기술 및 정보 등에 대한 장벽 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 제19조(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통합): 교육의 최종적인 목적은 사회통합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은 교육을 통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사회에 참여하고 적응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장애인이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다. 관련된 국제규범과 사용례

동 조항의 제1항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3조<sup>52)</sup>

- 52) 1. 본 조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교육이 인격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당사국은 나아가서 교육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자유사회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며, 민족간에 있어서나 모든 인종적, 종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유지를 위한 UN의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한다.
2. 본 조약의 당사국은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 (a) 초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무상 의무교육으로 실시된다.
  - (b) 기술 및 직업 중등교육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중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다.
  - (c) 고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능력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개방된다.
  - (d) 기본교육은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초등교육의 전 기간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가능한 장려되고 강화된다.
  - (e) 모든 단계에 있어서 학교제도의 발전이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적당한 연구·장학제도가 수립되며, 교직원의 물질적 처우는 계속적으로 개선된다.
3. 본 조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법정후견인이 그들 자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이외의 학교로서 국가가 정하거나 승인하는 최소한도의 교육수준에 부합하는 학교를 선택하는 자유 및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4. 동 조항의 어떠한 부분도 항상 동 조항 제1항에 규정된 원칙을 준수하고, 그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이 국가가 결정하는 최소한의 기준에 일치한다는 요건 하에서, 개인과 단체가 교육



와 아동권리협약 제29조53)에서 차용하여 장애인과 특별한 관련성이 있는 요소들을 선택하였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3조 제2항에서는 무상 의무 초등교육과 중·고등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향후 중·고등 교육의 무상교육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아동권리협약 제29조 제(a)호에서는 아동의 인격, 재능, 잠재력을 개발하고, 문화적 및 인종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그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의 기회평등에 관한 표준규칙’ 규칙 6(교육)<sup>54)</sup>에서는 통합적인 환경에

기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간접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53) 1.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 (a)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개발
  - (b)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UN 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 (c) 자신의 부모, 문화적 정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 (d)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性)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 (e)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
- 54) 당사국들은 통합적인 환경에서 장애를 가진 아동, 청소년, 성인의 동등한 초·중·고 교육기회의 원칙을 인정해야 한다. 당사국은 장애인의 교육은 교육체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1. 일반교육기관은 통합적 환경에서의 장애인 교육에 책임이 있다. 장애인을 위한 교육은 국가교육계획, 커리큘럼 개발 및 학교 조직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2. 일반학교에서의 교육은 통역사 및 기타 적절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을 전제로 해야 한다. 다양한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고안된 적절한 접근성 및 지원서비스는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3. 부모회 및 장애인단체는 모든 단계의 교육과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4.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국가에서는 최종중 장애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장애유형 및 정도의 장애소년 및 소년들에게도 의무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5. 다음의 영역에서는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 (a) 매우 어린 장애아동;
    - (b) 취학 전 장애아동;
    - (c) 성인 장애인, 특히 여성장애인.
  6. 주요 교육현장에서 장애인에게 교육적인 편의를 제공하도록 해야 하기 위해 당사국들은:
    - (a)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이해하고 수용하는 명확히 명시된 정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 (b) 커리큘럼의 융통성, 추가, 조정이 허용되어야 한다;
    - (c) 양질의 자료, 지속적인 교사 훈련 및 교사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7. 통합교육 및 지역사회기반 프로그램은 장애인을 위한 비용효과적인 교육 및 훈련제공에 있어 보완적인 접근법으로 간주된다. 국가의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은 장애인에게 지역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지역의 자원을 사용하고 개발하도록 지역사회를 장려해야 한다.
  8. 일반학교체계가 아직 적합하게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수교육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특수교육은 일반학교체계에서의 교육에 학생들이 준비하도록 하는



서 장애를 가진 아동, 청소년, 성인의 동등한 초·중·고등 교육기회의 원칙을 인정해야 하고, 그러한 교육은 통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통합교육의 실현을 위해 수화통역 및 장애유형별 적절한 지원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편의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점진적인 이행을 규정하면서 일반학교체계가 아직 적합하게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수교육은 고려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내용 및 의의

본 조항은 여타의 국제인권조약에서 규정되어 있는 교육의 권리를 장애인에게 적합하게 반영하여 장애인의 교육권을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3호에서는 교육의 권리와 관련하여 교육의 모든 형태 및 단계에서의 네 가지 상호 연관된 필수적인 요소를 언급하고 있다. 그것은 이용가능성(avail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수용성(acceptability) 그리고 적응성(adaptability)인데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동 조항에서도 반영되어 있다.

첫째, 가용성은 당사국의 관할권 내에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이 충분히 이용 가능해야 하며 제대로 기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기능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적절한 건물 등의 시설, 위생시설, 안전한 식수, 훈련된 교사, 교육자료, 정보기술 등의 설비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둘째, 접근성은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이 당사국 관할권 내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것으로 ‘비차별’, ‘물리적인 접근성’, ‘경제적 접근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비차별’은 교육이 모든 이들에게, 특히 가장 취약한 집단에게, 어떠한 차별 없이 법

---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러한 교육의 수준은 일반교육과 동등한 기준과 패기가 반영되어야 하며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야 한다. 최소한 장애학생들이 비장애인학생들과 동등한 교육적인 자원을 할당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당사국들은 특수교육서비스의 일반교육으로의 점진적인 통합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일부 사례에서 특수교육이 일부의 장애학생들에게는 가장 적절한 형식의 교육으로 현재 간주되고 있다는 것은 인지되고 있다.

9. 청각 및 시청각장애인의 특수 의사소통 욕구로 인해 이들의 교육은 일반학교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또는 장애인학교에서 더욱 적합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초기단계에서 특히 청각 및 시청각장애인의 최대한의 자립 및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초래하는 문화적으로 민감한 지도에 초점이 맞추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



를상·사실상 접근 가능해야 함을 말한다. ‘물리적 접근성’은 합리적으로 편리한 지리적 장소로의 등교 혹은 현대적 기술에 의해 안전한 물리적 거리 내에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경제적 접근성’이란 누구나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주로 초등교육은 무상으로, 중등 및 고등교육은 점진적인 무상 교육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수용성은 교과과정 및 교수법 등 교육의 형태와 내용이 적절하고 높은 수준으로 구성되어 학생 또는 학부모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교육의 목적과 교육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넷째, 적응성은 변화하는 사회와 공동체의 필요에 부응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이익이 최우선적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조항은 다섯 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항에서는 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통합교육체제와 평생교육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선언하면서 그 방향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이러한 장애인의 교육권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들을 나열적 규정을 통해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제3항에서는 장애인 교육 지원을 위한 조치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특히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교육환경의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제4항에서는 시·청각장애인의 교육을 위한 교사채용 및 훈련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5항에서는 장애인의 모든 교육에서의 접근성 보장과 이러한 접근성 보장을 위한 합리적인 편의 제공의 의무를 명시화하고 있다.

동 조항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통합교육 제공의 원칙이다. 이는 장애인을 일반 교육시스템에서 격리하지 않고 통합교육 시스템 내에서 장애인의 다양한 잠재력 개발을 통하여 사회통합의 촉진을 그 목표로 함으로써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통합교육을 통해 장애를 인간의 다양성의 하나로 인식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인권 및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다. 이러한 장애인의 교육에 있어 시·청각 장애인과 같이 특정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 교육 환경에 대한 요구 자체가 특수할 수 있기 때문에, 동 조항은 이들이 일반교육시스템으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학습 환경을 마련하고 청각장애인의 언어적 정체성 증진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더욱 발전적



인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동조 제2항에 의해 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 역시 일반교육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무상의 초등, 중등교육이 제공되어야 하고 기술 및 직업교육도 제공되어야 한다.

교육의 권리의 실현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분야와 동시에 사회권의 일환으로서 가용자원의 한계라는 적용을 받는 분야가 중첩되어 있다. 그러나 적어도 장애를 이유로 개별 당사국 내의 비장애인들에게 정부가 제공해주는 최소한의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장애인이 제공받지 못한다면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인 것이며, 각 당사국은 그 시정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의무가 있다. 각 당사국은 ‘평등한 기회를 바탕으로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현실화하기 위해 모든 수준에서의 통합교육체계와 평생교육을 보장해야 하며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목표로 하며 잠재력, 존엄성, 인권 및 자유의 존중과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취해져야 한다. 또한 점진적으로 실현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단지 복지나 시혜의 문제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며, 가능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해야 할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성격을 갖는 의무조항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 제25조 건 강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이 장애로 인한 차별 없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과 관련된 재활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특별히 각 당사국은,

- (a) 장애인에게 성적·생식적 보건분야 및 인구에 기초한 공중 보건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범위 및 질과 수준의 무상 또는 적절한 가격의 건강관리 및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b) 아동과 노년을 포함하여 조기 발견과 적절한 예방 및 추가적인 장애를 최소화 하고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를 포함하여 특히 장애로 인해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 (c) 농촌 지역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속한 지역사회와 가장 인접한 곳에서 이러한 보건서비스를 제공 한다
- (d) 의료전문가가, 공공 및 민간보건에 대한 윤리적 기준의 보급과 훈련을 통한 장애인의 인권, 존엄성, 자율성 및 욕구에 대한 인식의 개선에 기초한 자유로운 사전 동의에 입각하여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수준의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 (e) 건강보험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규정된 국내법에 의하여 인정된 생명보험이 장애인에게 차별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금지한다.
- (f) 장애를 이유로 건강관리, 보건서비스 또는 음식과 음료의 차별적인 거부를 금지한다.

## 1. 배 경

모든 사람은 존엄한 삶을 누리기 위한 최고로 도달 가능한 수준의 건강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5조 제1항에서도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에게는 ‘장애’와 연결되어 더욱 절실한 문제이기도 하다.

장애인의 건강 문제가 본 협약에서 반드시 규정되어야 한다는 당사국 및 장애인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지지에 의해 ‘건강과 재활에 대한 권리’를 다루는 조항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논의과정 속에서 건강에 대한 권리와 재활에 대한 권리를 구분해서 규정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합의가 도출되어 현재와 같이 제25조에서는 ‘건강’을 다루고, 제26조에서는 ‘선천적 및 후천적 장애에 대한 재활’을 다루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동 조항의 내용에 대한 핵심적인 논의를 살펴보면, 다수의 국가들과 IDC에서 두문(*chapeau*)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physical and mental health)’이 건강의 범주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표현인 ‘건강(health)’으로 수정하자는 제안을 하여 이것이 반영되었다. 중요한 것은 특히 ‘성별을 고려한’ 의료서비스가 포함되어 장애여성들의 임신, 출산과 같은 특수한 의료적 욕구를 반영하는 의료서비스가 보장될 수 있다는 점이다.

(a)호에서는 무료 또는 적절한 가격의 건강관리 및 프로그램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무상 또는 적절한’이라는 용어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4호에서 보건서비스의 지불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동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많은 논쟁이 있었던 성적, 생식 관련 의료 서비스는 지금까지 장애인에게 많은 부분 권리가 박탈되어 오거나 제한적으로 그 권리가 적용되어 왔다. 이에 대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성 및 생식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동의를 얻어 채택되었다. (e)호와 관련하여, 많은 국가들이 장애인에게 의료보험 또는 생명보험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본 호를 통해 당사국은 장애인의 의료보험 또는 생명보험을 장애인에게 비차별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생명보험은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 3. 조문의 설명

#### 가. 용 어

-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개인의 생물학적 및 사회경제적 조건과 국가의 가용자원을 모두 고려한 수준의 건강을 의미한다. 특히 양호한 건강은 국가가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개인의 유전적 요인, 건강 악화에 대한 개인적 취약성, 그리고 생활방식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 예방(prevention): 예방이란 정신, 신체 혹은 감각기관의 손상을 방지(1차 예



방)하고 손상이 일단 발생했을 때는 신체적, 심리적 및 사회적으로 부정적 자세를 가짐으로써 발생하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2차 예방)으로 정의된다.

#### 나. 다른 조항과의 관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4호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건강에 대한 권리는 국제인권장전<sup>55)</sup>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식량권, 주거권, 근로권, 교육권, 인간존엄성, 생명권, 평등권, 사생활 존중, 정보에 대한 접근권, 및 이전의 자유 등 다른 인권의 실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동 조항은 본 협약의 제3조(일반원칙), 제5조(평등과 차별금지), 제9조(접근성), 제10조(생명권), 제18조(이주 및 국적의 자유), 제21조(정보접근의 자유), 제22조(사생활 존중), 제24조(교육), 제27조(근로 및 노동) 등의 조항들과 유기적인 관련이 있다.

#### 다. 관련된 국제규범과 사용례

동 조항의 두문(*chapeau*)의 구성에 있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제1항<sup>56)</sup>과 아동권리협약 제24조 제1항<sup>57)</sup>의 문구를 차용하고 두 조항에서 언급되는 ‘인정한다(recognize)’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는 제안이 지지를 받아 동 조항에서 채택되었다.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같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이라는 표현 대신 아동권리협약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다 포괄적인 용어인 ‘건강’을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되

55) 국제인권장전(International Bill of Rights)은 국제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을 통칭하는 비공식적인 명칭이다.

56) 본 조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57) 당사국은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관리지원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었다.

장애인의 기회평등에 관한 표준규칙 규칙 2(의료적인 보호)<sup>58</sup>에서는 장애의 조기발견 및 예방치료서비스 제공,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인들에 대한 적절한 장애관련 훈련 및 장비 보장, 장애인들의 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적절한 치료 및 의약품의 제공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전반적인 장애인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성인지적 관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여성을 위한 의료서비스는 고려되지 않았다.

한편, UN은 모든 국가가 주기적인 건강진단, 임신부와 영·유아에 대한 정기검진을 통하여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3. 내용 및 의의

본 조항은 장애인이 장애로 인한 차별 없이 도달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를 선언하고 있으며, 성별을 고려하는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조치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치들로는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 질, 범위의 보건의료프로그램 제공, 장애예방 의

58) 당사국들은 장애인에게 효과적인 의료 보호 제공을 보장해야 한다.

1. 당사국들은 장애에 대한 조기발견, 평가, 그리고 치료를 위해서 관련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에 의해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장애발생을 예방하고, 감소시키며, 또한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프로그램은 계획과 평가의 단계부터 장애인 개인자격으로 가족들, 그리고 장애인 단체들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2. 지역사회 활동가는 장애의 조기발견, 일차적인 지원의 제공, 그리고 적절한 서비스 제공과 같은 영역에 참여하기 위해 훈련되어야 한다.
3. 국가는 장애인, 특히 영아와 아동들이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동일한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동일한 수준의 의료보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4. 국가는 모든 의료인들과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장애인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적절한 훈련과 장비가 갖추어질 수 있어야 하며, 이들이 관련 치료방법과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국가는 의료와 의료기관 종사자들 그리고 관련 직원들이 부모들에게 부적절한 충고를 함으로 인하여 아이들에게 제한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 교육은 가능한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6. 국가는 장애인들이 그들의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규칙적인 치료와 의약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료서비스 제공, 근접지역으로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보장, 의료전문가들의 동등한 의료서비스 지원 증진,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험 도는 생명보험의 비차별적 제공, 장애를 이유로 한 건강관리 또는 의료서비스 또는 식음료 제공의 차별적인 거부 금지를 들 수 있다. 장애인에게 있어서 보건의료문제의 해결은 장애인의 의료적 재활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

성별을 고려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은 남녀간 생물학적 및 사회·문화적 요소의 차이를 반영하여 의료서비스에서의 성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성별에 맞는 보다 나은 수준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여성 건강권과 관련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생애 전반에 걸쳐 여성 건강권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그러한 전략으로는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적절한 개입, 성 및 생식 관련 서비스를 포함한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들 수 있다. 여성 건강권의 실현을 위한 조치는 보건서비스, 교육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하는 장벽을 제거하고 여성의 생식에 대한 권리를 부정하는 문화적 관행 등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및 개선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장애의 조기발견 및 예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에 대한 물리적 또는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의료시설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병원 등을 찾아가기 어려운 농촌지역의 접근성을 높이는 규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서비스 정보 및 서비스의 제공과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의 보장은 장애인이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애를 이유로 한 의료서비스 등의 거부는 차별로 간주되며 각 당사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4호에서는 건강의 권리와 관련하여 네 가지 상호 연관된 필수적인 요소를 언급하고 있다. 그것은 이용가능성(avail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수용성(acceptability) 그리고 질(quality)인데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동 조항에서도 반영되어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의 구체적인 적용은 특정 당사국의 구체적인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첫째, 이용가능성은 제대로 기능하는 공공 보건 및 보건의료시설, 상품과 서비스



스, 그리고 프로그램이 당사국 내에서 충분히 이용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만 당사국의 발전 수준 등에 따라 시설, 상품 및 서비스의 성격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 둘째, 접근성은 보건 시설,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것으로 ‘비차별’, ‘물리적 접근성’, ‘경제적 접근성’, ‘정보 접근성’을 포함한다. ‘비차별’은 모든 사람들 특히, 가장 소외된 집단에게 법률상·사실상 어떠한 차별 없이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리적 접근성’은 보건시설, 물품 및 서비스가 소수민족,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과 같이 취약하거나 소외된 집단을 포함하는 모든 인구 집단이 물리적으로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인구가 밀집해있지 않은 농촌 지역에도 위와 같은 시설 등에 물리적으로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건물에 대한 적절한 접근성을 포함한다. ‘경제적 접근성’은 보건시설, 물품 및 서비스가 모든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해야 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혜택 받지 못한 집단을 포함하여 모든 이에게 부담 가능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정보 접근성’은 건강 문제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얻고 전파할 권리를 포함한다. 그러나 정보 접근성에 있어서 개인의 건강정보가 비밀로 유지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셋째, 수용성은 모든 보건시설, 물품 및 서비스가 의료 윤리를 존중하고 문화적으로 적절하며 성별과 생명주기의 필요에 민감하며, 비밀 유지 존중 및 관련인의 건강 상태 개선을 위해 계획되어야 하는 것이다. 질은 보건시설, 물품 및 서비스는 문화적으로 수용 가능해야 하며 과학적 및 의학적으로 적절하고 양질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조항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장애인이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있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범위, 수준의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즉, 장애로 인한 차별 없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각 당사국은 의료관련 재화를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의료서비스에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높으나 이러한 의료 욕구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서비스 제공체계가 미흡하여 자립생활과 기본적인 삶의 질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의무가 있는 것은 명확하나 그 수준을 통일적으로 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건강권은 각 당사국별로 도달 가능한 건강의 최고 수준을 설정하여 점진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분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건강권 중, 그 내용이 비장애인들이 이미 보장받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보장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차별에 해당하며 또한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은 국가의 핵심적 의무(Core Obligation)로 국가가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할 즉각적 의무에 해당된다.

장애인의 건강권 보호가 자원의 한계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제약되는 경우에도 그 사회 내에서 경제적·사회적으로 취약한 사회구성원은 상대적으로 저비용의 대상 특정 프로그램의 채택을 통해 보호받아야 하며, 최소한의 필수적인 수준을 충족시키는 국가의 최소 핵심의무는 당사국의 이용가능한 자원의 양 혹은 어떤 다른 요소와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보건의료 및 보건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성은 강조되어야 하며, 경제적으로 여건이 되지 않는 장애인에게는 필수적인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결국 이에 관한 국가의 의무는 건강권이 시혜적 특성이 아닌 가장 기본적인 인권으로 차별시정과 최소한의 보장과 관련해서는 즉각적인 의무로, 그리고 도달 가능한 최고수준의 건강과 관련해서는 점진적이며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제26조 선천적 및 후천적 장애에 대한 재활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최대한의 자립과 완전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직업적 능력 그리고 삶의 모든 측면에서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동료집단의 지원을 포함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보건, 고용, 교육 그리고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구성, 강화, 확장하며, 이러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 (a) 가능한 초기 단계에서 시작하고 개별적인 욕구와 역량에 대한 여러 전문분야별 평가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 (b) 지역공동체와 사회 전반에 있어서의 장애인의 참여와 통합을 지원하고, 자발적이며, 농촌지역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자신들의 지역공동체에서 최대한 근접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재활 서비스에 종사하는 전문가 및 직원을 위한 최초 훈련 및 지속적인 훈련의 개발을 증진한다.
3. 당사국은 재활과 관련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 고안된 보장구 및 기술에 대한 유용성, 지식, 그리고 사용을 장려한다.

### 1. 배 경

장애인의 재활은 의료적 재활 그 이상의 것을 포함하며, 재활프로그램이 의료적인 분야로 국한되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 하에 제25조(건강)내에서 재활과 건강을 통합하여 규정하지 말고 재활을 독립적인 조항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합의에 의해 본 조항이 마련되었다. 즉, 본 조항은 의료의 범주 내에서 재활을 규정하지 않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교육적 재활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재활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였다. 여기에 일부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에 대한 의료적인 재활과 기술 및 직업재활, 사회심리재활, 지역사회재활, 교육재활 등 다양한 영역의 재활이 포함된다.

IDC는 성별, 연령, 문화적 요소와 장애인과 관련된 기타 제반 요소가 재활 프로그램 기획 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러한 프로그램이 특정 집단에게 국한될 수 있고 다른 집단에게는 의미가 없는 불필요하고 제한적인 규정으로 남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동 조항은 장애인



의 자력에 의한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의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것은 장애인의 재활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장애인이 직접 참여한다는 요구조건이 없고, 동료의 지원을 통한 재활만이 제시되어 있는 것을 통해 확인된다. IDC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재활 역시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였는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재활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통합을 유도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전되고 도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장애인단체는 동 조항의 존치에 대해 전적으로 반대하였다. 그 이유로는 첫째, 선천적 장애와 후천적 장애에 대한 재활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둘째, 선천적 장애와 후천적 장애에 대한 재활이 포괄하는 범주가 불분명하며 셋째, 동 조항에서 언급되는 사항들이 다른 조항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국 장애인단체의 제안은 많은 국가들과 장애 관련 국제 시민단체의 반대의견에 부딪혀 반영되지 못했다.

## 2. 조문의 설명

### 가. 용 어

- **선천적 장애에 대한 재활(Habilitation):** 선천적인 또는 어린 시절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야기된 기능손상이 있는 장애인을 위한 재활서비스이다. 본 재활의 목적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개인의 최대 기능능력의 개발을 돕기 위함이다.
- **후천적 장애에 대한 재활(Rehabilitation):**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기능이 감소되거나 손실된 기능능력 및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도록 기능적으로 손상된 사람을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돕는 것을 말한다. 두 유형의 재활 모두 일상생활에서 기능 손상을 야기하는 어려움을 예방하고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나. 다른 조항과의 관계

- 제9조(접근성):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재활서비스에 대한 물리적 건물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 보장은 제9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 제25조(건강): 재활 영역에서 의료적인 재활은 건강 부문의 하나로 간주된다.

### 다. 조항과 관련된 국제규범과 사용례

국제노동기구는 ‘장애인의 직업적 재활 및 장애인 고용에 대한 특별 협약’ 제159호에서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근로 관련 권리를 위한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관련해서 동 협약 제2조, 제3조, 제8조, 제9조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인 사용례는 본 협약 제27조(근로 및 노동)의 ‘조항과 관련된 국제규범과 사용례’를 참조하기 바란다.

## 3. 내용 및 의의

동 조항은 세 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항은 장애유구별 재활과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접근성이 좋은 재활 등 장애인의 선천적 혹은 후천적인 장애에 대한 다양한 재활의 방법들을 제시하면서 재활서비스를 강화해 갈 것을 제시하고 있다. 제2항은 재활서비스 전문가 및 실무자에 대한 훈련의 개발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장애인재활보조기구와 기술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재활서비스는 개인의 장애특성과 정도에 부합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전문가에 의한 재활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IDC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자립 및 자기 결정권은 재활 프로그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교육, 훈련 및 개인 역량 구축 문제를 해결해주는 프로그램에 대해 영향력과 통제력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에게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일반 병·의원의 재활의학과, 국립재활병원 및 정부지원 재활 병·의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생활 및 요양시설이 있다. 그러나 장애인이 충분한 재활의료 서비스를 받



을 기회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현재 300명상 이상의 종합병원중 재활의학과가 설치된 경우는 56%(74개소)에 불과하고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언어치료나 심리치료 등 재활에 필수요소인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재활병·의원의 이용자가 주로 생활시설에 입소해 있는 장애인이나 생활보호 대상 장애인에 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재가장애인들이 적절한 재활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재활서비스는 주로 의료적인 부분에 많이 치우쳐 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을 통한 다양한 재활서비스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동 조항에서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장애인들의 재활서비스 접근성과 이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문인력의 확충과 교육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제27조 근로 및 고용

1. 당사국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장애인이 노동할 권리를 인정하며, 이는 장애인이 장애인에게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노동시장과 근로환경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받아들인 직업을 통해 삶을 영위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포함한다. 당사국은, 고용 기간 중에 장애를 입은 사람을 포함하여, 입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 특히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노동권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 (a) 모집, 채용 및 고용의 조건, 고용의 연장, 경력 개발, 안전하고 건전한 근무환경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고용과 관련된 제반 사안에 대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 (b)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동등한 기회 및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상,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한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과, 불편사항의 시정을 포함하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대한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한다.
  - (c)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노동권 및 노동조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d) 장애인이 일반적인 기술 및 직업 지도 프로그램, 직업소개 서비스 그리고 직업 훈련과 지속적인 훈련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e) 장애인의 구직, 취업 및 지속적인 근무와 복직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기회와 경력개발을 장려한다.
  - (f) 자영업, 창업, 협력개발 및 개인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한다.
  - (g) 공공부문에서 장애인을 고용한다.
  - (h) 적극적 우대조치, 정책, 장려금 그리고 기타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정책과 대책을 통해 민간부문에서 장애인의 고용을 증진한다.
  - (i) 사업장에서 장애인들에게 합리적 편의의 제공을 보장한다.
  - (j) 장애인이 개방된 노동시장에서의 직장경험을 습득하도록 촉진한다.
  - (k)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및 전문재활, 직업유지 및 직장복귀 프로그램을 증진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이 노예상태나 예속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하며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강제근로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한다.

### 1. 배 경

근로의 권리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협약 등 여러 국제인권조약에서 규정하



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러나 고용분야는 장애를 기반으로 하는 차별이 가장 심각하고 두드러지면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영역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장애인의 실업률이 비장애인 실업률의 두세 배에 이르며, 장애인이 고용된 경우에도 대부분 사회적,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저임금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한 주류 노동시장으로부터 격리되거나 분리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근로 및 고용은 권리를 기반으로 한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각 당사국의 합의를 통해 동 조항이 마련되었으며, 그 내용은 세계노동기구(ILO) 협약과 같은 기존의 국제 조약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또한 당사국 정부가 장애인의 노동 시장 접근성의 중요성을 인식해 장애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힘을 부여하며 이들이 온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일반적인 지지가 있었다.

여러 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장애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들이 근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편의 제공과 적극적 우대조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조건을 위해 고용 및 채용조건에 대한 참고사항 및 부가 설명을 명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장애인 착취의 위험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며, 장애를 가진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환경에 대해 언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 되었으나 동 조항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

## 2. 조문의 설명

### 가. 용 어

- ▶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 적극적 우대조치는 기존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 실질적 평등의 증진을 위해 형식적 평등을 유예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수집단 또는 여성 인력 활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직원 채용에 있어 소수집단과 여성에게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주고 이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 나. 다른 조항과의 관계

- 제5조(평등과 차별금지): 동 조항에서는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차별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에 있어 장애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제5조의 규정과 함께 동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 제9조(접근성): 채용정보, 채용과정, 사업장 등에 대한 다양한 근로 및 고용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적극적 우대 조치와 합리적인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 다. 관련된 국제규범과 사용례

국제노동기구의 ‘장애인의 직업적 재활 및 장애인 고용에 대한 특별 협약’ 제159호는 제2조<sup>59)</sup>, 제3조<sup>60)</sup>, 제8조<sup>61)</sup>, 제9조<sup>62)</sup>에서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근로 관련 권리를 위한 포괄적인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 내지 제8조<sup>63)</sup>는 근로의

- 
- 59) 각 당사국은 자국의 여건, 관행, 발전가능성에 따라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에 관한 국가 정책을 개발하고 이행하며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60) 해당 정책은 모든 유형의 장애인들에게 해당되는 적절한 직업재활 조치들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공개노동시장에서 장애인 고용기회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 61) 농촌지역과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서비스의 설립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 62) 각 당사국은 장애인의 직업안내, 직업훈련, 직업소개, 채용을 담당하는 재활교육 담당자와 기타 적합한 직원의 훈련과 양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 63) 제6조: 1. 본 조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포함하는 근로의 권리를 인정하며, 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본 조약의 당사국이 근로권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제반조치에는 개인에게 기본적인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하에서 안정적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과 생산적인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 및 직업의 지도, 훈련계획, 정책 및 기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7조: 본 조약의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이 확보되는 공정하고 좋은 근로조건을 모든 사람이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 (a) 모든 근로자에게 최소한 다음의 것을 제공하는 보수
- (i) 공정한 임금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 특히 여성에게 대하여는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와 함께 남성이 향유하는 것보다 열등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보장
- (ii) 본 조약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자신과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
- (b)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6조에서는 보편적이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일반적인 의미의 근로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의 조건을 향유할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근로 권리의 개별적인 측면을 규정하고 있다. 제8조에서는 근로의 권리의 집단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는데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자신이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선언하고 있다.

‘장애인의 기회평등에 관한 표준규칙’ 규칙 7(고용)<sup>64)</sup>에서는 고용분야에서 장

- 
- (c) 근속연수 및 능력 이외의 다른 고려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직장에서 적절한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
- (d) 휴식, 여가 및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 공휴일에 대한 보수와 정기적인 유급휴일
- 제8조: 1. 본 조약의 당사국은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 (a) 모든 사람은 그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단체의 규칙에만 따를 것을 조건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가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권리. 그러한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위하여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 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할 수 없다.
- (b)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연합 또는 총연합을 설립하는 권리 및 총연합이 국제노동조합조직을 결성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권리
- (c) 노동조합은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공공질서를 위하거나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제한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활동할 권리
- (d) 특정국가의 법률에 따라 행사될 것을 조건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
2. 동 조항은 군인, 경찰 구성원 또는 행정관리가 전기한 권리들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동 조항의 어떠한 규정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1948년의 국제노동기구협약의 당사국이 본 협약에 규정된 보장을 저해하려는 입법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를 저해하려는 방법으로 법률을 적용할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 64) 당사국들은 장애인들이 그들의 인권—특히 고용분야에서—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인정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모두 노동시장에서 생산적이고 이익이 있는 고용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1. 고용분야의 법률과 규정들은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장애인의 고용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
2. 당사국들은 장애인이 공개고용에 통합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적극적인 지원은 직업훈련, 인센티브할당제, 예비 또는 지정고용, 중소기업 대출 또는 보조금, 독점계약 또는 우선제작권, 세금 양도,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계약승인 또는 기타 기술 또는 재정 지원과 같은 다양한 조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당사국들은 또한 고용주가 장애인에게 합리적인 배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3. 당사국의 행동 프로그램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a) 작업장 및 사업장이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고안되고 개조하기 위한 조치들;
- (b) 신기술 사용과 보조 장비, 도구, 설비들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한 지원 그리고 장애인들이 고용을 창출하고 유지하도록 하는 그러한 장비와 설비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조치들;
- (c) 적절한 훈련 및 배치 그리고 개인지원 및 통역 서비스와 같은 지속적인 지원의 공급.



애인이 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인정하면서, 고용 관련 법률 및 규정이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장애인 고용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합리적인 배려의 제공을 당사국이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들의 사업장에 대한 접근성 보장, 신기술 사용과 보장구 등에 대한 지원, 개인별 지원 서비스 제공,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인식제고 노력, 근로환경의 개선 등에 대한 각 당사국의 조치 마련을 규정하고 있다.

### 3. 내용 및 의의

동 조항은 2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장애인의 근로 및 노동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제1항에서 근로 및 노동에 관한 일반원칙을 다루고 있으며, 세부 각호는 이러한 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다소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예측된 상태에서의 장애인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의 권리는 각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의 권리인 동시에 집단적인 권리이다. 그러나 근로에 대한 권리가 고용 획득에 대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권리로

- 
4. 당사국들은 장애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및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공공 인식 제고 캠페인을 착수하고 지원해야 한다.
  5. 고용인으로서의 역량 내에서, 당사국들은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을 위한 우호적인 조건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6. 당사국, 노동자 조합, 고용인은 정당한 채용 및 승진 정책, 고용 조건, 임금, 상해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근로환경 개선 조치, 고용관련 상해를 입은 노동자의 재활을 위한 조치를 보장하기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
  7. 장애인이 공개 노동시장에서 고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항상 목표가 되어야 한다. 공개 채용에서 목표가 이루어지지 못한 장애인들을 위해 소규모의 보호고용 또는 지원고용이 대안이 될 수도 있다. 그러한 프로그램의 수준은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들의 채용 기회 제공과의 관련성 및 충분성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8. 조치들은 사적 및 비공식 부문에서의 훈련 및 고용 프로그램에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9. 당사국, 노동자 조합, 고용인은 유동시간, 파트타임 근무, 근무공유, 자가 고용, 장애인수발 보호를 포함하여 훈련 및 고용기회 창출을 위한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장애인단체와 협력해야 한다.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동 조항은 장애인이 가질 수 있는 근로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선언적 규정과 함께 권리의 범주를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예시적으로 개방적인 방식으로 당사국이 취해야 하는 조치들을 열거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여기에는 노동의 자유로운 선택 또는 수락의 권리 및 고용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접근권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구성 방식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의 방식을 따른 것이기도 하다.

동 조항에서는 여타의 국제인권조약에서 규정되어 있는 근로의 권리를 장애인에게 적용하여 규정하고 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8호에서는 근로의 권리와 관련하여 근로의 모든 형태 및 단계에서 이용가능성(avail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수용성 및 질(acceptability & quality)의 상호연관된 필수적인 요소를 언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성요소들은 동 조항에서도 반영되어 있다. 첫째, 가용성은 당사국은 개인들이 가용한 일자리를 파악하고 찾을 수 있도록 협조하고 지원하는 특화된 서비스를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접근성은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시민적·정치적, 사회적 또는 기타의 신분에 근거하여 평등에 입각한 근로권의 행사를 훼손하거나 무효화할 의도 또는 효력을 갖는 고용에 대한 접근 및 유지에서의 모든 차별을 금지하며 고용시장에 관한 정보네트워크의 수립을 통해 일자리에 대한 접근을 획득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구하고 획득하고 전파할 권리를 가진다. 셋째, 수용성 및 질은 근로권의 보호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 특히 안전한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 노동조합을 결성할 근로자의 권리, 노동을 자유로이 선택하고 수락할 권리 등 여러 요소로 구성된다.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조치의 예로서는 모든 고용관련 사항에 대해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동등한 가치를 가진 일에 대한 기회균등 및 보상의 평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환경의 보장, 노동조합의 행사 권한, 장애인에 대한 동등한 훈련에 대한 접근성 제공,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 고용기회 및 직업개발, 자가고용 등의 기회촉진,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고용 의무화, 민간부문에서의 장애인 우대를 통한 고용, 합리적인 편



의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환경은 작업안전과 보수 조건에 있어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고유성에 대한 존중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장애 근로자의 작업수준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경우 임금이나 다른 근로조건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각 당사국 정부는 노동력 보호에 대한 기준을 낮추거나 장애를 이유로 최저 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불해서는 안 될 책임이 있다.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일하는 것은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선택과 의사에 의한 고용의 실현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강제노동에 해당되는 시설에서의 근로도 근로의 권리 행사로 볼 수 없다.

당사국은 장애인의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장애인의 고용을 막는 인위적인 장벽을 제거하고 장애인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하고 대안적인 고용을 촉진하고 규제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이 원활하게 대중 또는 자가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성과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배려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의 구직과 직업교육에 대한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로 인한 차별 없이 적절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하며, 장애로 인한 차별 없이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장애로 인한 차별 없이 사회적 보호와 이러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한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a) 정수(淨水)서비스에 대해 장애인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장애 관련 욕구를 위한 적절하고 적절한 가격의 서비스, 장치 및 기타 지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
  - (b) 사회보호 프로그램과 빈곤감소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 특히 장애여성과 장애소년, 장애인노인의 접근을 보장
  - (c) 빈곤 상태에 있는 장애인과 그들의 가정이 적절한 훈련, 상담, 재정적 지원과 일시적 위탁을 포함한 당사국의 장애인 관련 지출이 이루어지는 지원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 (d) 공공주택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
  - (e) 퇴직 급여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

## 1. 배 경

본 조항은 장애인의 ‘적절한 수준의 삶의 질 보장’과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의장이 제안한 안을 지지하여 채택되었다. 논의과정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은 ‘사회적 보호’와 관련한 용어의 선택이었다. 기존의 초안에서는 ‘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가 아닌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동 조항의 명칭에서 보다 광범위한 문구를 이용해 국가가 제공하는 지원을 보호하고 지원제공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란 용어를 다른 용어로 대체하거나 이를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여러 제안으로는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사회적 보조(social assistance)’,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 ‘사회 안전망(social safety net)’, ‘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 등이 있었다. 이 용어들 중에서 ‘사회적 보호’에



대한 지지가 많았는데 의장은 ‘사회적 보호’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용어로 세계인권선언의 제23조 제3항과 제25조 제2항에서도 사용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몇몇 국가들은 초안대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본 용어를 반대하는 국가들은 ‘사회보장’의 의미는 국가마다 서로 차이가 있으며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의 범위는 사회보장보다 더 넓기 때문에 보다 광의의 개념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일부 국가들은 적절한 생활수준과 관련하여 이러한 규정들의 이행과 관련된 국가의 능력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제2항 (a)호와 관련하여 동 조항에서 제안하는 서비스, 장치,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기타 지원의 범위에 대해서는 ‘적절하고 적절한 가격’이라는 표현으로 확정되었다. (b)호와 관련해서는 빈곤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장애인의 상황에 대해 고려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특히 ‘장애여성과 장애소녀를 포함한 장애아동과 노인 장애인’을 포함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이에 대해 찬반 의견이 존재했으나 다른 그룹의 장애인에 비해 빈곤의 문제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특별히 포함하는 것으로 최종 채택되었다.

## 2. 조문의 설명

### 가. 용 어

- 정수 서비스(clean water services): 정수 서비스는 식수를 포함한 모든 물을 오염으로부터 정화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충분한 양의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데 자연적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태의 물을 장애인에게 공급하고 있는 보건위생상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 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 사회적 보호는 사회적 약자의 빈곤 및 취약성 감소를 위해 마련된 정책이나 프로그램으로 충분한 노동시장의 활성화, 위험에 대한 노출의 저하, 소득의 감소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고용 증대나 노동자 보호를 촉진하는 노동시장 정책, 실업·질병·장애·산업재해·고령화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사회보장 프로그램, 적합한



지원이 부족한 미혼모·장애인·노숙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인 사회지원,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지원프로그램, 아동보호와 관련된 정책 또는 프로그램이 주된 사회적 보호에 포함된다.

#### 나. 다른 조항과의 관계

제9조(접근성)와 관련하여 각 당사국은 장애인에게 공공 주택 프로그램에 대한 물리적 및 정보 접근성을 보장할 하는 의무가 있다.

#### 다. 관련된 국제규범과 사용례

본 조항의 명칭과 관련하여 세계인권선언 제23조 제3항<sup>65)</sup>과 제25조 제2항<sup>66)</sup>에서도 ‘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본 조항의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절한 생활수준의 증진과 생활 여건의 지속적인 개선과 관련해서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1조 제1항<sup>67)</sup>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는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추가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장애인권리협약의 동 조항에서는 국제협력에 대한 규정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다만 본 협약 제32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국제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2항 (a)호의 깨끗한 식수 접근과 관련하여서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4조 제2항 (h)호<sup>68)</sup>와 아동권리조약 제24조 제2항 (c)호<sup>69)</sup>에 규정되어 있다.

65) 모든 근로자는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적 존엄에 합당한 생활을 보장하여 주며, 필요할 경우 다른 사회적 보호의 수단에 의하여 보완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66) 모자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어린이는 부모의 혼인 여부에 관계 없이 동등한 사회적 보호를 향유한다.

67) 본 조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취지에서 자유로운 동의에 입각한 국제적 협력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68) (h) 적절한 생활조건, 특히 주거, 위생시설, 전력 및 용수공급, 운송 및 통신 등과 관련한 생활조건을 향유하는 것“

69) (c) 환경오염의 위험과 손해를 감안하면서, 기초건강관리 체계 안에서 무엇보다도 쉽게 이용가능한 기술의 적용과 충분한 영양식 및 깨끗한 음료수의 제공 등을 통하여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한 조치



### 3. 내용 및 의의

본 조항은 두 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항에서는 장애인의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환경조건을 지속적으로 증진할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사회적 보호와 이를 이행할 조치에 대해서 일부 사례를 제시하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장애인과 그 가족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생활여건을 지속적으로 증진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적절한 생활수준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에서 파생되는 깨끗한 물, 사회보호와 빈곤감소, 적절한 주거 등에 대한 권리는 모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누리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정수(淨水) 서비스와 관련하여 물은 제한된 천연자원이고 생명과 건강에 필수적인 공공재이다. 적정량의 안전한 물은 탈수로 인한 사망을 방지하고, 물과 관련된 질병의 위험성을 감소시키며, 개인적이고 가사적인 위생요건을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물은 식량을 생산하고, 환경 위생을 확보하고,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보장하고, 문화적 생활을 향유하는데 필수적이다. 깨끗한 물에 대한 권리는 안전하고 물리적으로 이용가능하고 비용상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물과 관련하여서도 가용성, 수질, 접근성의 구성요소가 적용된다. 가용성은 각 개인이 용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물의 공급을 의미한다. 수질은 개인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고 안전한 물의 질을 의미하며, 접근성은 물과 관련된 적절한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 물과 관련된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해 지불이 가능한 경제적 접근성을 포함하여 가장 취약하고 주변화된 인구 계층을 포함한 모두에게 어떠한 차별 없이 접근 가능해야 하며 물과 관련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을 말한다.

제2항은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를 위한 각 당사국이 취할 조치들의 사례를 나열한 개방적 규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그 조치는 비단 본 조항에서 제시되어 있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특히 주거와 관련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4호에서는 적절한 주거의 기준은 사회,



경제, 문화, 기후, 생태적 요인 등에 따라 결정되기는 하나 주거에 대한 권리의 측면에는 점유의 법적 보장, 서비스·물자·시설·인프라에 대한 가용성, 비용의 적정성, 거주 가능성, 접근성, 위치, 문화적 적절성이 포함된다고 언급하였고, 이러한 내용들은 본 조항에서도 적절히 반영되었다.

동 조항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위한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는 중요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해당한다. 각 당사국들은 모든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동 조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을 위한 주거 등의 삶의 수준 및 사회적 보호 보장에 대한 권리의 중요성은 인지되고 있으나 주요 자원의 부족과 기타 여러 제약이 있는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동 조항의 완전한 이행을 실천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의 실현은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제협력을 통해 동 조항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에 대한 최소한의 핵심적 의무는 즉각적인 국가의 의무로 유예될 수 없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각 국가의 조치는 제2항에서 명시된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다양한 각국의 상황에 따른 조치들이 모두 포함된다.



## 제29조 정치와 공적 생활 참여

당사국은 장애인,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정치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다음의 사항을 이행한다.

- (a) 장애인이 투표하고 선출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포함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자유롭게 선택된 대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정치적 및 공적 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하도록 특히 다음의 사항을 통해 보장한다.
  - (i) 투표 절차, 시설 및 자료가 적절하고 접근가능하며 사용 및 이해가 쉽도록 보장한다.
  - (ii) 필요한 경우 보조기술 및 새로운 기술의 사용을 촉진하면서, 장애인이 선거와 국민 투표에서 아무런 위협 없이 비밀투표를 할 권리, 정부기관의 모든 직급에 입후보하며, 효과적으로 봉직하고, 공공직능을 수행할 권리를 보호한다.
  - (iii) 유권자로서 장애인의 의지를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보장하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장애인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선택한 사람에 대해 투표하도록 지원한다.
- (b) 장애인이 공적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차별 없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증진하고 다음을 포함하여 이들의 공적 활동 참여를 장려한다.
  - (i) 국가의 공적, 정치적 생활과 관련된 비정부 기구 및 협회, 그리고 정당의 활동과 행정에 참여
  - (ii) 국제적, 국내적, 지역적 그리고 지방적 수준에서 장애인을 대표하는 장애인 단체의 구성과 참여

### 1. 배 경

동 조항은 장애인의 공적 및 정치적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특히 동 조항의 구성에 있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5조와 여성차별철폐협약 제7조와 같은 유사 조항을 이용하면서도 보다 강력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데 합의가 이루어졌다. 여성차별철폐 위원회의 일반논평 18번과 23번이 동 조항과 관련하여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여성차별철폐협약 제7조에서는 정치적 및 공적 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남성과 동등한 향유를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협약은 이 조항을 장애인에게 적용하여 본 협약의 취지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였다.

동 조항 용어 사용에 있어 ‘시민(citizen)’이라는 단어를 ‘사람(person)’으로 수정



하여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 사용된 단어와의 일관성을 유지하였으며, 여러 당사국 정부에서 영주권자와 같은 비시민권자도 투표할 권리가 있으므로 장애인에게도 시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본 협약보다 약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각 문장에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위에서’라는 표현을 추가함으로써 비장애인들이 행사하지 못하는 정치적 권리까지 장애인에게는 추가적으로 부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강조하였다.

(a)항에서는 장애시민단체의 제안을 받아들여 ‘특히, 다음의 사항을 통해’ 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다양한 실례 혹은 방법이 존재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고, ‘시설 및 자료(facilities and materials)’라는 용어를 추가하여 투표를 비롯한 모든 정치활동에서의 장애인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활동 보조는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경우에 장애인들이 신뢰하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합의가 있어 동 항에 반영되었다.

(a)항의 세부 호에서는 장애인에게 완전한 형태의 비밀투표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무런 위협 없이’라는 표현이 추가되었다. 또한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에 있어 장애인이 선택한 사람을 통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치적 권리에서 투표할 권리 외에 정치활동을 수행하고 당선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므로 이러한 권리도 모두 언급하자는 제안이 반영되었다. (b)항에서는 ‘공적활동(public affairs)’라는 용어가 ‘공적행정(public administration)’이라는 용어보다 포괄적이므로 여러 국제 협약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공적활동’이라는 용어를 채택하였다.

IDC는 동 조항의 핵심 사안은 장애인이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보장받는다라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일부국가와 IDC는 모든 정책에서 장애인의 관점이 반영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본 협약이 각 당사국들로 하여금 모든 공공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장애인과 논의하고 장애인이 참여하도록 명확하게 보장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장애인의 관점은 기회 도입 단계부터 반영되어야 하며 추후에 추가되는 형식으로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대부분 반영되지 못하였다.



## 2. 조문의 설명

### 가. 용어

- **정치적 및 공적생활(political and public life):** 이 용어는 국제적, 국내적, 광역적, 지역적 수준의 공공 행정 및 정책의 입안과 이행의 모든 요소들을 포함한다. 또한 이 개념은 공의회, 지역위원회 및 정당, 노동조합, 직종별·산업별 협회, 장애단체, 공동체 기구, 정치적 및 공적 생활에 관련된 기타 기구와 같은 조직들을 포함하는 시민 사회의 여러 양상들을 포함한다.<sup>70)</sup>

### 나. 다른 조항과의 관계

- **제9조(접근성):**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장으로 장애인이 갈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며, 후보자·정당·공약 등 다양한 선거 및 정치활동과 관련한 정보 수집에 대한 접근성 보장이 필요하다.
- **제21조(의견·표현 및 정보접근의 자유):** 정치적, 공적 활동을 위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로이 표현할 것을 보장받는 정치 체제의 틀 안에서 평등이 달성되어야 한다. 장애인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왜곡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부당한 영향력이나 강제력 없이 후보자에 대해 자유로이 투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유롭게 정부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있어야 한다.

### 다. 관련된 국제규범과 사용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5조<sup>71)</sup>에서는 어떠한 차별이나 불합리한 제약 없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보장하

70) 여성차별철폐협약 위원회 일반논평 23번

71) 모든 시민은 제2조에 규정하는 어떠한 차별이나 또는 불합리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다음의 권리 및 기회를 가진다.

- (a)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
- (b) 보통, 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투표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선거인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을 보장하는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피선되는 것
- (c) 일반적인 평등 조건하에 자국의 공무에 취임하는 것



고 있다. 또한 여성차별철폐협약 제7조<sup>72)</sup>에서는 남녀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여성에게 선거 및 피선거권에 대한 향유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적 및 공적 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3. 내용 및 의의

본 조항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5조와 여성차별철폐협약 제7조를 적절히 반영하여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투표하고 피선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공무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고 있다. 각 당사국은 정치적 및 공적 생활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고 장애인이 이러한 영역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향유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진다.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5호에 의하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5조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는 법으로 제정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로 법으로 확정된 정신적 무능력은 투표할 권리나 직책을 맡을 권리를 거부당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논하고 있어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정신장애인의 정치 및 공적 생활 참여에 대한 권리 보장은 제한적으로 행사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것은 장애인의 법적능력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동 조항은 장애인이 정치적 및 공적 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예를 들면 활동보조인), 장소에 대한 접근성 보장, 자유로운 의사표현 및 선택의 자유,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 보장에 대해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72) 당사국은 국가의 정치적 및 공적 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다음의 권리를 여성에게 확보하여야 한다.

- (a) 모든 선거 및 국민투표에서의 투표권 및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모든 공공기구에서의 피선거권
- (b) 정부정책의 입안 및 동 정책의 시행에 참여하며 공직에 봉직하여 정부의 모든 직급에서 공공직능을 수행할 권리
- (c) 국가의 공적, 정치적 생활과 관련된 비정부기구 및 단체에 참여할 권리



###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스포츠에 대한 참여

1. 당사국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문화생활에 참여할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장애인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a) 접근 가능한 형태로 된 문화적인 자료에 대한 접근을 향유한다.
  - (b) 접근 가능한 형태로 된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연극 및 기타 문화적 활동에 대한 접근을 향유한다.
  - (c) 극장, 박물관, 영화관, 도서관과 여행 서비스와 같은 문화 행사 또는 서비스를 위한 장소에 대한 접근과, 국가의 문화적 명소 및 유물에 대한 접근을 최대한 향유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신의 이익 뿐 아니라, 사회의 번영을 위해서, 그들의 창의적이고 예술적이며 지적인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당사국은 장애인이 문화적인 자료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들이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장벽의 요소가 되지 않도록 국제법에 따라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수화 및 농문화를 포함하여 그들의 특수한 문화 및 언어 정체성에 대한 인지 및 지원을 받아야 한다.
5.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레크리에이션, 여가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a) 장애인이 주류 스포츠 활동의 전 영역에서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증진한다.
  - (b) 장애인이 장애 특화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조직하고 개발하며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적절한 지침, 훈련 및 자원의 공급을 장려한다.
  - (c) 장애인이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장소 및 여행지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d) 장애아동이 교내 활동을 포함하여 놀이,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e) 장애인이 레크리에이션, 여행, 여가 및 스포츠 활동의 구성과 관련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1. 배 경

동 조항은 장애인의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스포츠 참여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모든 국가들의 공감을 얻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



러한 여가활동,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참여와 문화생활 참여는 별도로 다루되 두 가지 주제는 같은 조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으며, 동 조항의 범주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광과 아동의 놀이에 대한 권리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조항에 반영되었다.

IDC는 제3항에서 지적재산권이 언급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내용을 동 조항이 아닌 제21조(의견·표현 및 정보접근의 자유) 또는 제9조(접근성)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하였으나 반영되지는 못하였다. 또한 제5항(b)호에서 ‘기회’라는 용어는 다양한 수준과 차원의 참여 및 조직, 개발을 내포할 수 있으므로 기회가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되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회’를 ‘동등한 기회’라고 수정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이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유사한 논리로 제5항(c)호에서 ‘접근’을 ‘완전한 접근’으로 수정하자는 제안을 하였는데, 이는 접근성이라는 용어가 장애인이 장소에 다다를 수 있을 권리의 획득뿐만 아니라 해당 장소의 모든 서비스와 경치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또한 동 호에 레저가 추가되지 않는다면 공공 공원과 같은 장소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제안 역시 반영되지 못하였다.

## 2. 조문의 설명

### 가. 용 어

- 여가와 레크리에이션(leisure and recreation): 레크리에이션은 비교적 조직적이며 사회적 편익을 강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 공간에서의 활동과 경험을 의미한다. 산업기관에서 직원 연수교육 시 행해지는 심성수련, 게임, 노래, 춤, 스포츠 등과 같은 각 활동이 이에 포함된다. 반면 여가는 포괄적이고 덜 조직적이며 개인적인 동시에 쾌락과 자기표현과 같은 내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으로 독서나 TV시청, 음악 감상 등이 여가활동에 속한다. 레크리에이션은 넓은 의미에서 이성화된 여가의 형태이며 즐거움의 향유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 **농문화(deaf culture):** 농문화 즉, 청각장애인의 문화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 청각장애인은 청력이 상실되었거나 약화되었기 때문에 시각적인 수단인 수화 또는 문자를 기초로 한 청각장애인의, 청각장애인에 의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집단적, 창조적인 총체로 농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이러한 문화에는 의사소통, 사회적 의례, 예술, 연예, 레크리에이션, 종교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 **주류 스포츠 활동의 참여(participation in mainstream sporting activities):** 장애인의 장애를 이유로 일반적인 주류 스포츠 활동에서 무조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청각장애인은 골프, 테니스, 배드민턴, 볼링, 당구와 같은 구기종목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 나. 다른 조항과의 관계

- **제9조(접근성):** 문화적 자료와 같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활동을 하기 위한 장소에 대한 접근과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동 조항과 함께 그 의무가 준수되어야 한다.
- **제21조(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성):** 문학, 연극 등의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은 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사 및 표현의 자유가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다. 관련된 국제규범과 사용례

‘장애인의 기회평등에 관한 표준규칙’의 규칙 10(문화)<sup>73)</sup>은 장애인들 역시 다

73) 당사국들은 장애인들이 동등하게 문화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통합되도록 보장할 것이다.

1. 당사국들은 장애인들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 도시 또는 시골지역에서 장애인들이 창조적이고 예술적이고 지적인 잠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한 활동의 예로는 춤, 음악, 문학, 연극, 조형예술, 그림, 조각이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인형극, 낭송, 이야기와 같은 전통적이고 현대적인 예술의 형태가 강조되어야 한다.
2. 당사국들은 극장, 박물관, 영화관, 도서관과 같은 장애인을 위한 문화 공연 및 서비스 장소



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문화활동에 참여하여 예술적이고 지적인 잠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이용가능성과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며 기술 및 장비 등에 대한 개발을 해야 한다. 동 표준규칙의 규칙 11(레크리에이션과 스포츠)<sup>74</sup>에서는 장애인들이 레크리에이션과 스포츠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활동장소, 프로그램, 직원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장애인의 특수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 활동에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 합리적인 배려, 동등한 기회보장과 훈련 등이 마련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 3. 내용 및 의의

동 조항은 다섯 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항에서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등에 관한 권리 향유와 접근성의 보장을 언급하고 있다. 모든 문화활동을 위한 자료는 반드시 장애인이 접근 가능해야 하며 물리적 장소에 대한 접근성 역시 보

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가능성을 활성화해야 한다.

3. 당사국들은 장애인이 문학, 필름, 연극에 접근 가능하도록 특수기술 장비 개발 및 사용을 시작해야 한다.
- 74) 당사국들은 장애인이 레크리에이션과 스포츠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갖고 있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1. 당사국들은 장애인들이 레크리에이션과 스포츠를 위한 장소, 호텔, 해변, 운동장, 체육관 복도 등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그러한 조치로는 접근성 방법의 개발을 위한 과제를 포함하여 레크리에이션 및 스포츠 프로그램 직원을 위한 지원, 그리고 참여, 정보, 훈련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한다.
  2. 관광공사, 여행사, 호텔, 자발적인 단체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 또는 여행기회를 계획하는 기타 단체는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를 고려하여 모든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 스포츠 단체들은 스포츠 활동에 있어 장애인들의 참여 기회를 개발하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일부 경우에 있어 접근성 조치들은 참여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특수설비 또는 특수게임이 필요하다. 당사국들은 국내 및 국제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지원해야 한다.
  4.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다른 참여자들과 동등한 수준의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5.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할 때 장애인 단체와 논의해야 한다.



장되어야 한다. 제2항 이후부터는 문화, 예술, 스포츠 등의 영역에서 장애인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 실현을 위한 각국의 조치를 언급하는 것으로 구성되어있다. 제2항은 권리실현을 위한 조치에 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권리의 향유에 관한 부분이다. 주목할 점은 제3항과 제4항을 통해 장애인의 지적재산권<sup>75)</sup>과 청각장애인의 문화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말이 아닌 손으로 표현되는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청각장애인의 문화적, 언어적 정체성의 보장은 일반원칙에서도 제시되고 있는 장애의 다양성과 언어 및 의사표현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5항 (a)호는 장애인을 위한 주류 스포츠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더불어 제5항 (b)호에서는 장애인 특유의 스포츠에 대한 촉진시켜야 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제5항 (a)호와 (b)호는 적절히 균형을 맞추어 보장될 필요가 있다.

75)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7호에 의하면 지적재산권은 국가가 발명과 창작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저작물의 전파 및 문화적 정체성의 개발을 장려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과학적, 문학적 및 예술적 창작품의 완전성을 보전하는 우선적인 수단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인권과 달리 지적재산권은 일반적으로 일시적인 성격의 것이며, 철회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허가되거나 양도될 수 있다. 자신의 과학적, 문학적 및 예술적 저작물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및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혜택을 받을 권리는 예술, 과학 및 사회 전반의 발전에 대한, 그리고 사회 전반의 발전에 대한 창작자들의 활발한 기여를 장려하도록 한다.



## 제31조 통계와 자료 수집

1. 당사국은 이 협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통계자료 및 연구 자료를 포함한 적절한 정보를 수집한다. 이러한 정보의 수집과 유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 (a) 장애인의 사생활 존중 및 비밀보장을 위하여 자료보호에 관한 입법을 포함하여 합법적으로 제정된 보호수단을 준수한다.
  - (b) 통계자료의 수집과 이용에 있어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윤리적 원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허용된 규범을 준수한다.
2. 이 조항에 의거하여 수집된 정보는 협약하의 당사국의 의무 이행을 평가하기 위해서, 또한 장애인의 권리행사에 있어서 그들이 직면하는 장벽들을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분산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이러한 통계를 배포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한다.

## 1. 배 경

자료수집과 관련하여 별도의 조항을 둘 것인지에 관해 찬반의견이 있었다. 조항의 존치를 지지하는 당사국들은 적절한 자료 수집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욕구를 분석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본 협약에 자료 수집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다면 각 당사국 정부가 보다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해서 관련 있는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하고 이를 정책마련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의사를 표명한 국가들은 사생활 권리에 대한 존중과 정보가 오용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본 협약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통계는 정책 도구로서 유용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료 수집에 소비될 자원들을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IDC에서는 단지 장애인에 대한 조사가 아닌 일반적인 통계조사가 필요하며, 당사국은 이러한 통계의 보급에 책임을 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통계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IDC의 이러한 주장은 일부 반영되어 동 조항 제3항으로 규



정되었다.

수차례의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협약에서 통계 및 자료 수집에 대한 사항이 하나의 조항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통계 및 자료수집에 관한 내용은 모니터링과는 별도로 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니터링 조항에 통합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수집된 자료에 대한 적절한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오용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 2. 조문의 설명

### 가. 다른 조항과의 관계

- 전문 (g)호: (g)호에서는 장애관련 문제를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한 정책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많은 부문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동 호에서는 직접적으로 통계와 자료수집의 의무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장애이슈를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수집하고 통계를 분석 및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나. 관련된 국제규범과 사용례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권고 제5호(정보수집과 분석 및 지표의 개발)의 내용 및 표현을 차용하되 지나치게 세부적인 내용은 열거하지 않고 간소화된 형태로 구성하였다. 동 호에 관한 논평은 아동권리의 실현에 있어 차별이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집된 아동에 대한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이행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권리협약의 정부보고서 작성지침은 본 협약 전 분야에 대한 자세히 분류된 통계적 및 기타 정보를 요구한다. 이는 단순히 정보 수집을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의 설립이 아니라 수집된 자료가 문제를 확인하여 아동을 위한 모든 정책 개발에 정보를 줄 수 있도록, 그 자료를 평가하고 이행에 있어 진행정도를 측정하도록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료 수집은 ‘장애인의 기회평등에 대한 표준규칙’의 규칙13(정보와 조사)에서의 권장사항이기도 하다. 이에 의하면 당사국은 장애인의 생활상태에 대



한 정보 수집 및 보급에 궁극적인 책임이 있으며, 모든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활성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성별에 따른 통계와 장애인의 실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다각적인 분야의 조사가 진행되도록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조사과정에서는 개인의 사생활과 존엄성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조사에 있어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결과와 경험을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 3. 내용 및 의의

동 조항의 구성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둘째, 수집된 정보의 올바른 사용과 구성요소별 자료수집, 셋째, 통계의 보급 및 모든 사람들에 대한 자료의 동등한 접근성 보장이다.

본 협약에 통계와 자료수집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키는 것은 장애인들의 실태 및 욕구를 조사, 분석하여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마련은 본 협약의 충실한 실현을 위한 의무의 준수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보 수집은 당사국 내에서 국가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표를 통해 확보 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적합한 연구 기관과 협력해야 하며 양적, 질적 연구를 통해 이행의 진행에 대한 완전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자료의 평가에는 본 협약이 보장하는 모든 권리에 관련된 지표의 개발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장애인들의 사생활 침해 방지, 사생활의 권리에 대한 존중, 그리고 정보가 오용될 위험성에 대해 일부 국가들의 우려하는 바가 있어 제1항 (a)호에서는 합법적으로 사생활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의 마련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항 (b)호에서는 반드시 통계의 윤리원칙을 준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장애와 관련하여 수집된 모든 자료는 절대로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고려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본 조항은 본 협약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필수적 요소이다. 따라서 국가가 본 조항에 근거하여 즉각적인 통계 작성 및 관리의 의무 및 지속적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할 점진적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즉, 장애차별의 현실과 문제파악을 위하여 정확한 통계의 작성과 관리는 필수적인 것이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수집되는 개인의 사적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과 윤리원칙을 준수한 조사과정 및 자료의 사용에 관해서 국가가 협약의 정신과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 제32조 국제협력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목적과 원칙의 실현을 위한 국내적인 노력의 지원에 있어, 국제협력과 국제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와 관련되어 당사국간 또는 당사국 사이에서, 그리고 필요한 경우 국제적 및 지역적 기구와 시민단체 특히 장애인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 (a) 국제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국제협력에 장애인을 포함시키고,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
  - (b) 정보, 경험, 훈련 프로그램 및 모범 사례의 교류 및 공유를 포함한 역량 구축을 촉진하고 지원
  - (c) 과학적 또는 기술적인 지식에 대한 연구와 접근에 있어 협력을 촉진
  - (d) 필요한 경우, 기술 이전을 통한 접근 가능한 기술과 보조기술에 대한 접근과 공유를 촉진하는 것을 포함하여, 기술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
2. 이 조항의 규정은 이 협약 하에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당사국의 의무를 저해하지 않는다.

## 1. 배 경

국제협력이 본 협약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국제협력이 별도의 조항에서 다루어져야 하는가의 여부와 국제협력이 어느 정도까지 자세히 다루어져야 하는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의 성안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다.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들은 국제협력에 관한 개별조항을 선호하였고 이러한 국가들의 요구에 따라 최종적으로 별도의 독립적인 국제협력 조항이 마련되었다. 별도조항으로 유보하고자 하는 국가들은 국제협력이 일부 국가들에게 있어 본 협약의 불이행을 정당화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별도 조항을 지지한 아프리카 지역 등의 국가에서는 본 협약의 이행 및 준수를 위해 경제적, 기술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U는 논의과정에서 국제개발지원의 기여국으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협력뿐만 아니라 여러 당사국간, 그리고 각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간 협력 등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점은 제1항의 내용에 반영되었다. 또한 IDC는 모든 국제 협력 정책 및 프로그램의 주류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장애인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특정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국제 협력을 위해 마련된 기존의 기금을 적절히 사용할 것을 명시하는 내용을 추가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여기에 국제협력 프로그램은 항상 장애인의 이해를 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제 개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 대표 기구가 항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제 협력 프로그램은 또한 본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 구축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2. 조문의 설명

### 가. 다른 조항과의 관계

- 전문 (I)호: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동 조항은 국제협력이 우선적으로 개발도상국에 지원이 되며, 그 목적은 상대적으로 열악하거나 불리한 상황에 있는 장애인의 생활환경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 나. 관련된 국제규범과 사용례

동 조항에서 규정된 내용은 다음의 아동권리협약 제4조에서 차용하였다. 아동권리협약의 경우에는 국제협력이 전 조항에 걸쳐 언급되어 있다.

“당사국은 본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그리고 기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 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 내용 및 의의

제1항은 국제협력에 관한 예시적 내용으로 국제협력에 있어서의 장애인의 참여와 접근성, 정보를 포함한 자원의 공유와 지원, 기술적 및 과학적 연구의 협력,



기술적 및 경제적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즉 본 조항은 포괄적인 규정으로서 동 조항에서 언급되어 있는 협력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다양한 유형의 국제협력이 가능하다.

제2항은 본 협약 이행의 일차적 의무는 각국에 있음을 밝히는 내용으로 국제 협력에 관한 동 조항이 각국의 협약의 의무이행에 있어 편견 없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당사국이 자원이나 기술의 부족, 경제적인 곤란 등에 대하여 국제적 협력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근거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불이행을 정당화하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모든 당사국들은 본 협약의 불이행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국제협력의 불이행이나 부족함을 주장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각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수준의 차이로 말미암아 장애인을 위한 법률, 정책, 프로그램, 편의시설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의 국가에 살고 있는 장애인으로서 많은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한계를 갖고 있다. 인권이라는 개념을 변화, 발전하여 보편적인 것으로 승인을 얻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저개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국제협력을 통해 자원의 부족을 경감시켜주며, 필요한 자원과 기술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권리신장에 도움을 주는 것은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보편적 인류애와 인권실현의 발로이다. 본 협약의 충실한 준수를 위한 선진국의 기술 지원, 경제적 지원, 선진사례 등은 장애인이 사회에 완전히 통합되고 자신의 역할을 증대 및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것이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협약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국제협력 여부와 무관하게 각국 정부가 충실히 수행할 것인가의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이러한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보완적이고 협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 당사국들의 노력과 협약의 이행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며, 이러한 이해 아래 각 당사국은 경제적, 기술적 지원 및 협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본 협약의 의무를 이행하고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실현해야 한다.



## 제 3 절 장애인권리위원회와 모니터링

### 제33조 국내이행과 모니터링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들을 위해 당사국의 조직체계에 따라 정부 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담부서를 지명하고, 다양한 부문에서 다양한 수준으로 관련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 내에 조정기구를 설립 혹은 지명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2. 당사국은 자국의 법적·행정적 체계에 따라 본 협약의 이행을 증진·보호·감독하기 위해 당사국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독립적인 기구를 포함한 체제를 유지, 강화, 지명 혹은 설치해야 한다. 그러한 기구를 설치 또는 지명할 때, 당사국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기구의 지위 및 역할에 관한 원칙들을 고려해야 한다.
3. 시민사회, 특히 장애인과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모니터링 과정에 충분히 포함되고 참여 되어야 한다.

동 협약은 제33조 제1항에서 동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들을 다루는 전담 부서(focal point)를 지명하고, 협약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정기구의 설립 혹은 지명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동 협약의 이행을 감독하고,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국가수준의 독립적 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국가인권기구와 관련된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니터링 과정에 장애인을 포함한 단체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 제1항의 의미

##### 가. 전담부서 (focal points)

여기서 의미하는 정부 내 전담부서의 지명은 아동권리위원회가 우리나라 제2차 정부보고서 최종전해에서 언급한 공공기관에 의한 모니터링 또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가 이야기한 전담부서(focal points)와 동일한 의미로,



법적·행정적 체제 내에서 동 협상 권리 이행을 위한 지원 및 보장, 촉진시키기 위한 정부내 기구를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정부 내 전담부처는 현재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정책팀이 지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 나. 조정기구

장애인권리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용이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내에 조정기구를 설치, 지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여기서 조정기구는 아동권리협약 제2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에 비추어 보아 상설기구를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장애인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조정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갖는 상설조정기구의 설치를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와 관련해서는 장애인정책 총괄·조정 및 평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가 있다(장애인복지법 제11조).<sup>76)</sup> 그러나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는 상설기구가 아닌 비상설기구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2. 제2항의 의미

동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및 장애인 권리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독립적 국가기구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관한 원칙(paris principle)<sup>77)</sup>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동항의 의미를 여타 다른 국제인권조약(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및 조약감시기구(treaty body)의 일반논평과 비교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각 국의 국가인권기구에게 이러한 역할을 맡기고 있는 것을 알

76) 참고로 아동권과 관련해서는 국무총리 산하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이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4조의2)

77) 이 원칙은 1992년 3월 3일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 1992/54; 1993년 12월 20일 유엔 총회결의 48/134 부록으로 채택되었다. 이 원칙을 제정하는 회의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기 때문에 이 원칙을 “파리원칙 Paris Principles”이라고도 한다.



수 있다.

이러한 독립적 국가기구의 역할 및 기능과 관련해서는 제34조에 의해서 구성되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및 최종견해를 통해서 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 3. 제3항의 의미

동 조항 제1항에서의 조정기구,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립적 국가기구가 모니터링과 관련된 활동을 할 경우 장애인 및 장애관련단체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장애인 및 장애관련단체들의 참가를 통해 모니터링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



## 제34조 장애인권리위원회

1. 다음의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이 협약 발효 시 12명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추가로 60개국이 비준 또는 가입한 후에 위원회 위원은 최대 18명으로 6명이 추가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고매한 인격을 지니고 본 협약이 다루는 분야에서 능력과 경험을 인정받아야 한다.
4. 선출시에는 공평한 지역적 안배, 주요 법체계 및 상이한 문명형태의 대표성, 균형 있는 성별 대표성 및 장애인 당사자인 전문가의 참여를 고려한다.
5.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 회의에서 각 당사국이 자기나라 국민 중에서 후보자 1명을 지명한 후보자 명부에서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이 지명한 후보자 명부에서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각 당사국은 자기나라 국민 중에서 후보자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당사국의 3분의2가 의사정족수를 구성하는 이 회의에서 위원회 위원은 출석하여 투표한 당사국 대표로부터 절대 다수표를 획득한 자 중 최다득표자 순으로 선출된다.
6. 최초 선거는 이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6월 안에 실시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최소한 각 선거일 4월 전에 모든 당사국에 서한을 발송하여, 2월안에 후보자 명단을 제출해줄도록 요청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와 같이 지명된 모든 후보자의 명부를 지명국을 표시하여 알파벳순으로 작성하며, 이 명부를 이 협약의 당사국에 송부한다.
7.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이들은 1회 재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초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6명의 임기는 2년 만에 종료한다. 이들 위원 6명은 최초 선거 직후 이 협약의 제5항에 규정된 회의의 의장이 추천으로 선정한다.
8. 6명의 추가 위원회 위원의 선출은 본 조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투표로 이루어진다.
9. 위원회의 위원이 사망, 사임하거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 위원을 지명한 당사국은 이 위원의 잔여 임기 동안 재임할, 본 조항의 관련 항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고 자격을 갖춘 다른 전문가를 지명한다.
10. 위원회는 자체 의사규칙을 제정한다.
1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위원회가 이 협약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원과 시설을 제공하고, 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소집한다.
12.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제연합 총회의 승인을 얻고 총회가 결정하는 기간과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의 재원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13. 위원회 위원은 국제연합의특권및면제에관한협약의 관련부분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제연합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중인 전문가로서의 편의와 특권, 면제를 향유한다.



## 1. 장애인권리위원회 개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성·장애 및 지역적 배분을 고려한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60개국의 비준 또는 승인 이후에는 최대 18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위원들은 4년 임기로 연임할 수 있으며,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정부보고서 검토<sup>78)</sup>와 선택의정서상의 개인 통보에 대한 심사 및 중대한 침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inquiry)를 수행할 수 있고 연례 보고서를 유엔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조약감시기구의 기능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7개의 국제인권조약은 당사국에게 국내에서 인권을 보호, 증진할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국가가 비준(ratification), 가입(accession), 계승(succession) 중 하나의 과정을 통해 조약을 수락하면 그 국가는 해당 조약이 명시하는 권리들을 이행할 법적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점에 불과하다. 비준 자체가 권리의 실제적 이행을 보장하기에는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각의 인권조약은 독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립하였고, 이들 위원회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조약의 국내 이행을 감시한다.<sup>79)</sup>

78) 조약기구가 당사국의 보고서를 심의한 후 제출하는 견해와 권고를 공포하며 이를 최종견해라 한다. 최종견해는 당사국의 조약 이행의 긍정적 측면과 당사국이 취해야 할 추가조치를 권고하는 부분으로 나뉜다. 조약기구들은 구체적이고, 집중적이고, 이행 가능한 최종견해를 제출하고 있으며, 최종견해에 대한 효과적인 후속조치가 취해지도록 하는데 점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각 조약의 문구에 따라 일부 위원회의 최종견해는 “최종논평”이라 지칭되기도 한다.

79) 1.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최초로 세워진 조약감시기구로서, 1969년부터 인종차별철폐협약의 이행을 모니터링 한다.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는 사회권규약에 의거하여 경제사회위원회의 모니터링 수입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1987년 세워졌다. 3. 자유권위원회는 자유권규약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1976년 세워졌다. 4.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1982년 이래로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을 모니터링해 왔다. 5. 1987년 세워진 고문방지위원회는 고문방지협약의 이행을 모니터링 한다. 6. 아동권리위원회는 1990년이래로, 아동권리협약 체결국들의 협약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 군인과 아동 착취에 관한 두개의 선택의정서 이행도 모니터링 하고 있다. 7.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는 2004년 3월 첫번째 회기를 열었고, 이주노동자협약의 이행을 모니터링할 것이다.



이러한 위원회들은 장애인권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당사국의 국내이행에 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수의 기능을 수행한다. 즉, 당사국들로부터 해당 조약 이행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기록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받아 검토할 권한을 가지며, 당사국이 이러한 보고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지침들의 발간, 조항의 해석을 제시하는 일반논평 발행, 조약과 관련된 주제 토론 등을 개최한다.

또한 몇몇 위원회는 당사국들에 의한 조약이행 강화를 위한 다수의 부가적 기능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당사국이 해당 협약의 개인통보제도를 인정했다면, 해당 위원회는 협약 당사국에 의하여 협약상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는 개인 통보를 심사할 수 있으며, 또한 몇몇 위원회는 진상조사(inquiries)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3.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기능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본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보고서 심사, 선택의정서상의 개인통보 및 진상조사(inquiry)는 물론 다른 주요 국제인권조약상의 위원회<sup>80)</sup>가 수행하고 있는 다수의 부가적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일반논평을 통한 장애인권리협약상의 추상적 조항이나 내용에 대한 해석 및 이행방안의 제시, 정부보고서 작성지침의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렇듯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기관이다.

80) 참고로 각 인권규약 위원회들의 위원 수는 다음과 같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 18명, 자유권위원회(HRC): 18명,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18명,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3명, 고문방지위원회(CAT): 10명, 아동권리위원회(CRC): 18명,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위원회(CMW): 10명이며 위원은 4년의 임기로 선출되고, 2년마다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선거로 선출한다.



### 제35조 당사국 보고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및 과정에 관하여 이 협약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후 2년 내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2. 그 이후에 당사국은 최소한 4년마다 후속 보고서를 제출하며, 위원회가 요청하는 그 밖의 보고서를 제출한다.
3. 위원회는 보고서의 내용에 적합한 지침을 결정해야 한다.
4. 위원회에 포괄적인 최초의 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후속 보고서에 이미 제출된 정보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당사국은 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준비 할 시, 당사국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과정에 따라 준비하고 이 협약 제4조 제3항에 규정된 조항을 적절히 고려하도록 요청된다.
5. 보고서는 이 협약상 의무의 이행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를 적시할 수 있다.

#### 1. 당사국의 보고서 제출 의무

당사국은 해당 조약의 실제적 조항들을 이행할 의무 이외에도, 해당협약이 보장하는 권리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가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지닌다.<sup>81)</sup>

장애인권리협약의 당사국은 보고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최초보고서를 해당 협약 비준 후 2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최소 4년마다 본 협약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동 협약의 각 조항들을 이행하기 위해 국가가 취한 법적, 행정적, 사법적 조치 및 조약상 권리의 실현을 저해하는 장애요소와 어려움을 기술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의 충실한 보고서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보고서 작성지침을 발행하여야 한다.

81) ‘보고서 검토를 통해 모니터링 한다’는 개념은 1956년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에서 비롯되었다. 이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들에게 인권신장을 위하여 진전된 사항을 기록한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당사국의 보고서 제출의무는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및 이후 만들어진 기타 핵심 국제인권조약에도 도입되었다.



## 2. 보고의 목적

정부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은 국제적 의무의 이행일 뿐만 아니라, 당사국내 정책수립 및 이행을 목적으로 국내 인권보호 현황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특히 보고서 준비과정은 당사국에게 다음과 같은 이익을 제공한다.

- (a) 국제인권조약과 국내법 및 국내정책간의 조화를 위해 취해진 국가의 조치들에 대한 포괄적 검토
- (b) 장애인권리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성취된 진전사항에 관한 모니터링
- (c) 장애인권리협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문제점과 불충분한 점에 대한 확인
- (d) 국제인권조약의 더욱 효과적 이행을 위한 미래의 목표와 필요성 평가
- (e)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을 설립 및 개발

정부보고서 보고제도는 해당 국가 내 인권을 증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 달성되었고, 어떠한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가늠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이다. 협약이 보장하는 모든 인권의 향유를 증진시키기 위해, 보고제도과정에서의 국민의 참여, 정부정책에 대한 공적 심사, 협력과 상호존중의 정신에서 시민사회와의 연계가 장려·촉진되어야 한다.



### 제36조 보고서 심사

1. 위원회는 각 보고서를 검토하고, 보고서에 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제안과 일반권고를 하며 이를 관련당사국에 송부한다. 관련당사국은 이에 대한 정보를 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하여 관련당사국으로부터 추가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2. 당사국의 보고서 제출이 상당히 늦어질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가 이용가능한 신뢰할 만한 정보에 기초하여 관련당사국에게 이 협약의 이행을 심사할 필요성에 대해 통지할 수 있다. 그 통지 후 3월 내에 관련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이 이러한 심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 당사국이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본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3.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모든 당사국에게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4. 당사국들은 자국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자국내 일반에게 널리 활용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보고서에 대한 제안 및 일반 권고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5.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적 자문이나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거나 지적하고 있는 당사국의 보고서를 그러한 요청이나 지적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면 동 의견 또는 권고와 함께 전문기구, 기금, 국제연합 프로그램 및 그 밖에 권한있는 기구에 전달하여야 한다.

## 1.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정부보고서 심사과정

### 가. 정부보고서 제출

당사국은 정부보고서를 유엔 공용어 중 한 언어로 작성하여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 후 사무국절차를 거친 정부보고서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연례 정기 회기들 중 한 회기동안 검토된다.

### 나. 쟁점목록(List of issues) 송부

쟁점목록은 정부보고서 심리 이전에 작성되어 보고서 검토대상국에게 이를 송부한다. 쟁점목록은 정부보고서에 누락된 내용이나 당사국의 협약 이행 상태를 위원회가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에 대한 부가적 정보에 대한 질의서이다. 이 쟁점목록은 정부대표가 받을 질문들에 대한 유용한 예상 질문지로 간주되어 정



부대표들은 이에 근거하여 심의를 준비한다.

#### 다. 쟁점목록에 대한 서면응답

당사국은 쟁점목록에 대한 질문들을 서면형식으로 제출한다. 서면응답은 보고서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며, 특히 정부가 보고서를 제출한 날짜와 그 보고서가 위원회에 의해 심사되는 날짜 사이의 간격이 큰 경우 필요하다.

#### 라. 정부보고서 심의를 위한 정보 입수

일반적으로 여타 주요 인권규약상의 위원회는 정부보고서 이외에도 다른 출처들을 통해 (특히 유엔 기구, 다른 정부간 기구, 국제 혹은 국내 NGO, 학술 기관과 언론) 해당 국가의 국내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기도 하며, 일정한 경우 유엔기구 및 NGO의 구두정보제출을 위해 특정 시간을 할당하기도 한다. 장애인권리위원회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정보를 입수하리라 예상된다.

#### 마. 정부보고서 심의

다른 위원회의 경우를 보더라도 정부 보고서를 심사하는 동안 정부대표가 회기에 참석하도록 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정부대표가 위원들의 질문에 응답하고 조약이행에 대한 그들의 노력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절차의 목적은 협약을 가능한 완전하고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정부와 건설적인 대화를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장애인권리협약의 경우에도 관련 정부대표단이 파견될 것으로 생각된다.

#### 바. 최종견해

정부보고서 심의 후 위원회는 최종견해를 채택할 것이며, 이는 검토대상국에게 협약의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격려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최종견해는 당사국이 취한 긍정적 조치들을 인정하고, 각 조항들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러한 최종견해는 국민들에게 공개되어 제공되어야 한다.



#### 사. 최종견해의 이행

공식적인 보고서 검토 과정은 최종견해를 채택함으로써 완료되나 그 이후에 국가들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후속조치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정부보고서에 기재가 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과 노력을 통해 협약상의 의무가 감독되고 계속적으로 이행될 것이다.

#### 2.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만약 당사국이 동 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위원회는 독자적으로 해당 국가의 인권상황을 검토하는 “검토 절차(review procedure)”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토절차란 당사국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련 시민단체 및 관련 유엔기구들을 통해 입수한 정보를 근거로 권고를 포함한 최종견해를 채택하는 절차이다.



### 제37조 당사국과 위원회간의 협력

1. 각 당사국은 위원회와 협력 하고 위원들이 그들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위원회는 당사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국제협력을 포함하여 국내적 역량 강화를 위한 수단과 방법을 적절히 고려한다.

동 조항은 장애인권리위원회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사국들의 협력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 협정 제35조와 제36조와 관련되어 당사국은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정보 제출 및 기타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위원회는 수집된 정보 및 자료를 토대로 당사국내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38조 위원회와 기타 기구와의 관계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 (a) 전문기구 및 국제연합의 그 밖의 기관은 이 협약 중 그들의 권한 범위 안에 속하는 규정의 이행에 관한 논의에 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가진다. 위원회는 전문기구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구에 대하여 각 기구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와 그 밖의 국제연합기관에게 그들의 활동범위에 속하는 분야에서의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b) 위원회는 위원회의 임무 수행에 있어, 적절한 경우에, 국제인권조약에 의해 설립된 기구들의 보고서 작성지침, 제안 및 일반권고와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기능수행에 있어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이들 기구와 협의한다.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다른 지역적 기구 및 UN 기구들이 많이 있다. 또한 장애인의 인권은 장애인권리협약에서만 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타 다른 국제인권조약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구들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또한 업무 및 활동을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이들 기구와의 관계정립과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

#### 1. 장애인 관련 특별보고관 (Special Rapporteur on Disability)

UN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의 사회개발위원회(Commission on Social Development)가 임명한 장애인 관련 특별보고관은 장애인과 관련된 국제기준의 각 국가들의 국내 이행 및 상황에 관한 모니터링 및 기준 제시 등 장애인의 권리와 관련된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특별보고관이다.

특별보고관은 전반적인 장애인의 인권상황에 관하여 사회개발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각국 정부들에게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취해졌던 입법적 및 행정적 조치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기도 한다.

동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책무와 유엔사회개발위원회가 특별보고관에게 부여한 책무는 서로 그 성격이 다르지만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공통 관심사에 관한 정보, 보고서 및 문서들을 교환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2. 기타 UN 기구

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UN기구가 존재한다. 장애 및 인권과 관련하여 UN인권고등판무관실, 장애와 교육은 UNESCO, 장애와 노동 분야는 ILO, 장애와 건강은 WHO, 장애와 개발은 세계은행 및 ESCAP 등이다.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이들 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동 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정보, 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다.

## 3. 조약감시기구

현재 성안된 국제인권조약의 각각의 조약감시기구들과 협력이 필요하다. 장애인권리협약이 성안되기 전에는 장애인의 권리는 기존의 국제인권조약에서 장애와의 관련성을 가지고 발달하여 왔다. 예를 들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일반논평을 통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왔으며 이에 대한 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권리위원회는 기존의 조약기구에서 언급된 장애인 권리를 더욱 발전시키고 이들 기관과의 업무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그리고, 장애인권리의 보장을 달성하기 위해 이들 기구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필요성으로 인하여 1983년 유엔총회는 인권조약기구간 조정(coordination)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인권조약기구 의장들에게 조약기구들의 업무의 향상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도록 촉구하였다. 이에 1984년 첫 의장단 회의가 열렸고, 1995년 이래로 조약기구 의장들은 1년에 한번씩 회의를 열고 있다. 7개 인권 조약감시기구의 의장들은 이 회의에서 그들이 대표하는 조약감시기구의 업무를 논의하고 조약감시기구의 전체적 효율성 증진 방안들을 검토한다. 이 회의에서 그 동안 제기되었던 사안들은 정부보고서의 간소화와 전반적 개선, 위원회간 운영방식의 조화, 국제회의들의 진척사항 파악, 재정 문제 등이다.

이러한 연례 의장단 회의는 2002년부터는 각 위원회의 의장과 두 명의 위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간 회의’로 확대되었다. 첫 번째 회의에서는 위원회간 운영방식의 조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많은 국가들은 ‘위원회간 회의’의 제도화를 환영하였다. 각 조약기구들의 참여확대로 인해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와 권고는 ‘의장단 회의’에서보다 더욱 상세화 되었다. 장애인권리위원회도 이러한 논의 구조에 참여할 것이 예상된다.

**제39조** 위원회 보고서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2년마다 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하며,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보고서 및 정보에 대한 심사를 기초로 제안 및 일반권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 및 일반권고는 당사국으로부터 논평이 있는 경우, 이와 함께 위원회의 보고서에 수록되어야 한다.

다른 조약감시기구(Treaty Body)와 마찬가지로 장애인권리위원회도 총회 및 경제사회이사회에 위원회의 활동 및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동 조항은 조약감시기구로서의 장애인권리위원회와 유엔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삽입된 조항이다. 보고서의 범위와 내용에 관해서는 특정되지 않았지만, 동 보고서에는 당사국들의 정부보고서 및 개인통보의 내용 및 요약과 해당년도의 광범위한 위원회 활동이 포함된다.

**제40조** 당사국 회의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당사국 회의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한다.
2. 이 협약이 발효된 이후 6월 내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당사국 회의를 소집한다. 추후 회의는 2년 또는 당사국 회의의 결정에 따라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소집한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제외한 다른 인권 조약은 조약감시기구 위원들의 절반을 선출하기 위하여 매 2년마다 주로 유엔본부에서 당사국 회의를 개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권리협약도 제34조 제5항에서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위원을 당사국회의에서 선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협약 제47조는 장애인권리협약의 개정을 위해 당사국 회의를 개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협약의 이행과 장애인권리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당사국들이 정기적으로 비공식회의를 개최하기도 하며, 이것은 대부분의 조약감시기구에서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다.



## 제 4 절 절차적 규정

당사국이란 국제법상 조약에 의해 구속되는 것에 동의한 국가를 말하는 것으로 장애인권리협약의 당사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는 (1) 비준 또는 가입을 통해 조약에 구속된다는 동의를 표하고, (2) 해당 국가에 대한 조약 발효일이 지나야 한다. 또한 장애인권리협약의 당사국만이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장애인권리협약의 당사국이 되기 위한 비준, 가입, 기탁 등의 절차와 유보, 그리고 장애인권리협약의 개정 및 탈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 제41조 기탁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자이다.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가입서 및 비준서를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하여야 한다. 가입서 및 비준서가 기탁되면 유엔사무총장은 모든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제42조 서명

이 협약은 2007년 3월 30일 뉴욕에 위치한 국제연합 본부에서 모든 국가와 지역통합기구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서명이란 일반적으로 인권 조약과 같은 다자 조약에서 비준, 수락, 또는 승인 등 동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를 표명하기 전의 절차로서 서명국에 실정법적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차후에 조약으로 구속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국가의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조약의 비준을 향한 사전 준비 단계이며,



국가는 서명 이후 비준·수락·승인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기간 동안 신의성실의 원칙 하에 그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서명하고 비준을 하기 전까지 서명국은 해당 조약에 대한 국내적 승인을 구하고, 조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국내법을 정비하여야 한다.

장애인권리협약은 2007년 3월 30일 뉴욕 UN본부에서 서명을 위해 개방되며, 서명한 국가들은 장애인권리협약을 준수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 제43조 기속적 동의

이 협약은 서명국의 비준 및 서명한 지역통합기구의 공식적인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이 협약은 이 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모든 국가와 지역통합기구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국가들은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 및 가입을 통하여 본 협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비준과 가입은 장애인권리협약에 구속되겠다는 국가의 의사이다.

#### 1. 비 준

비준은 국가가 조약상의 의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국제적 차원에서 보여주는 일정 행위로서, 이를 통해 국가는 이미 이전에 서명한 조약에 구속됨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비준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비준서(instrument of ratification)”를 기탁함으로써 성립된다. 조약을 비준하기 위하여 일단 국가는 조약에 서명해야 하며, 만약 국가가 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채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표명하면, 이 절차는 “가입(accession)”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서명한 조약에 대해 국가가 얼마동안의 기한 내에 비준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해진 원칙은 없다.

#### 2. 가 입

가입은 국가가 서명하지 않은 조약에 대해 당사자가 되고자 하는 동의를 표명



하는 행위로, 유엔 사무총장에게 “가입서(instrument of accession)”를 기탁함으로써 성립된다. 가입은 비준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지닌다. 그러나 국제법상 구속력 있는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서명이 선행되어야 하는 비준과 달리, 가입은 가입서의 기탁이라는 한 가지 단계만이 요구된다. 가입이 발생하는 조건 및 관련 절차는 조약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가입은 서명의 마감 기한이 지난 경우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표명하고자 하는 국가들에 의해 이용된다. 그러나 현대의 많은 다자 조약은 서명을 받는 기간 동안에도 가입을 허락한다.

#### 제44조 지역통합기구

1. “지역통합기구”란 해당지역의 주권국가에 의해 구성된 기구로서, 이 기구의 회원국들은 이 협약에 준거하는 사안들에 대한 권한을 이 기구에 위임하였다. 이러한 기구는 이 협약에 준거하는 사안들에 대한 권한의 범주에 관하여 공식 인준서 또는 가입서를 통해 선언한다. 이후에 권한 범주 내에서 기탁인에게 실질적인 수정을 알린다.
2. 이 협약의 당사국에 대한 언급은 지역통합기구의 권한 내에서 이러한 기구에 적용된다.
3. 제45조 제1항, 제47조 제2항, 제3항의 목적상, 지역통합기구에 의해 기탁된 문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4. 지역통합기구는 권한 내의 사안들에 관하여 이 협약의 당사국인 회원국 수와 동일한 투표수로 당사국 회의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원국이 권리를 행사할 경우 지역통합기구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대로 지역통합기구가 그 권리를 행사한다면 회원국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동 조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역통합기구”란 지역적 협정 혹은 협약 등의 설립조약을 통하여 구성된 일정한 역내 주권국으로 구성된 기구이다. 이러한 기구는 설립조약에 규정된 문제들에 대하여 그 회원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 내부 절차에 따라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 비준, 수락,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정당하게 위임받은 기구로서 EU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지역통합기구는 그 회원국의 수와 동일한 투표권을 행사하며, 일반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회원국의 대표가 이를 수행한다.

**제45조 발 효**

1. 이 협약은 2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후 30일 후에 발효한다.
2. 2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공식 승인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각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약은 해당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후 30일이 되는 날 발효한다.

조약의 발효는 조약이 실제로 당사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발생하는 순간이다. 조약은 그 조약의 발효시기를 결정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보통 조약이 발효되기까지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둔다. 발효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조약 자체의 최종발효와 특정 국가에 대한 발효가 그것이다.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협약자체의 발효는 20개국의 가입 및 비준이 있는 후 30일이 경과하면 발효되며, 본 협약이 발효된 후 특정 국가에 대한 발효는 가입 및 비준 후 30일 경과된 날로부터 발효된다.

**1. 비준·가입과 발효의 구분**

국가가 조약에 구속됨에 대해 동의를 표명하는 행위인 비준·가입과 조약의 발효와는 구별된다. 비준·가입은 비준서 혹은 가입서의 기탁을 통해 조약의 법적 권리 및 의무를 수행할 국가의 의지를 보여주는 행위이며, 조약의 발효란 조약이 실제로 당사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게 되는 순간을 의미한다. 조약은 즉각적으로 발효되는 것이 아니며, 조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보통 문서의 기탁일과 발효일 사이에 간격이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그 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있다.

**2. 최종발효(제1항)**

최종발효란 이미 지속적 동의를 표명한 국가들에 대하여 해당 신규조약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문서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조약은 일정 수 이상의



국가가 비준, 승인, 수락 또는 가입함을 명시하는 문서를 UN사무총장에게 기탁한 후에 조약이 발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종 발효일까지 그 조약은 비준국, 가입국을 포함해 어떤 국가에게도 (비록 신의성실의 원칙 아래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삼갈 의무를 지니더라도)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장애인권리협약의 경우 이 기간을 2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발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특정국가에 대한 발효(제2항)

제2항은 본 협약이 발효된 이후, 본 협약의 구속을 받고자 하는 국가 및 국제기구에 대한 발효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간은 비준서의 기탁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발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가 비준 이전에 행한 서명과 관련하여 서명일은 어떠한 법적효력도 없다. 왜냐하면 서명은 국가가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는 의무 말고는 어떠한 법적 효력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 제46조 유 보

1. 이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유보는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다.

## 1. 유보의 의미

유보란 그 표현 또는 명칭이냐 어떠하든, 조약의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시에 국가가 행하는 일방적 선언으로서, 자국에 대하여 조약을 적용함에 있어 조약의 특정조항의 법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변경할 것을 의도하는 것이며,<sup>82)</sup> 이러한 유보의 의사는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시에 혹은 그 이전에 표명해야 한다.

## 2. 유보의 제한

동 조항에서는 대상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유보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유보와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해 수립되었다. 어떠한 유보가 동 규약의 대상과 목적에 양립하지 않는 유보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책무가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강행규범을 위반한 유보는 동 규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으며, 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관련이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에 있어서는 대표적으로 제15조 고문 또는 잔혹,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취급 및 형벌로부터의 자유, 제16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를 들 수 있으며 이외에도 동 협약상의 권리 및 의무의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를 회피하도록 의도된 유보 역시 대상과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보될 수 없다.

82) 비엔나조약법 협약 제2조 제1항 (d)



### 3. 유보의 효과

허용되지 아니하는 유보를 한 국가를 협약의 당사국으로 볼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의견이 나누어져 있다. 비엔나조약법협약 제19조의 해석론에 따르면 허용되지 아니하는 유보를 첨부한 국가는 문제의 유보를 철회하지 않는 한 협약의 당사국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견해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가 일반논평에서 언급하였듯이 유보국이 문제의 수락될 수 없는 유보만 제외하고 협약의 당사국으로 간주된다는 견해이다.

### 4. 유보국의 의무

만약 국가가 유보를 하였다면, 유보를 형성한 당사국은 유보된 조항상의 의무와 양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국내법 혹은 관행을 정확한 용어로 지적하고, 국내법 및 관행을 동 협약과 양립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설명하거나 또는 국내법 및 관행을 동 협약과 양립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유보의 유지에 대한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당사국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유보조항이 철회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제47조 개정

1. 모든 당사국은 이 협약의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각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지 여부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이 의정서의 각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사무총장이 송부한 날부터 4월 내에 당사국 중 최소한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에,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 하에 이 회의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 출석하여 표결하는 당사국의 3분의 2중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사무총장을 통하여 국제연합총회에 제출되며 그 후 수용을 위해 모든 당사국들에게 제출된다.
2. 본조 제1항에 따라 채택되고 승인된 개정안은 개정안이 채택된 날짜에 당사국 수의 3분의 2에 달하는 채택서가 기탁된 후 30일 후에 발효한다. 그 후, 당사국들이 자국의 채택서를 기탁한 후 30일 후에 해당 당사국에 대해 개정안이 발효한다. 개정안은 이를 수락한 당사국만 구속한다.
3. 당사국 회의를 통해 총의에 도달하면, 제34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에만 해당되는 본조 제1항에 따라 채택되고 승인된 개정안은 기탁된 채택서의 수가 개정안이 채택된 날짜에 당사국 수 3분의 2를 충족하고 30일 후에 당사국에서 발효한다.

장애인권리협약의 개정은 당사국 3분의 1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회의가 소집되며, 회의에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에 의하여 개정안이 채택된다. 채택된 개정안은 총회의 승인과 개정안 채택당시 당사국 3분의 2이상의 수락이 있으면 그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발효된다. 단 이러한 개정안은 수락을 허락한 국가에 한하여 그 효과가 인정되며, 수락 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동 협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대해서만 구속된다.



#### 제48조 협약의 폐기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 통보에 의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1년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당사국들은 장애인권리협약을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서면 통보로 장애인권리협약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서면통보가 있는 후 일년 후부터 당사국들은 협약상의 의무 이행으로부터 완전히 해제된다. 따라서 동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적법하게 종료되면, 통보를 한 당사국은 장애인권리협약을 이행할 의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 제49조 접근 가능한 형식

이 협약문은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된다.

본 조항은 장애인권리협약에서 특징적으로 규정된 조항으로서 시각 또는 청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인쇄물 또는 온라인을 통해 본 협약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점자, 음성 등 대안적인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원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본 협약 제2조 의사소통에 정의되어있는 형식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이 이루어지리라 예상된다.



## 제50조 정 본

이 협약문은 아랍어·중국어·영어·불어·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이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 전권대표들은 각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특정 정본이 우선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각 언어는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장애인권리협약의 문언은 각 정본에서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해석의 일반원칙과 보충적 수단에 의해서도 제거하지 못하는 의미의 차이가 정본간의 비교로 발견된 경우에는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고려하여 협약문과 최선의 조화를 이루는 의미를 채택해야 한다.<sup>83)</sup>

83) 비엔나 조약법 협약 제33조.



제 3 장

##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 3 장

##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 제1조

1.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하“당사국”이라 한다)은 당사국에 의해 협약상 규정의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국의 관할 하에 있는 개인 또는 집단 혹은 이들을 대리한 통보를 접수하고 심리하는 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권한을 인정한다.
2.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협약 당사국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어떠한 통보도 위원회에 접수되지 아니한다.

### 1. 개인통보제도의 개요

개인통보제도란 당사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는 당사국의 관할 내에 있는 진정인이 국내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각 국제인권조약의 해당위원회에 통보(communication) 하고, 해당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을 심리하여 해당국가의 국제인권조약 위반 여부를 결정하고, 당사국에게 진정인을 위한 배상 및 재발방지 등의 적절한 조치와 심리의 대상이 되었던 국내법령에 대한 개정을 권고하는 제도이다.<sup>84)</sup>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상의 개인통보 역시 장애인권리협약상의 권리가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통보(진정)가 접수 되면,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이를 심

84) 지금까지 개인통보제도를 규정한 인권조약은 자유권규약 제1선택의정서,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4조 및 고문방지협약 제22조,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이주노동자협약이 있으며 현재,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가 성안 논의 중에 있다. 위 협약 중 우리나라는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의 가입과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의 가입 및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4조에 대한 수락선언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동 규약 및 협약 위반에 대하여 각 조약감시기구(Treaty Body)에 진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인종차별철폐협약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제기된 개인통보는 없었으며, 자유권 규약과 관련해서는 7건이 있다. 그리고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는 2007년 1월 18일에 발효되었다.



리하여 해당 당사국의 장애인권리협약의 위반여부를 결정하고 진정인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당사국에게 요청한다.

모든 사건은 공통적으로 “심리적격(admissibility)” 심사와 “본안(merits)”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리적격”이란 장애인권리위원회가 ‘본안’심사를 하기 전 충족해야 하는 절차적 요건을 말한다. “본안심사”란 장애인권리협약이 정한 권리가 실제로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선택의정서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이 바로 심리적격에 관한 요건으로 이를 충족해야지만 본안심사로 들어갈 수 있다.

## 2. 개인통보제도의 심리 절차

### 가. 통보의 접수

일반적으로는 관련 인권 조약들에 인권침해에 관한 통보(진정)를 제출하는 공식적인 시한은 없다.<sup>85)</sup> 그러나 국내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으면 즉시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예외적인 경우지만,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장기간이 지난 후에 진정을 하면, 진정이 각하될 수도 있다.

### 나. 심리적격의 검토

심리적격이란 개인통보 자체가 수락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본안을 심리할 필요도 없이 초기 단계에서 배제시키는 과정이다. 심리적격을 심리할 때 아래에서 언급할 심리적격의 요건들을 충족하여야만 본안심리로 갈 수 있다. 접수된 통보에 대하여 심리적격이 없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정인(통보자) 또는 당사국에게 이를 전달된다.

### 다. 본안심리

심리적격이 인정되면 사건 내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본안심리가 개시된다.

85) 인종차별철폐협약의 경우 국내관계기관의 최종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정을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비공개 회의에서 진정인과 회원국이 제출한 서면 정보를 기초로 심사할 것이다. 보통 심리과정에서 통보자나 당사국의 정보제공은 한번에 그치지 않으며, 여러 차례 추가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라. 위원회의 견해 제시

위원회가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 그 결과가 진정인과 당사국에 동시에 통지된다. 위원회 위원 중 1인 이상의 위원의 의견이 다수 의견과 달랐을 경우나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지만 그 이유가 달랐던 경우에는 소수 의견을 밝히는 별도의 의견서를 첨부하기도 한다.

당사국은 위원회의 결정과 권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권고에 의거하여 취한 후속 조치들에 관한 세부정보를 담은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회원국에 협약이 정하는 권리들의 전반적인 준수 상황에 관한 추가 정보를 직접 또는 차기에 위원회에 제출할 정기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3. 통보의 주체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제1조는 “당사국이 협약상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침해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국의 관할하에 있는 개인 또는 개인의 집단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개인통보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첫째, 당사국의 관할하에 있어야 하고 둘째, 통보(진정)제출자는 개인 또는 개인의 집단 혹은 이들의 대리인이어야 하며, 셋째, 피해자임을 주장하여야 한다.

#### 가. 당사국 관할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제1조는 당사국의 관할 하에 있는 개인이 통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국의 관할 하에 있는 개인’이란 당사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민뿐만 아니라 당사국의 관할 하에 있는 외국인의 경우도 포함한다.



## 나. 인적 범위

### 1) 개인 또는 개인의 집단 혹은 이들의 대리인

피해를 주장하는 개인은 물론 개인의 집단 역시 개인통보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의 집단’이란 피해를 입은 개인의 집합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집단의 구성원 모두가 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의 피해자이어야 한다. 만약 통보를 제출한 집단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는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에 관해서는 심리를 각하하고 충족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심리를 진행할 것이다.<sup>86)</sup>

또한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개인의 집단을 대신하여 당사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제3자가 진정을 제출할 수 있다. 일정한 경우 이러한 서면 동의가 없어도 제3자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진정을 제출할 수 있으나 동의 없는 진정 제출에 대하여 정당화 할 수 있는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러한 진정서의 제출에 있어 진정서가 변호사에 의해서 작성될 필요는 없다.

### 2) 피해자

피해자라는 개념은 당사국의 작위 내지 부작위로 인하여 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가 직접적으로 침해된 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진정인이 실제로 피해자인가의 문제는 본안심리에서 다룰 문제이므로 진정인은 다만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족하다. 그러므로 진정의 허용성 판단 단계에 있어서 진정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느냐의 여부만이 문제될 뿐이다.

피해자임을 주장함에 있어 이미 권리를 침해했거나 현재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당사국의 법률, 정책, 관행,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서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법률, 국가정책, 또는 관행의 피해자임을 입증하지 않고, 단순히 법률, 국가정책, 또는 관행의 정당성에 추상적으로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심리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sup>87)</sup> 이 경우 피해자가 통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피해자만이 진정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피해자의 대리인도 제출할 수 있다.

86) Communication No. 35/1978, Aumeerudy-Cziffra and Nineteen Other Mauritian Women v. Mauritius (Human Rights Committee)

87) Fact Sheet No.7/Rev.1, Complaints Procedure



## 제2조

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는 통보를 심리할 수 없다고 간주한다.

- (a) 통보가 익명인 경우
- (b) 통보가 통보제출권의 남용이거나 또는 본 협약의 규정과 양립하지 않는 경우
- (c) 동일한 사안이 이미 위원회에서 검토되었거나, 또는 다른 국제적 조사절차나 해결절차에서 심사되었거나 심사중인 경우
- (d) 이용가능한 모든 국내적 구제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이것은 구제 절차의 이용이 불합리하게 지연되거나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e) 명백하게 근거가 박약하거나 사안의 실제적 존재가 충분하게 소명되지 못한 경우
- (f) 통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 이 의정서가 관련 당사국에게 발효된 후까지 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 발효 이전에 발생한 경우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본안심리가 행하여지기 위해서는 심리적격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심리적격에 관해서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장애인권리협약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동 조항의 요건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 1. 익명의 통보 금지

개인통보의 심리에 있어서 통보자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일방당사자이므로 신원확인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당사국에 의하여 통보자의 신변에 위협이 가하여질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익명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문이 제기 될 수 있으나 통보자의 신원이 밝혀져야만 당사국이 이에 대하여 항변하거나 혹은 구제 조치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익명의 통보를 금지하고 있다.

### 2. 협약 규정과의 양립성 및 통보권의 남용 금지

선택의정서는 제2조 (b)호에서 개인통보가 협약 규정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심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첫째, 협약상 보호되지 못하는 권리의 침해로 대상으로 한 경우이다. 즉, 침해의 주장은 협약이 실제로 보호하고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이런 경우, 해당 진정은 법률용어로 인정 불가능한 사항적 관할권(inadmissible *ratione materiae*)이 된다.<sup>88)</sup> 둘째, 당사국이 유보한 조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이다.

통보권의 남용은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이미 기각된 사안을 위원회에 반복적으로 제소하는 경우라든지 해당 진정 건이 남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에서 혹은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인정 불가능한 것으로 각하되기도 한다.<sup>89)</sup> 이에 대해서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것이지만 지금까지의 다른 조약위원회의 개인통보 관행에 비추어 보아 통보권 남용을 근거로 수락 불가 판정을 내리는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 있다.

### 3. 이중 통보 금지

통보가 이미 다른 국제적 조사절차나 해결절차에서 심사되었거나 심사중인 경우에 통보를 심리하지 않는다. 여기서 다른 국제적 조사 절차란 유럽인권협약, 미주인권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고문방지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개인피해구제절차가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이러한 절차에 제출된 사안은 심리전에 철회하지 않는 한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심리하지 않는다.

### 4. 국내구제절차의 완료

동 조항 (d)호는 개인통보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국내적 구제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국내구제절차의 이용이 불합리하게 지연되거나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되지 못한 경우에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즉, 진정인에

88) Fact Sheet No.7/Rev.1, Complaints Procedure

89) Fact Sheet No.7/Rev.1, Complaints Procedure



게는 국내구제절차 완료의 의무를 그리고 당사국에게는 효과적인 구제수단의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국가가 이러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진정인에게 부여된 국내구제절차 완료 의무 역시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가. 구제의 대상

국내적 구제절차에 있어서 구제란 사법적 성격의 구제에 한정되며 구제의 대상은 침해된 장애인권리협약상의 권리일 것이다. 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란 당해 권리에 대한 실질적 위반은 물론이며, 협약의 제정 목적에 비추어 장애인에 대한 효과적·실질적 보호가 없는 경우에도 협약상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

#### 나. 국내적 구제절차의 범위

우리나라의 경우를 비추어 보아 국내구제절차 완료에 있어 어느 법원까지를 완료해야 국내구제절차를 완료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대법원을 최종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헌법재판소를 최종적인 권리구제 기관으로 볼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sup>90)</sup>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을 보충적 권리구제수단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은 효과적 구제수단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미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판단한 결정례가 있다면 이는 아래에서 언급할 성공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내구제절차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일반소송의 경우에는 대법원을 최종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다. 효과적 구제 수단의 존재

효과적 구제수단이란 구제절차가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는데 적합하여야 하며, 진정인의 입장에서 구제절차가 합리적 수준의 성공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것

90) 제68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은 구제절차의 효율성이나 승소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절차를 밟아봐야 전혀 성공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라. 불합리한 지연

국내구제절차가 불합리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완료하지 않아도 된다. 불합리한 지연이란 지연기간 및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당사국이 권리구제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권리를 침해 당한 자가 그 구제를 위하여 법원에 제소하였으나, 소송절차가 이유 없이 장기간 지연되면 피해자는 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개인통보를 제출할 수 있다. 단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지연이 불합리한 것이어야 한다.

#### 마. 입증책임

제출된 개인통보에 관하여 국내적 구제의 미완료를 주장하려면, 당사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즉, 아직까지 다하지 않은 국내구제절차가 존재함을 밝혀야 한다. 그러나 밟지 않는 국내구제절차가 이용가능성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어서 이를 완료할 필요가 없다고 진정인이 그 이유를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면 당사국은 남은 절차가 여전히 이용가능하며 실효적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 5. 근거 없는 통보

진정인이 최소한의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는 등 그 내용이 명백히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판단되면, 본안심리 이전에 통보의 수락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이를 차단시킬 수 있다. 즉,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나 주장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증거의 제출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리하지 않는다.



## 6. 시간적 범위

원칙적으로 진정(통보)의 대상이 동 의정서의 발효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심리하지 않으나, 발효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통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 발효일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심리 할 수 있다.

### (1) 선택의정서 발효 이후

선택의정서는 가입한 후 30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당사국에 적용되므로 가입 후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발생한 권리 침해 사건에 대해서만 통보를 제기 할 수 있다. 만약 진정인에 대한 사법절차가 선택의정서 가입이전에 개시되었으나, 그 종국적 판결이 선택의정서 이후에 내려진 경우, 권리침해는 최종판결을 통해서 확정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법원의 최종판결일을 기준으로 그 수락여부가 결정된다.<sup>91)</sup>

### (2) 계속적 침해상태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통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 발효이전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발효일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리가 가능하다. 통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 발효일 이후 까지 지속된다는 의미는 과거의 침해 행위(선택의정서 발효 전)가 구제되지 않고 그 침해 상태가 계속해서 선택의정서 발효 후까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계속적 침해상태라고 단정 짓기는 힘들다. 이러한 침해상태의 계속과 함께 침해상태를 야기한 법규범의 계속적 적용을 통한 협약 위반의 결과가 선택의정서 발효 이후에도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91) Communication No. 628/1995, Tae Hoon Park v. Republic of Korea (Human Rights Committee)

**제3조**

이 의정서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제출된 모든 통보에 대하여 비공개적으로 관련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한다. 접수 당사국은 이러한 사안과 자국이 제공한 구제조치가 있는 경우, 동 구제조치에 대하여 소명하는 서면 설명서 또는 진술서를 6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장애인권리협약상의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통보서를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하면 심리절차가 개시된다. 이러한 통보서에는 선택의정서 제1조와 제2조에 규정된 요건 및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통보가 접수되면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통보의 대상국에게 소명기회를 주기 위하여 사안과 관련된 진술서를 6개월 내에 제출할 것을 비공개로 통보한다. 진술서가 제출되면 통보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진술서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 위원회는 심리를 통하여 통보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제4조**

1. 위원회는 통보를 접수한 후에 본안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주장된 권리침해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잠정조치를 취하라는 요청을 긴급한 고려사항으로 관련 당사국에게 송부할 수 있다.
2. 위원회가 본조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이것은 통보의 심리가능성이나 본안에 대한 결정을 함의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통보에 대한 통보를 접수 후, 심리적격 또는 본안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진정인(통보자)에게 회복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비상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청할 수 있다. 즉, 장애인권리위원회가 통보를 심사하기 전 어떠한 단계에서도 주장된 권리 침해의 피해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복구 불가능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소위 “잠정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청할 수 있다. 동 조항은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심리적격 또는 본안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를 보호하고 동시에 위원회가 공정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진정인이 위원회의 잠정조치 요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주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경우이든, 왜 그러한 조치가 필요한 지에 대한 이유들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당사국에 대한 잠정조치의 요청이 통보의 심리가능성이나 본안에 대한 결정을 함의하는 것은 아니다.

#### 제5조

위원회가 이 의정서에 따라 통보를 심사할 때에는 비공개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위원회는 통보를 심사한 후, 제안과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당사국과 진정인에게 전달한다.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개인통보 심리는 비공개회의로 이루어진다. 아마도 장애인권리위원회가 구성되면, 선택의정서 운영규칙을 제정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실무그룹의 심리를 거친 후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하여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개인통보를 진행하고 심리하는 절차는 공개하지 않지만, 진정인 또는 당사국에게는 공개 할 수 있다. 통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관련 당사국과 진정인에게 전달하며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공지된다.



## 제6조

1. 위원회는 협약에 규정된 권리가 당사국에 의하여 심각하게 또는 조직적으로 침해된다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접수한 경우, 위원회는 그 당사국에 대하여 그러한 정보를 조사하는데 협조할 것과, 또한 이를 위하여 관련 정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2.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이 제출한 의견 및 그 밖에 입수가 가능한 모든 신뢰할 만한 정보를 고려하여, 위원 중 1명 또는 그 이상을 지명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위원회에 긴급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당사국의 동의 하에 이러한 조사는 당사국의 영역에 대한 방문을 포함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심사한 후, 동 결과를 논평 및 권고사항과 함께 관련 당사국에게 전달한다.
4. 관련 당사국은 위원회로부터 조사결과·논평 및 권고사항을 전달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자국의 견해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5. 이러한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당사국의 협력이 요청된다.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제6조는 협약에 규정된 권리가 당사국에 의하여 심각하게 또는 조직적으로 침해된다고 믿을 만한 정보(reliable information)가 있을 때에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비공개로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조사를 실시하기 전 우선 당사국에게 입수된 정보의 확인과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제출된 당사국의 의견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참조해서 필요한 경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1명 이상의 위원들을 지정하여 비공개로 행하여지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국의 영역을 방문하여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해당국가의 주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당사국의 동의가 있어야 필요하다. 조사 후에는 조사의 결과에 논평과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당사국에 의견을 제시하고, 당사국은 6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당사국은 협조하도록 요청된다.



### 제7조

1.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에게 이 의정서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조사에 대응하여 취해진 모든 조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협약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6조 제4항에 언급된 6월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 관련 당사국에게 동 조사에 대응하여 취해진 조치를 위원회에 알려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조사가 종료한 후 후속조치로 당사국에게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하여 당사국이 취한 조치를 장애인권리협약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보고서에 자세하게 기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당사국이 조사에 대해 취한 조치에 대해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 이 의정서가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위원회 권한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은 동 선택의정서의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제6조와 제7조에 규정된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조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국이 이러한 선언에 대하여 철회하지 않는 한, 위원회는 그러한 당사국에 대하여 제6조에 의거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 제9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의 수탁자이다.

당사국은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대한 가입서 및 비준서를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하여야 한다. 가입서 및 비준서가 기탁되면 유엔사무총장은 모든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제10조

이 의정서는 2007년 3월 30일자로 뉴욕에 위치한 국제연합본부에서 협약에 서명한 국가와 지역통합기구의 서명을 위해 개방된다.

서명이란 일반적으로 인권 조약과 같은 다자 조약에서 비준, 수락, 또는 승인 등 동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를 표명하기 전의 절차로서 서명국에 실정법적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차후에 조약으로 구속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국가의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조약의 비준을 향한 사전 준비 단계이며, 국가는 서명이후 비준·수락·승인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기간동안 신의성실의 원칙 하에 그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서명하고 비준을 하기 전까지 서명국은 해당 조약에 대한 국내적 승인을 구하고, 조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국내법을 정비를 하여야 한다.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2007년 3월 30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서명을 위해 개방되며, 서명한 국가들은 선택의정서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제11조

이 의정서는 협약을 비준하였거나 가입한 이 의정서의 서명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이 의정서는 협약을 공식적으로 인준하고 이 의정서에 서명한 지역통합기구의 공식적인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이 의정서는 협약을 비준 공식적인 인준 또는 가입하였으나 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은 모든 국가와 지역통합기구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강화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성안된 조약으로서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권리협약을 가입·비준하여 장애인권리협약의 당사국이 되어야 한다.

### 제12조

1. “지역통합기구”란 회원국들이 협약 및 본 의정서에 준거하는 사안들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여 주권국가에 의해 구성된 기구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구는 협약 및 본 의정서에 준거하는 사안들에 대한 권한의 범주에 대해 공식 승인서 또는 비준서를 통해 선언해야 한다. 이후, 결과적으로 권한 범주 내에서 기탁인에게 실질적인 수정을 통보해야 한다.
2. 본 의정서의 당사국에 대한 언급은 지역통합기구의 권한 내에서 적용된다.
3. 제13조 제1항, 제15조 제2항의 목적에 따라 통합기구의 채택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4. 지역통합기구는 그 권한 내의 사안들에 대해 본 의정서의 당사국인 그 회원국 수와 동일한 투표수로 당사국 회의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일 그 회원국이 권리를 행사한다면 지역통합기구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역으로 지역통합기구가 그 권리를 행사한다면 회원국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동 조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역통합기구”란 지역적 협정 혹은 협약 등의 설립조약을 통하여 구성된 일정한 역내 주권국으로 구성된 기구이다. 이러한 기구는 설립조약에 규정된 문제들에 대하여 그 회원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 내부 절차에 따라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 비준, 수락,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정당하게 위임받은 기구로서 EU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지역적 통합기구는 그 회원국의 수와 동일한 투표권을 행사하며, 일반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회원국의 대표가 이를 수행한다.

**제13조**

1. 협약의 발효를 조건으로, 이 의정서는 1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후 30일후에 발효한다.
2. 1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이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공식 승인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각 당사국 또는 지역통합기구에 있어, 이 의정서는 그러한 문서의 기탁 후 30일이 되는 날 발효한다.

조약의 발효는 조약이 실제로 당사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발생하는 순간이다. 조약은 그 조약의 발효시기를 결정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보통 조약이 발효되기까지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둔다. 발효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조약자체의 최종 발효와 특정 국가에 대한 발효가 그것이다.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선택의정서의 발효는 10개국의 가입 및 비준이 있는 후 30일이 경과하면 발효되며, 본 선택의정서가 발효된 후 특정 국가에 대한 발효는 가입 및 비준 후 30일 경과된 날로부터 발효된다.

**1. 비준·가입과 발효의 구분**

국가가 조약에 구속됨에 대해 동의를 표명하는 행위인 비준·가입과 조약의 발효와는 구별된다. 비준·가입은 비준서 혹은 가입서의 기탁을 통해 조약의 법적 권리 및 의무를 수행할 국가의 의지를 보여주는 행위이며, 조약의 발효란 조약이 실제로 당사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게 되는 순간을 의미한다. 조약은 즉각적으로 발효되는 것이 아니며, 조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보통 문서의 기탁일과 발효일 사이에 간격이 있다.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서는 그 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있다.

**2. 최종발효 (제1항)**

최종발효란 이미 지속적 동의를 표명한 국가들에 대하여 해당 신규조약이 법



적 구속력을 가진 문서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조약은 일정 수 이상의 국가가 비준, 승인, 수락 또는 가입함을 명시하는 문서를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후에 조약이 발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종 발효일까지 그 조약은 비준국, 가입국을 포함해 어떤 국가에게도(비록 신의성실의 원칙아래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삼갈 의무를 지니더라도)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경우 이 기간을 1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발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특정국가에 대한 발효 (제2항)

제2항은 선택의정서가 발효된 이후, 본 의정서의 구속을 받고자 하는 국가 및 국제기구에 대한 발효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간은 비준서의 기탁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발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가 비준 이전에 행한 서명과 관련하여 서명일은 어떠한 법적효력도 없다. 왜냐하면 서명은 국가가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삼가해야 한다는 의무 이외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 제14조

1. 이 의정서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유보는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다.

#### 1. 유보의 의미

유보란 그 표현 또는 명칭이냐 어떠하든, 조약의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시에 국가가 행하는 일방적 선언으로서, 자국에 대하여 조약을 적용함에 있어 조약의 특정조항의 법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변경할 것을 의도하는 것이며,<sup>92)</sup>

<sup>92)</sup> 비엔나조약법 협약 제2조 제1항 (d)



이러한 유보의 의사는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시에 혹은 그 이전에 표명해야 한다.

## 2. 유보의 제한

동 조항에서는 대상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유보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이행 강화를 위하여 당사국 국민에게 협약상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개인통보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만약 동 선택의정서를 가입하고자 하는 당사국이 개인통보에 관한 규정을 유보한다면 이는 선택의정서의 목적을 무효화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통보 관련 조항의 유보는 동 선택의정서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어떠한 유보가 동 규약의 대상과 목적에 양립하지 않는 유보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책무가 될 것이다

## 3. 유보국의 의무

만약 국가가 유보를 하였다면, 유보를 형성한 당사국은 유보된 조항상의 의무와 양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국내법 혹은 관행을 정확한 용어로 지적하고, 국내법 및 관행을 동 협약과 양립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설명하거나 또는 국내법 및 관행을 동 협약과 양립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유보의 유지에 대한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당사국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유보조항이 철회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제15조

1. 모든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각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지 여부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이 의정서의 각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사무총장이 송부한 날부터 4월 내에 당사국 중 최소한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에,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 하에 이 회의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 출석하여 표결하는 당사국의 3분의 2중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사무총장을 통하여 국제연합총회에 제출되며 그 후 수용을 위해 모든 당사국들에게 제출된다.
2. 본조 제1항에 따라 채택되고 승인된 개정안은 채택된 날짜에 당사국 수의 3분의 2에 달하는 채택서가 기탁된 후 30일 후에 발효한다. 그 후, 당사국들이 자국의 채택서를 기탁한 후 30일 후에 해당 당사국에 대해 개정안이 발효한다. 개정안은 이를 수락한 당사국만 구속한다.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개정은 당사국 3분의 1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회의가 소집되며, 회의에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에 의하여 개정안이 채택된다. 채택된 개정안은 총회의 승인과 개정안 채택당시 당사국 3분의 2이상의 수락이 있으면 그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발효된다. 단 이러한 개정안은 수락을 허락한 국가에 한하여 그 효과가 인정되며, 수락 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동 선택의정서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대해서만 구속된다.

### 제16조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 통보에 의하여 이 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1년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당사국들은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서면 통보에 의해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서 탈퇴 할 수 있으며, 서면통보가 있는



후 일년 후부터 당사국들은 선택의정서상의 의무 이행으로부터 완전히 해제된다. 따라서 동 규정에 의하여 선택의정서가 적법하게 종료되면, 통보를 한 당사국은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이행할 의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 제17조

이 의정서문은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한다.

본 조항은 장애인권리협약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협약 선택의정서에서도 동일하게 시각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인쇄물 또는 온라인을 통해 본 선택의정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점자, 음성 등 대안적인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원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제18조

이 의정서문은 아랍어·중국어·영어·불어·러시아어 및 서반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이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 전권대표들은 각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특정 정본이 우선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각 언어는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문언은 각 정본에서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해석의 일반원칙과 보충적 수단에 의해서도 제거하지 못하는 의미의 차이가 정본간의 비교로 발견된 경우에는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고려하여 선택의정서와 최선의 조화를 이루는 의미를 채택해야 한다.<sup>93)</sup>

93) 비엔나 조약법 협약 제33조.



제 4 장

## 장애인권리협약의 의의



## 4 장

# 장애인권리협약의 의의

### 제 1 절 8번째 국제인권조약의 탄생

2006년 12월 13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제61차 총회에서 회원국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장애인권리협약이 통과되었다. 만4년이 넘는 기간동안 8차례의 특별회의를 거친 토론과 논의 끝에 나온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국제사회가 보여준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다.

오랜 세월 장애인은 불완전하고 부족한 존재로 인식되거나 배제, 멸시의 대상이 되어 왔다. 사람이라면 무릇 그 범주에 장애인도 들어가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은 기본적인 인권보장제도에서조차 소외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장애인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애써 온 장애인당사자들과 인권활동가, 그리고 이에 공감한 각 당사국 정부의 협력으로 2002년 8월부터 장애인 권리협약의 성안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실제 협약안이 완성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협약이 제정될 경우에 지게 될 재정적인 부담의 문제나 유사한 국제인권협약의 존재로 인한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협약의 필요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의견도 있었으며, 구체적인 협약문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도 이견이 상당수 존재하였고 해당 쟁점들은 매회 격렬한 논의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장애시민단체들의 지원에 힘입은 당사국들의 꾸준한 노력을 통해 마침내 여덟 번째의 국제인권협약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 제 2 절 장애인식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장애인권리협약은 그간 ‘장애인권리선언’,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 ‘UN의 장애인의 기회평등에 관한 표준 규칙’ 등 소외계층의 하나인 장애인에 대해 각종 국제적인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권리가 그다지 개선되지 못하였다는 현실적 문제점에 대해 국제사회가 인정하였으며, 이를 별도의 인권 보장조약으로 성안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특히 각 당사국간 그리고 당사국 및 장애인 당사자들 간의 의견차이, 문화의 다름에서 오는 의견 차이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국들은 본 협약제정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하여 시혜적 보호대상으로 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향유하는 주체로서 인정하고, 그 기본권 실현을 위하여 노력할 국가사회의 의무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의 채택은 그동안 각 나라마다 시차를 두고 진행되어 왔던 장애인에 대한 시각의 변화, 장애인 인권의 증진,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최종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랫동안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의 문제는 물리적, 신체적인 문제로서 장애당사자나 가족이 개별적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인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한 까닭에 장애인에 대한 치료나 재활, 사회통합의 문제 역시 주로 의료적인 측면에서 강조되어 왔고 국가사회의 책무는 복지적 측면이나 시혜적 지원의 성격으로 부각되어 왔다. 여러 가지 사정상으로 사회에 통합되기 어려운 장애인은 그 사람의 의사에 관계없이 시설에 수용되어야 했다. 이러한 전통적인 편견 속에서 하나의 주체적인 인간으로 존중받기 위하여 싸워온 장애인들과 인권운동가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장애인에 대한 시각과 장애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점차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장애인을 ‘장애’를 가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향유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이를 위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교육, 의료, 고용 등의 영역에서 장애인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이 조금씩 확대되었다. 특히 차별금지과 평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면서 미국, 호주, 영국 등을 비롯



한 일부국가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장애인의 이동성을 배려한 시설의 조정, 정보 및 환경의 접근성을 반영한 서비스 제공, 편의시설 설치 등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관심 증대 및 시각 변화 함께 장애의 개념도 변화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1년에 ‘기능, 장애 및 건강에 관한 국제 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를 발표하여 1980년의 ‘손상, 장애, 사회적 불리에 대한 국제장애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 1997년의 ‘손상, 장애, 사회적 불리에 대한 국제장애분류-2’와는 달리 개인적인 장애나 질병과 상황적 맥락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기능과 장애를 설명하였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적인 맥락이 더욱 강조되는 것으로 장애의 개념이 기본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적절히 반영하면서, 장애의 문제는 사회통합의 문제이며 기본적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국가사회가 장애 당사자의 주체적인 삶의 실현을 위해 조치를 취하여야 할 문제로 인식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장애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의 큰 획을 긋는 역사적 의의가 있다. 장애의 문제가 ‘복지’가 아니라 ‘차별’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하여 그 해결 역시 장애인 당사자의 주체적인 참여를 통한 사회통합과 이를 위한 국가사회의 의무로 전환된 것이다.

### 제 3 절 제 정 과 정 이 갖 는 의 의

특히 본 협약은 그 제정 과정에서 몇 가지 특기할 만한 의의를 갖고 있다. 첫 번째로 장애인권리협약의 제정요구에서부터 8차례에 걸친 특별위원회 회의과정에 이르기까지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였다는 것이다. 공식적인 특별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단체들은 별도의 협약안을 제시하여 각 시민단체와 당사국 정부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수의 당사국들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제시한 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본 협약문을 구



성하였다. 협약의 대상자이자 주체자인 장애인 당사자와 협약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각 당사국 정부가 공동으로 협약을 완성하였다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두 번째로 그동안 6대 국제인권조약에 가입은 하였으나 제정과정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한국정부의 활발한 참여이다. 한국 정부 대표단은 특별위원회 회의과정동안 장애시민단체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본 협약과정에 참여하였고, 특히 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 이후 여성장애인, 이동권, 자립생활과 관련한 별도조항을 제안하였으며 각각 제6조(여성장애인), 제20조(개인의 이동), 제19조(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통합)로 채택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하여 제5차 특별위원회에서 별도 조항의 존치를 제안한 이래 이를 둘러싼 찬반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도 꾸준히 여성장애인 인권보장의 중요성을 설득해냄으로써 최종적으로 여성장애인 조항을 별도로 둔다 동시에 장애여성 문제가 심각하거나 취약한 조항에서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소위 병렬접근 방식(Twin Track Approach)이 채택되도록 하였다. 이동성과 자립생활 역시 우리나라 장애인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강조한 영역으로서, 이동성(제20조) 접근성(제9조)과 구별되어 개인의 이동을 강조하는 조항으로 규정되었으며 자립생활은 그 용어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으나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수정되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을 위한 전제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별도의 조항으로 남게 되었다. 이번 협약 성안과정에서 보여준 한국정부와 장애인단체의 활약은 제8차 회의석상에서 당사국들로부터의 감사인사를 이끌어 내는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한편으로는 본 협약의 발효 이후 한국정부가 새로 탄생한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감시에 있어서도 역시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는 국제사회의 관심과 주목을 이끌어냈다.

#### 제 4 절 한국사회의 과제

이러한 의의가 한국사회에 던져주는 과제 또한 상당히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후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준 점은 높이 평가되지만, 국내를 돌아 볼 때 열악한 장애인권상황의 개선이라는 절대적인 과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2007년 3월 30일에 장애인권리협약의 서명은 개방되기 시작하며 20개국 이상이 비준하게 되면 그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선택의정서의 경우도 동일한 날짜에 서명개방이 되며 10개국 이상이 비준할 경우 해당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성안과정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에 비추어 한국정부의 서명은 거의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경우 국회동의절차를 거쳐 비준을 마치면,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과 함께 한국정부에 대하여 당사국으로서의 협약 이행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라 안팎으로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고 국내 관련법이 그에 상치되는 내용이 있는지 해당 정책을 집행하는 각 정부부처별로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특히 장애의 특성상 본 협약의 많은 조항들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난 시기 우리 사회는 경제발전을 통한 성장전략에 집중해 왔으며, 그 결과 효율적 성장에 기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회제반 부문과 주체에 대하여는 관심을 기울여 오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여성, 장애계, 빈곤계층의 노인과 아동 등의 인권문제가 바로 그 지점에 놓여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장애인권의 문제는 비참하다 할 정도로 인권보장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의 채택, 비준과 장애차별금지법의 시행이 주는 사회적인 충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투입하여야 할 국가적 부나 자원의 양도 상당할 것이며 민간기업에게 주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이미 국제적으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룩한 모범국가로 인정받는 수준에 이른 점을 감안한다면, 그에 견준 장애인권현실이 부끄러울 정도로 낙후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서둘러 이에 관한 정부의 확고한 정책집행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장애차별의 시정과 관련해서 비용을 상당히 투입해야 하는 사안들이 있는가 하면 당장 조금만 노력하더라도 즉각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것이나 또는 당사국이 비용과 예산에 상관없이 즉각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섞여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 막연한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기 보다는 즉각적으로 시행할 부분과 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들을 골라내고 이에 관하여 사회구성원들과 함께 충분한 사회적 토론의 장을 거치면서, 장애인권보장에 관한 굳은 의지를 설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집행의 일관성과 예측가능한 일정의 제시도 중요하지만, 장애 문제에 대한 국민인식의 전반적인 제고 또한 가장 중요한 눈앞의 과제로 평가된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수십년간의 경험에 따라 경제적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풍조가 지배적이다. 제도의 개혁은 의식의 개혁을 가져오지만, 의식의 개혁이 빨라질수록 제도개혁은 속도와 정당성을 더욱 부여받게 된다. 장애문제를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들이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차별금지’와 ‘인간의 존엄성 존중’으로 옮겨져야 비로소 장애인권을 위한 각종제도개혁이 확고한 기반위에 그 발을 디딜 수 있게 될 것이다. 나아가, 그러한 인식의 제고는 비단 당사자인 장애인에 뿐만 아니라 그동안 경제적 효율성의 명분으로 소외되거나 희생되어 온 사회적 취약 계층 모두에게도 두루두루 인권보장이라는 빛을 비출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사회에 장애인권리협약이 가지는 의의는 매우 소중한 것이다.



## 부 록

1. 장애인권리협약(국문)
2.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국문)
3. 장애인권리협약(영문)
4.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영문)



## 전 문

이 협약의 당사국은,

- (a) 전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로서 모든 인류의 천부적 존엄성, 가치, 그리고 동등하고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국제연합헌장에 천명된 원칙들을 상기하며,
- (b) 국제연합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모든 사람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천명하고 동의해왔음을 인정하며,
- (c) 모든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및 상호관련성과, 차별 없이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 받아야 하는 장애인의 기본적 자유와 욕구를 재확인하며,
- (d)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상기하며,
- (e) 장애는 발전하는 개념이며, 또한 장애는,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위에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과 손상을 지닌 개인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야기된다는 것을 인정하며,
- (f) 장애인을 위한 기회의 평등을 보다 고취시키기 위한 국내적·지역적·국제적 수준에서의 정책, 계획, 프로그램 및 활동의 증진, 수립, 및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과 장애인의 기회평등에 관한 표준규칙에 포함되어 있는 원칙 및 정책지침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 (g) 장애관련 문제를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한 정책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주류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 (h) 장애로 인한 사람에 대한 차별은 인간의 천부적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침해라는 것을 또한 인정하며,
- (i) 장애인의 다양성을 더욱 인정하며,
- (j) 보다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비롯하여 모든 장애인의 인권을 촉진하고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며,
- (k) 이러한 다양한 기제와 조치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동등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에 대한 장벽에 지속적으로 직면해 있고 세계도처에서 장애인의 인권이 계속해서 침해되고 있음을 우려하며,
- (l)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 (m)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안녕과 다양성에 대한 장애인들의 가치 있는 현재의 기여 및 잠재적 기여를 인식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향유와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의 증진이 장애인의 소속감을 강화시키고 사회의 인적, 사회적, 경제적 발전과 빈곤퇴치에서 상당한 진보를 가져올 것임을 인정하며,
- (n)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포함하여, 장애인 개인의 자율 및 자립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 (o) 장애인은 당사자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이러한 정책 및 프로그램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것을 유념하며,
- (p)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및 기타 견해, 국적, 민족, 원주민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연령 혹은 기타 신분에 따라 복합적이거나 가중된 형태의 차별에 직면하는 장애인의 어려운 상황들을 우려하며,
- (q) 장애여성과 장애소녀들이 가정내외에서 폭력, 상해 또는 학대, 유기 또는 유기적 대우, 학사 또는 착취의 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많음을



인정하며,

- (r) 장애아동은 다른 아동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히 향유해야 함을 인정하고, 이를 위해 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이 이행한 의무들을 상기하며,
- (s)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증진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성인지적 관점을 포함시킬 필요성을 강조하며,
- (t) 상당수의 장애인이 빈곤한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하여 빈곤이 장애인에게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다루어야 할 중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며,
- (u) 국제연합헌장에 포함된 목적과 원칙에 대한 완전한 존중과 적용 가능한 인권문서의 준수에 기초한 평화와 안전의 조건들은, 특히 무력분쟁과 외국군의 주둔상황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보호를 위하여 필수적임을 명심하며,
- (v)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 및 건강과 교육 그리고 정보와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성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 (w) 다른 사람들과 그가 속한 지역사회에 대한 의무를 가진 개인은 국제인권장전이 인정한 권리의 증진 및 준수를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 (x) 가족은 자연적이고 근본적인 사회의 구성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에 의해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고 장애인과 그 가족 구성원들은 가족이 장애인의 완전하고 동등한 권리의 향유를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확신하며,
- (y)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국제협약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장애인들의 뿌리 깊은 사회적 불이익을 시정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며,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부문에서 장애인이 동등한 기회를 갖고 참여하는 것을 촉진할 것임을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1조 목 적

이 협약의 목적은 모든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보호·보장하고, 장애인의 고유한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동등한 기초 위에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 제2조 정 의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해:

“의사소통”은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기술을 포함한 서면·음성·평문·낭독자와 보완적이고 대안적인 의사소통의 방식, 수단 및 형식뿐만 아니라 언어, 문자의 표시, 점자, 촉각을 통한 의사소통, 대형 인쇄, 접근 가능한 대중매체를 포함한다.

“언어”는 구어와 수화 그리고 그 밖의 다른 형태의 비음성 언어들을 포함한다.

“장애로 인한 차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민간 및 기타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려는 목적이나 효과를 가지는, 장애를 이유로 한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이는 합리적 편의의 거부를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차별을 포함한다.

“합리적 편의”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 불균형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는 필수적이고 적절한 변형 및 조정을 의미한다.

“보편적 설계”는 개조 혹은 특별한 설계를 할 필요 없이 최대한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 환경,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설계를 의미한다.



“보편적 설계”는 이러한 장비가 필요한 특정한 장애인 그룹을 위한 보장구를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 제3조 일반원칙

이 협약의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 (a) 개인의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자율, 자립에 대한 존중
- (b) 차별 금지
- (c)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및 통합
- (d) 인간의 다양성과 인류의 한 부분으로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이의 존중과 수용
- (e) 기회의 균등
- (f) 접근성
- (g) 남성과 여성의 평등
- (h) 장애아동의 발전적인 역량의 존중과 정체성 유지에 대한 권리의 존중

### 제4조 일반의무

1. 당사국은 장애로 인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 없이 장애인의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하고 증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 (a)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이행을 위한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한다.
  - (b)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기존의 법률, 규정, 관습 및 관행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한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c) 모든 정책 및 프로그램에서 장애인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고려한다.
  - (d) 이 협약과 일치되지 않는 어떠한 행동이나 또는 실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공 당국 및 공공기관들이 본 협약에 따라 행동하도록 보장한다.
  - (e) 모든 개인, 기관 또는 민간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장애로 인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f) 장애인의 특별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설계된 재화, 서비스, 장



- 비 및 시설의 이용가능성과 사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본 협약 제2조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가능한 최소한의 개조와 비용이 요구되는 보편적으로 설계된 재화, 서비스, 장비 및 시설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고 장려한다.
- (g) 장애인에게 적합한 정보통신기술, 이동보조기구, 보장구, 보조기술을 포함한 신기술의 이용가능성 및 사용의 촉진과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촉진할 것과 적정가격의 이러한 기술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 (h) 그 밖의 다른 형태의 보조, 지원 서비스 및 시설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포함하여 이동보조수단, 보장구 및 보조 기술에 대한 접근 가능한 정보를 장애인들에게 제공한다.
- (i) 이 협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에 대해 장애분야의 직원 및 전문가에 대한 훈련을 촉진함으로써 이러한 권리들에 의해 보장되는 보다 나은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각 당사국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와 관련하여, 국제법에 따라 즉각적으로 적용 가능한 본 협약에 포함된 의무들에 대하여, 편견 없이, 필요한 경우 국제협력의 틀 안에서, 이러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자국의 가용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3. 당사국은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 개발 및 이행, 그리고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타 의사결정 과정에서 장애인 대표 단체들을 통하여,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들과 밀접하게 협의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한다.
4. 이 협약의 조항은 장애인의 권리실현에 보다 공헌할 수 있는 당사국의 법률이나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에 포함되어 있는 어떠한 조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협약의 어느 당사국도 법률, 협약, 규칙 또는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또는 현존하고 있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이 협약에서 그러한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인정의 범위가 보다 협소하다는 것을 구실로 제한하거나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이 협약의 조항들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 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분야에 해당된다.



### 제5조 평등과 차별금지

1. 당사국은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그리고 법 아래에서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장애로 인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유형의 차별에 대하여 동등하고 효과적인 법적보호를 장애인들에게 보장 한다.
3. 당사국은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합리적 편의가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장애인의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시키거나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들은 이 협약의 조항하에서 차별로 간주되지 않는다.

### 제6조 여성장애인

1. 당사국은 장애여성과 장애소녀들이 다중적인 차별을 겪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여성과 장애소녀들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하고 동등한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규정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향유와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들의 완전한 개발, 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제7조 장애아동

1.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장애아동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장애아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 당사국은 장애아동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와 그러한 견해에 대하여 다른 아동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그들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적절한 비중을 둘 것을 보장하며 그러한 권리를 실현하도록 장애와 연령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한다.



## 제8조 인식 제고

1. 당사국은 다음 사항에 대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a) 가족 단위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의 고양
  - (b) 성별과 연령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선입견, 그리고 유해한 관습의 근절
  - (c) 장애인의 능력과 공헌에 대한 인식의 증진
2.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포함한다.
  - (a) 다음을 목적으로 효과적인 대중인식사업의 추진 및 지속
    - (i)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감수성 증진
    - (ii)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사회적 인식개선 증진
    - (iii) 직장고용시장에서 장애인의 기술, 실적, 능력과 기여에 대한 인식 장려
  - (b) 유아기부터의 모든 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단계의 교육제도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의 양성
  - (c) 본 협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장애인을 묘사하도록 모든 대중매체에 권장
  - (d) 장애인과 이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 훈련 프로그램의 장려

## 제9조 접근성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 및 농촌지역에서 장애인의 물리적 환경, 대중교통, 정보통신기술 및 체제를 포함한 정보통신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되는 기타 시설이나 서비스에,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접근하도록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접근성에 대한 장애와 장벽의 식별 및 철폐를 포함하는 이러한 조치들은 특히 다음의 사항에 적용된다.
  - (a) 학교, 주거, 의료시설과 근무지를 포함한 건물, 도로, 대중교통 및 기타 실내외 시설



(b) 전자서비스와 응급서비스를 포함한 정보, 통신 및 기타 서비스

2. 당사국은 또한 다음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a)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의 접근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 및 지침의 이행을 위한 개발 공표 및 점검
- (b)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주체들이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하여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보장
- (c) 모든 당사자들에게 장애인이 직면한 접근성의 문제에 대한 훈련제공
- (d) 대중에게 개방되는 건물과 기타 시설에 점자 및 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표지판 설치
- (e) 대중에게 개방되는 건물과 기타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안내인, 낭독인, 전문수화통역사를 포함한 현장지원과 매개체의 제공
- (f)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타 적절한 형태의 지원과 보조를 장려
- (g) 장애인이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및 체제에 대해 접근하도록 장려
- (h) 최소한의 비용으로 기술 및 체제에 접근 가능하도록 초기단계에서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기술과 체제의 설계, 개발, 생산 및 유통을 장려

## 제10조 생명권

당사국은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부여받았음을 재확인하고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제11조 위험상황 및 인도적 긴급사태

당사국은 무력분쟁, 인도적 긴급사태 및 자연재해의 발생과 같은 위험상황에서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국제법상의 의무에 따라 장애인의 보호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제12조 법 앞의 평등

1. 당사국은 장애인이 모든 영역에서 법 앞에서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 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동등한 기초 위에서 법적 능력을 향유한다는 것을 인정 한다.
3. 당사국은 장애인이 그들의 법적능력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당사국은 법적능력의 행사와 관련한 모든 조치들이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인권법에 따라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제도를 제공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보호제도는, 법적 능력 행사와 관련된 조치들이 개인의 권리, 의지, 선호도를 존중하고, 이해관계의 상충과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개인의 상황에 비례하고 적합해야 하며, 가능한 최단기간 동안 적용되어야 하며, 권한을 지닌 독립적이고 공정한 국가기관이나 사법기구에 의해 정기적으로 검토 되도록 보장한다. 보호제도는 그러한 조치들이 개인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비례한다.
5.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국은 장애인의 재산 소유 또는 상속에 있어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의 재정적 사항들을 관리하고, 은행대출, 담보 및 기타 재무신용에 있어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장애인의 재산이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 제13조 사법접근성

1. 당사국은 수사와 기타 예심단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장애인이 증인을 포함한 직·간접적인 참가자로서 효과적인 역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절차와 연령에 적합한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효과적으로 사법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의 효과적인 사법접근권의 보장을 돕기 위하여 경찰과 교도관을 포함한 사법행정에 종사하는 이들을 위한 적절한 훈련을 장려한다.



## 제14조 개인의 자유와 안전

1. 당사국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장애인에게 다음을 보장한다.
  - (a)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를 향유한다.
  - (b) 장애인의 자유가 불법적으로 또는 자의적으로 박탈당해서는 아니 되며, 모든 자유의 박탈은 법률에 따라야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의 존재로 자유가 박탈되어서는 아니 된다.
2. 당사국은, 일정한 절차를 통해 장애인의 자유가 박탈되는 경우,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국제인권법에 따라 보호 받으며, 합리적 편의제공을 포함한 이 협약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하는 대우를 받도록 보장한다.

## 제15조 고문이나 잔혹한 또는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취급 및 형벌로부터의 자유

1.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한 또는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취급 및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의료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한다.
2. 당사국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장애인이 고문이나 잔혹한 또는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취급 및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효과적인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6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1. 당사국은 성별에 기초한 요소를 포함하여, 가정 내외에서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특히 장애인과 그 가족들 그리고 개호인을 위하여 착취, 폭력 및 학대의 방지, 인식 그리고 사례보고에 대한 정보와 교육의 제공을 포함한 적절한 형태의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지원 및 보조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당사국은 연령, 성별 그리고 장애를 고려한 보호 서비스를 보장한다.



3.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기관이 장애인을 위해 고안된 모든 시설과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점검할 것을 보장한다.
4. 당사국은 보호 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의 피해자가 된 장애인의 신체적, 인지적 및 심리적 회복, 재활 그리고 사회 재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회복과 재통합은 인간의 건강, 복지, 자아존중, 존엄성 그리고 자율성을 증진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성별과 연령에 따른 특별한 욕구를 고려한다.
5.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한 착취, 폭력 및 학대의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하며 필요한 경우, 기소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여성과 아동에 중점을 둔 입법 및 정책을 포함하여 효과적인 입법과 정책을 마련한다.

#### 제17조 개인의 고유성 보호

모든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고유성에 대해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 제18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

당사국은 장애인에게 다음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이주의 자유와 거주 및 국적 선택의 자유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한다.

- (a) 국적을 취득하거나 변경할 권리를 가지며, 장애를 이유로 또는 자의적으로 국적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 (b) 장애를 이유로 하여 국적 관련 서류 또는 기타 신원증명 서류를 획득·소유·이용하고 또는 이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는 이민 절차와 같은 관련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 (c)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라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



- (d) 자의적으로 또는 장애를 이유로 자국에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는다.
2. 장애아동은 출생 후 곧 등록이 되어야 하고 출생 후 이름을 가질 권리, 국적을 취득할 권리, 그리고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그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19조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통합

이 협약의 당사국은 다음에 대한 보장을 포함하여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선택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고, 장애인의 이러한 권리와 지역사회의 완전한 통합 및 참여의 완전한 향유를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a)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거주, 거주지 및 동거인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형태에서 살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 (b) 장애인은 지역사회 내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 또는 격리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개인적인 지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정 내, 거주지, 그리고 기타 지역사회 지원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 (c) 대중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설은 동등한 기초 위에서 이용 가능해야 하며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해야 한다.

### 제20조 개인의 이동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최대한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개인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 (a) 장애인이 선택한 방식과 시기에, 그리고 적절한 비용으로 장애인의 이동을 촉진
- (b) 양질의 이동보조기구, 보장구, 보조기술 그리고 여러 형태의 현장지원과 매개체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및 이를 적절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촉진
- (c) 장애인 및 이들과 같이 일하는 전문 담당자들을 위한 이동 기술에 대한 훈



련을 제공

- (d) 이동보조기구, 보장구 및 보조기술을 생산하는 주체들이 모든 측면에서 장애인의 이동성을 고려하도록 장려

### 제21조 의견·표현 및 정보접근의 자유

당사국은 이 협약 제2조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장애인,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자신이 선택한 모든 의사소통의 방법을 통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 의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a) 대중을 위한 정보를 다양한 장애유형에 적합하게 접근 가능한 형태 및 기술을 통해 적절한 방법으로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장애인에게 제공할 것
- (b) 공식적인 교류에 있어 수화, 점자, 보완적이고 대안적인 의사소통 그리고 장애인의 선택에 의한 기타 모든 접근 가능한 수단, 방법, 형태를 사용하도록 수용하고 촉진할 것
- (c) 인터넷을 포함해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주체가 장애인을 위한 접근 및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촉구할 것
- (d)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하여 대중매체에게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만들도록 권장할 것
- (e) 수화사용을 인정하고 증진할 것

### 제22조 사생활 존중

1. 어떠한 장애인도 거주지나 주거형태와 상관없이 개인의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 및 기타 형태의 의사소통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또는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그들의 명예와 신용에 대해 불법적인 비난을 당하지 않는다. 장애인은 그러한 간섭이나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장애인의 사생활, 건강 및 재화에 대한 정보를 보호한다.



## 제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1. 당사국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다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결혼, 가족, 부모의 신분 및 관계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a) 결혼 적령기에 있는 모든 장애인은 장래 배우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 아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 (b) 장애인이 자신의 자녀수와 출산계획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할 권리, 연령에 적합한 정보와 출산 및 가족계획에 대한 교육에 접할 권리를 인정하고 이러한 권리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조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 (c) 장애아동을 포함하여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그들의 출산능력을 유지한다.
2.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보호, 후견, 재산관리 및 자녀입양 또는 국내법제상 존재하는 개념 중에 유사한 제도와 관련하여, 장애인의 권리와 책임을 보장한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은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된다. 당사국은 양육의 책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한다.
3.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가정생활과 관련하여 동등한 권리가 있음을 보장한다. 당사국은 이러한 권리의 실현과 장애아동에 대한 은폐, 유기, 방임, 격리를 막기 위하여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초기에 종합적인 정보, 서비스 그리고 지원을 제공한다.
4. 당사국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권한 있는 기관이 적용 가능한 법과 절차에 따라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부모와 격리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의 의지에 반하여 부모와 격리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은 아동 또는 부모의 장애로 인하여 분리되지 않는다.
5. 당사국은 직계가족이 장애아동을 돌볼 수 없는 경우 포괄적인 가족 내에서 대안적인 보호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지역사회에서 가정의 형태로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한다.



## 제24조 교육

1. 당사국은 교육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차별 없이 그리고 동등한 기회에서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단계에서의 통합교육 체제와 평생교육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보장한다.
  - (a) 인간의 잠재성, 존엄성 및 자아 가치에 대한 개발과 기본적 자유와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 강화
  - (b) 가능한 최대한도로 장애인의 정신적·신체적 능력뿐 아니라 그들의 인성, 재능 및 창의성의 개발
  - (c) 장애인이 자유 사회에 효과적으로 참여토록 할 것
2.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 (a)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일반교육체제에서 배제되지 않으며, 장애 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무상의 의무 초등 교육 및 중등 교육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 (b) 장애인은 그들이 사는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통합적이고 양질의 무상 초등 교육 및 중등 교육에 접근할 수 있다.
  - (c) 개별적인 요구조건에 따른 합리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 (d) 장애인은 일반 교육체제 내에서 효과적인 교육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는다.
  - (e) 효과적인 개별화된 지원들은 완전한 통합이라는 목표에 부합하여 학문 및 사회 개발을 최대화 시키는 환경 내에서 제공된다.
3. 당사국은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완전하고 평등한 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생활 및 사회 개발 기술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a) 점자, 대체 문자, 보완적이고 대안적인 방식, 의사소통 수단 및 형식, 적응 및 이동기술에 대한 학습의 장려와 동료집단의 지원 및 멘토링을 장려
  - (b) 수화 학습과 청각장애인 공동체의 언어 정체성의 증진을 장려
  - (c) 시각, 청각, 또는 시청각 장애를 가진 장애인, 그 중에서도 특히 아동에 대한 교육은 개인에게 가장 적절한 언어형태와 의사소통의 방식 및 수단을 통



- 해 그리고 학문 및 사회 개발을 최대화 시키는 환경에서 제공되도록 보장
4. 당사국은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돕기 위하여 장애가 있는 교사를 포함하여 수화 그리고/또는 점자를 사용할 수 있는 교사의 채용과 각 교육단계별 전문가 및 직원의 훈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훈련은 장애에 대한 인식과 적절하고 보완적이며 대안적인 의사소통의 방식, 수단, 그리고 형식과 교육기술 및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교재의 사용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 당사국은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위에 제3차 교육, 직업훈련, 성인교육 및 평생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를 위해 당사국은 장애인에게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보장한다.

## 제25조 건강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이 장애로 인한 차별 없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과 관련된 재할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특별히 각 당사국은,

- (a) 장애인에게 성적·생식적 보건분야 및 인구에 기초한 공중 보건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범위 및 질과 수준의 무상 또는 적정한 가격의 건강관리 및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b) 아동과 노년을 포함하여 조기 발견과 적절한 예방 및 추가적인 장애를 최소화 하고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를 포함하여 특히 장애로 인해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 (c) 농촌 지역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속한 지역사회와 가장 인접한 곳에서 이러한 보건서비스를 제공 한다
- (d) 의료전문가가, 공공 및 민간보건에 대한 윤리적 기준의 보급과 훈련을 통한 장애인의 인권, 존엄성, 자율성 및 욕구에 대한 인식의 개선에 기초한 자유로운 사전 동의에 입각하여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수준의 치료를 제공 해야 한다.



- (e) 건강보험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규정된 국내법에 의하여 인정된 생명보험이 장애인에게 차별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금지한다.
- (f) 장애를 이유로 건강관리, 보건서비스 또는 음식과 음료의 차별적인 거부를 금지한다.

### 제26조 선천적 및 후천적 장애에 대한 재활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최대한의 자립과 완전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직업적 능력 그리고 삶의 모든 측면에서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동료집단의 지원을 포함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보건, 고용, 교육 그리고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구성, 강화, 확장하며, 이러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 (a) 가능한 초기 단계에서 시작하고 개별적인 욕구와 역량에 대한 여러 전문분야별 평가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 (b) 지역공동체와 사회 전반에 있어서의 장애인의 참여와 통합을 지원하고, 자발적이며, 농촌지역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자신들의 지역공동체에서 최대한 근접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재활 서비스에 종사하는 전문가 및 직원을 위한 최초 훈련 및 지속적인 훈련의 개발을 증진한다.
3. 당사국은 재활과 관련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 고안된 보장구 및 기술에 대한 유용성, 지식, 그리고 사용을 장려한다.

### 제27조 근로 및 고용

1. 당사국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장애인이 노동할 권리를 인정하며, 이는 장애인이 장애인에게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노동시장과 근로환경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받아들이는 직업을 통해 삶을 영위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포함한다. 당사국은, 고용 기간 중에 장애를 입은 사람을 포



함하여, 입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 특히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노동권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 (a) 모집, 채용 및 고용의 조건, 고용의 연장, 경력 개발, 안전하고 건전한 근무 환경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고용과 관련된 제반 사안에 대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 (b)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동등한 기회 및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상,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한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과, 불편사항의 시정을 포함하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대한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한다.
  - (c)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노동권 및 노동조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d) 장애인이 일반적인 기술 및 직업 지도 프로그램, 직업소개 서비스 그리고 직업 훈련과 지속적인 훈련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e) 장애인의 구직, 취업 및 지속적인 근무와 복직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기회와 경력개발을 장려한다.
  - (f) 자영업, 창업, 협력개발 및 개인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한다.
  - (g) 공공부문에서 장애인을 고용한다.
  - (h) 적극적 우대조치, 정책, 장려금 그리고 기타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정책과 대책을 통해 민간부문에서 장애인의 고용을 증진한다.
  - (i) 사업장에서 장애인들에게 합리적 편의의 제공을 보장한다.
  - (j) 장애인이 개방된 노동시장에서의 직장경험을 습득하도록 촉진한다.
  - (k)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및 전문재활, 직업유지 및 직장복귀 프로그램을 증진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이 노예상태나 예속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하며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강제근로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한다.

##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로 인한 차별 없이 적절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



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하며, 장애로 인한 차별 없이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장애로 인한 차별 없이 사회적 보호와 이러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한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a) 정수(淨水)서비스에 대해 장애인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장애 관련 욕구를 위한 적절하고 적절한 가격의 서비스, 장치 및 기타 지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
- (b) 사회보호 프로그램과 빈곤감소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 특히 장애여성과 장애소녀, 장애노인의 접근을 보장
- (c) 빈곤 상태에 있는 장애인과 그들의 가정이 적절한 훈련, 상담, 재정적 지원과 일시적 위탁을 포함한 당사국의 장애인 관련 지출이 이루어지는 지원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 (d) 공공주택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
- (e) 퇴직 급여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

### 제29조 정치와 공적 생활 참여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정치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를 향유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다음의 사항을 이행한다.

- (a) 장애인이 투표하고 선출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포함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자유롭게 선택된 대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정치적 및 공적 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하도록 특히 다음의 사항을 통해 보장 한다.
  - (i) 투표 절차, 시설 및 자료가 적절하고 접근가능하며 사용 및 이해가 쉽도록 보장 한다.
  - (ii) 필요한 경우 보조기술 및 새로운 기술의 사용을 촉진하면서, 장애인이 선거와 국민 투표에서 아무런 위협 없이 비밀투표를 할 권리, 정부기관



의 모든 직급에 입후보하며, 효과적으로 봉직하고, 공공직능을 수행할 권리를 보호한다.

- (iii) 유권자로서 장애인의 의지를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보장하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장애인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선택한 사람에 대해 투표하도록 지원 한다.
- (b) 장애인이 공직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차별 없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증진하고 다음을 포함하여 이들의 공적 활동 참여를 장려한다.
  - (i) 국가의 공적, 정치적 생활과 관련된 비정부 기구 및 협회, 그리고 정당의 활동과 행정에 참여
  - (ii) 국제적, 국내적, 지역적 그리고 지방적 수준에서 장애인을 대표하는 장애인 단체의 구성과 참여

###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스포츠에 대한 참여

1. 당사국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문화생활에 참여할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장애인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a) 접근 가능한 형태로 된 문화적인 자료에 대한 접근을 향유한다.
  - (b) 접근 가능한 형태로 된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연극 및 기타 문화적 활동에 대한 접근을 향유한다.
  - (c) 극장, 박물관, 영화관, 도서관과 여행 서비스와 같은 문화 행사 또는 서비스를 위한 장소에 대한 접근과, 국가의 문화적 명소 및 유물에 대한 접근을 최대한 향유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신의 이익 뿐 아니라, 사회의 번영을 위해서, 그들의 창의적이고 예술적이며 지적인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당사국은 장애인이 문화적인 자료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률이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장벽의 요소가 되지 않도록 국제법에 따라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수화 및 농문화를 포함하여 그들의 특수한 문화 및 언어 정체성에 대한 인지 및 지원을 받아야 한다.
5.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레크리에이션, 여가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a) 장애인이 주류 스포츠 활동의 전 영역에서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증진한다.
  - (b) 장애인이 장애 특화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조직하고 개발하며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적절한 지침, 훈련 및 자원의 공급을 장려한다.
  - (c) 장애인이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장소 및 여행지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d) 장애아동이 교내 활동을 포함하여 놀이,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e) 장애인이 레크리에이션, 여행, 여가 및 스포츠 활동의 구성과 관련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제31조 통계와 자료 수집

1. 당사국은 이 협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통계자료 및 연구 자료를 포함한 적절한 정보를 수집한다. 이러한 정보의 수집과 유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 (a) 장애인의 사생활 존중 및 비밀보장을 위하여 자료보호에 관한 입법을 포함하여 합법적으로 제정된 보호수단을 준수한다.
  - (b) 통계자료의 수집과 이용에 있어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윤리적 원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허용된 규범을 준수한다.
2. 이 조항에 의거하여 수집된 정보는 협약하의 당사국의 의무 이행을 평가하기 위해서, 또한 장애인의 권리행사에 있어서 그들이 직면하는 장벽들을 확인하



고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분산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이러한 통계를 배포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한다.

### 제32조 국제협력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목적과 원칙의 실현을 위한 국내적인 노력의 지원에 있어, 국제협력과 국제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와 관련되어 당사국간 또는 당사국 사이에서, 그리고 필요한 경우 국제적 및 지역적 기구와 시민단체 특히 장애인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 (a) 국제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국제협력에 장애인을 포함시키고,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
  - (b) 정보, 경험, 훈련 프로그램 및 모범 사례의 교류 및 공유를 포함한 역량 구축을 촉진하고 지원
  - (c) 과학적 또는 기술적인 지식에 대한 연구와 접근에 있어 협력을 촉진
  - (d) 필요한 경우, 기술 이전을 통한 접근 가능한 기술과 보조기술에 대한 접근과 공유를 촉진하는 것을 포함하여, 기술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
2. 이 조항의 규정은 이 협약 하에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당사국의 의무를 저해하지 않는다.

### 제33조 국내이행과 모니터링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들을 위해 당사국의 조직체계에 따라 정부 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담부서를 지명하고, 다양한 부문에서 다양한 수준으로 관련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 내에 조정기구를 설립 혹은 지명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2. 당사국은 자국의 법적·행정적 체계에 따라 본 협약의 이행을 증진·보호·감독하기 위해 당사국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독립적인 기구를 포함한 체제



를 유지, 강화, 지명 혹은 설치해야 한다. 그러한 기구를 설치 또는 지명할 때, 당사국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기구의 지위 및 역할에 관한 원칙들을 고려해야 한다.

3. 시민사회, 특히 장애인과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모니터링 과정에 충분히 포함되고 참여 되어야 한다.

### 제34조 장애인권리위원회

1. 다음의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이 협약 발효 시 12명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추가로 60개국이 비준 또는 가입한 후에 위원회 위원은 최대 18명으로 6명이 추가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고매한 인격을 지니고 본 협약이 다루는 분야에서 능력과 경험을 인정받아야 한다.
4. 선출시에는 공평한 지역적 안배, 주요 법체계 및 상이한 문명형태의 대표성, 균형 있는 성별 대표성 및 장애인 당사자인 전문가의 참여를 고려한다.
5.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 회의에서 각 당사국이 자기나라 국민 중에서 후보자 1명을 지명한 후보자 명부에서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이 지명한 후보자 명부에서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각 당사국은 자기나라 국민 중에서 후보자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당사국의 3분의2가 의사정족수를 구성하는 이 회의에서 위원회 위원은 출석하여 투표한 당사국 대표로부터 절대 다수표를 획득한 자 중 최다득표자 순으로 선출된다.
6. 최초 선거는 이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6월 안에 실시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최소한 각 선거일 4월 전에 모든 당사국에 서한을 발송하여, 2월안에 후보자 명단을 제출해주도록 요청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와 같이 지명된 모든 후보자의 명부를 지명국을 표시하여 알파벳순으로 작성하며, 이 명부를 이 협약의 당사국에 송부한다.



7.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이들은 1회 재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초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6명의 임기는 2년 만에 종료한다. 이들 위원 6명은 최초 선거 직후 이 협약의 제5항에 규정된 회의의 의장이 추천으로 선정한다.
8. 6명의 추가 위원회 위원의 선출은 본 조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투표로 이루어진다.
9. 위원회의 위원이 사망, 사임하거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 위원을 지명한 당사국은 이 위원의 잔여 임기 동안 재임할, 본 조항의 관련 항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고 자격을 갖춘 다른 전문가를 지명한다.
10. 위원회는 자체 의사규칙을 제정한다.
1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위원회가 이 협약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원과 시설을 제공하고, 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소집한다.
12.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제연합 총회의 승인을 얻고 총회가 결정하는 기간과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의 재원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13. 위원회 위원은 국제연합의 특권및면제에관한협약의 관련부분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제연합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중인 전문가로서의 편의와 특권, 면제를 향유한다.

### 제35조 당사국 보고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및 과정에 관하여 이 협약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후 2년 내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2. 그 이후에 당사국은 최소한 4년마다 후속 보고서를 제출하며, 위원회가 요청하는 그 밖의 보고서를 제출한다.
3. 위원회는 보고서의 내용에 적합한 지침을 결정해야 한다.



4. 위원회에 포괄적인 최초의 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후속 보고서에 이미 제출된 정보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당사국은 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준비할 시, 당사국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과정에 따라 준비하고 이 협약 제4조 제3항에 규정된 조항을 적절히 고려하도록 요청된다.
5. 보고서는 이 협약상 의무의 이행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를 적시할 수 있다.

### 제36조 보고서 심사

1. 위원회는 각 보고서를 검토하고, 보고서에 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제안과 일반권고를 하며 이를 관련당사국에 송부한다. 관련당사국은 이에 대한 정보를 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하여 관련 당사국으로부터 추가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2. 당사국의 보고서 제출이 상당히 늦어질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가 이용가능한 신뢰할 만한 정보에 기초하여 관련당사국에게 이 협약의 이행을 심사할 필요성에 대해 통지할 수 있다. 그 통지 후 3월 내에 관련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이 이러한 심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 당사국이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본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3.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모든 당사국에게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4. 당사국들은 자국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자국내 일반에게 널리 활용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보고서에 대한 제안 및 일반 권고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5.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적 자문이나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거나 지적하고 있는 당사국의 보고서를 그러한 요청이나 지적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면 동 의견 또는 권고와 함께 전문가, 기금, 국제연합 프로그램 및 그 밖에 권한있는 기구에 전달하여야 한다.



### 제37조 당사국과 위원회 간의 협력

1. 각 당사국은 위원회와 협력 하고 위원들이 그들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위원회는 당사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국제협력을 포함하여 국내적 역량 강화를 위한 수단과 방법을 적절히 고려한다.

### 제38조 위원회와 기타 기구와의 관계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 (a) 전문기구 및 국제연합의 그 밖의 기관은 이 협약 중 그들의 권한 범위 안에 속하는 규정의 이행에 관한 논의에 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가진다. 위원회는 전문기구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구에 대하여 각 기구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와 그 밖의 국제연합기관에게 그들의 활동범위에 속하는 분야에서의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b) 위원회는 위원회의 임무 수행에 있어, 적절한 경우에, 국제인권조약에 의해 설립된 기구들의 보고서 작성지침, 제안 및 일반권고와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기능수행에 있어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이를 기구와 협의한다.

### 제39조 위원회 보고서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2년마다 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하며,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보고서 및 정보에 대한 심사를 기초로 제안 및 일반권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 및 일반권고는 당사국으로부터 논평이 있는 경우, 이와 함께 위원회의 보고서에 수록되어야 한다.



## 제40조 당사국 회의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당사국 회의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한다.
2. 이 협약이 발효된 이후 6월 내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당사국 회의를 소집한다. 추후 회의는 2년 또는 당사국 회의의 결정에 따라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소집한다.

## 제41조 기탁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자이다.

## 제42조 서명

이 협약은 2007년 3월 30일 뉴욕에 위치한 국제연합 본부에서 모든 국가와 지역통합기구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 제43조 기속적 동의

이 협약은 서명국의 비준 및 서명한 지역통합기구의 공식적인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이 협약은 이 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모든 국가와 지역통합기구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 제44조 지역통합기구

1. “지역통합기구”란 해당지역의 주권국가에 의해 구성된 기구로서, 이 기구의 회원국들은 이 협약에 준거하는 사안들에 대한 권한을 이 기구에 위임하였다. 이러한 기구는 이 협약에 준거하는 사안들에 대한 권한의 범주에 관하여 공식 인준서 또는 가입서를 통해 선언한다. 이후에 권한 범주 내에서 기탁인에게 실질적인 수정을 알린다.
2. 이 협약의 당사국에 대한 언급은 지역통합기구의 권한 내에서 이러한 기구에



적용된다.

3. 제45조 제1항, 제47조 제2항, 제3항의 목적상, 지역통합기구에 의해 기탁된 문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4. 지역통합기구는 권한 내의 사안들에 관하여 이 협약의 당사국인 회원국 수와 동일한 투표수로 당사국 회의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원국이 권리를 행사할 경우 지역통합기구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대로 지역통합기구가 그 권리를 행사한다면 회원국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제45조 발효

1. 이 협약은 2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후 30일 후에 발효한다.
2. 2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공식 승인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각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약은 해당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후 30일이 되는 날 발효한다.

#### 제46조 유보

1. 이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유보는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다.

#### 제47조 개정

1. 모든 당사국은 이 협약의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각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지 여부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이 의정서의 각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사무총장이 송부한 날부터 4월 내에 당사국 중 최소한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에,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 하에 이 회의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 출석하여 표결하는 당사국의 3분의 2중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사무



총장을 통하여 국제연합총회에 제출되며 그 후 수용을 위해 모든 당사국들에게 제출된다.

2. 본조 제1항에 따라 채택되고 승인된 개정안은 개정안이 채택된 날짜에 당사국 수의 3분의 2에 달하는 채택서가 기탁된 후 30일 후에 발효한다. 그 후, 당사국들이 자국의 채택서를 기탁한 후 30일 후에 해당 당사국에 대해 개정안이 발효한다. 개정안은 이를 수락한 당사국만 구속한다.
3. 당사국 회의를 통해 총의에 도달하면, 제34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에만 해당되는 본조 제1항에 따라 채택되고 승인된 개정안은 기탁된 채택서의 수가 개정안이 채택된 날짜에 당사국 수 3분의 2를 충족하고 30일 후에 당사국에서 발효한다.

#### 제48조 협약의 폐기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 통보에 의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1년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 제49조 접근 가능한 형식

이 협약문은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된다.

#### 제50조 정본

이 협약문은 아랍어·중국어·영어·불어·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이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 전권대표들은 각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1조

1.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하“당사국”이라 한다)은 당사국에 의해 협약상 규정의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국의 관할 하에 있는 개인 또는 집단 혹은 이들을 대리한 통보를 접수하고 심리하는 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권한을 인정한다.
2.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협약 당사국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어떠한 통보도 위원회에 접수되지 아니한다.

### 제2조

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는 통보를 심리할 수 없다고 간주한다.

- (a) 통보가 익명인 경우
- (b) 통보가 통보제출권의 남용이거나 또는 본 협약의 규정과 양립하지 않는 경우
- (c) 동일한 사안이 이미 위원회에서 검토되었거나, 또는 다른 국제적 조사절차나 해결절차에서 심사되었거나 심사중인 경우
- (d) 이용가능한 모든 국내적 구제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이것은 구제 절차의 이용이 불합리하게 지연되거나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e) 명백하게 근거가 박약하거나 사안의 실제적 존재가 충분하게 소명되지 못한 경우
- (f) 통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 이 의정서가 관련 당사국에게 발효된 후까지 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 발효 이전에 발생한 경우



### 제3조

이 의정서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제출된 모든 통보에 대하여 비공개적으로 관련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한다. 접수 당사국은 이러한 사안과 자국이 제공한 구제조치가 있는 경우, 동 구제조치에 대하여 소명하는 서면 설명서 또는 진술서를 6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 제4조

1. 위원회는 통보를 접수한 후에 본안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주장된 권리침해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잠정조치를 취하라는 요청을 긴급한 고려사항으로 관련 당사국에게 송부할 수 있다.
2. 위원회가 본조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이것은 통보의 심리가능성이나 본안에 대한 결정을 함의하는 것은 아니다.

### 제5조

위원회가 이 의정서에 따라 통보를 심사할 때에는 비공개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위원회는 통보를 심사한 후, 제안과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당사국과 진정인에게 전달한다.

### 제6조

1. 위원회는 협약에 규정된 권리가 당사국에 의하여 심각하게 또는 조직적으로 침해된다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접수한 경우, 위원회는 그 당사국에 대하여 그러한 정보를 조사하는데 협조할 것과, 또한 이를 위하여 관련 정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2.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이 제출한 의견 및 그 밖에 입수가 가능한 모든 신뢰할 만한 정보를 고려하여, 위원 중 1명 또는 그 이상을 지명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위원회에 긴급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당사



- 국의 동의 하에 이러한 조사는 당사국의 영역에 대한 방문을 포함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심사한 후, 동 결과를 논평 및 권고사항과 함께 관련 당사국에게 전달한다.
  4. 관련 당사국은 위원회로부터 조사결과·논평 및 권고사항을 전달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자국의 견해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5. 이러한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당사국의 협력이 요청된다.

### 제7조

1.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에게 이 의정서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조사에 대응하여 취해진 모든 조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협약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6조 제4항에 언급된 6월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 관련 당사국에게 동 조사에 대응하여 취해진 조치를 위원회에 알려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 이 의정서가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위원회 권한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 제9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의 수탁자이다.

### 제10조

이 의정서는 2007년 3월 30일자로 뉴욕에 위치한 국제연합본부에서 협약에 서명한 국가와 지역통합기구의 서명을 위해 개방된다.



### 제11조

이 의정서는 협약을 비준하였거나 가입한 이 의정서의 서명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이 의정서는 협약을 공식적으로 인준하고 이 의정서에 서명한 지역통합기구의 공식적인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이 의정서는 협약을 비준 공식적인 인준 또는 가입하였으나 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은 모든 국가와 지역통합기구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 제12조

1. “지역통합기구”란 회원국들이 협약 및 본 의정서에 준거하는 사안들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여 주권국가에 의해 구성된 기구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구는 협약 및 본 의정서에 준거하는 사안들에 대한 권한의 범주에 대해 공식 승인서 또는 비준서를 통해 선언해야 한다. 이후, 결과적으로 권한 범주 내에서 기탁인에게 실질적인 수정을 통보해야 한다.
2. 본 의정서의 당사국에 대한 언급은 지역통합기구의 권한 내에서 적용된다.
3. 제13조 제1항, 제15조 제2항의 목적에 따라 통합기구의 채택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4. 지역통합기구는 그 권한 내의 사안들에 대해 본 의정서의 당사국인 그 회원국수와 동일한 투표수로 당사국 회의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일 그 회원국이 권리를 행사한다면 지역통합기구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역으로 지역통합기구가 그 권리를 행사한다면 회원국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제13조

1. 협약의 발효를 조건으로, 이 의정서는 1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후 30일 후에 발효한다.
2. 1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이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공식 승인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각 당사국 또는 지역통합기구에 있어, 이 의정서는 그러한 문서의 기탁 후 30일이 되는 날 발효한다.



#### 제14조

1. 이 의정서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유보는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다.

#### 제15조

1. 모든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각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지 여부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이 의정서의 각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사무총장이 송부한 날부터 4월 내에 당사국 중 최소한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에,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 하에 이 회의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 출석하여 표결하는 당사국의 3분의 2중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사무총장을 통하여 국제연합총회에 제출되며 그 후 수용을 위해 모든 당사국들에게 제출된다.
2. 본조 제1항에 따라 채택되고 승인된 개정안은 채택된 날짜에 당사국 수의 3분의 2에 달하는 채택서가 기탁된 후 30일 후에 발효한다. 그 후, 당사국들이 자국의 채택서를 기탁한 후 30일 후에 해당 당사국에 대해 개정안이 발효한다. 개정안은 이를 수락한 당사국만 구속한다.

#### 제16조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 통보에 의하여 이 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1년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 제17조

이 의정서문은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한다.



## 제18조

이 의정서문은 아랍어·중국어·영어·불어·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이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 전권대표들은 각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장애인권리협약 해설집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2007년 3월 인쇄  
2007년 3월 발행

발행인 : 안 경 환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팀

(100-842)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16번지, 금세기 B/D 11층

전화 / 02) 2125-9741

FAX / 02) 2125-9738

[www.humanrights.go.kr](http://www.humanrights.go.kr)

인쇄처 : 도서출판 한 학 문 화

전화 / 02) 313-7593(代)

---

사전승인 없이 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ISBN 978-89-6114-007-2-93330